

월간

# 재정포럼

2015. October\_Vol.232

10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권두칼럼

미룰 수 없는 조세입법 업그레이드/ 소순무

## 현안분석

상하수도 요금수준 인상과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김현아  
정부기능분류의 공식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제언/ 정성호

## 특집

2016 예산안 편성

## 기획·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재정패널 직업이력 부가조사 소개

## CONTENTS

### 권두칼럼

미룰 수 없는 조세입법 업그레이드 · 소순무 ..... 02

### 현안분석

상하수도 요금수준 인상과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 김현아 ..... 08

정부기능분류의 공식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제언 · 정성호 ..... 31

### 특집 · 2016 예산안 편성

2016년 예산안 편성 · 김동일 ..... 61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윤성주 ..... 67

### 기획 · 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재정패널 직업이력 부가조사 소개 ..... 77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 피지배외국법인(CFC)의 파트너십을 통한 조세회피문제  
방지 위한 임시규정 발표 외 ..... 93

### 정책흐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경제적 효과 분석 ..... 133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 맞아 ..... 135

OECD/G20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간 ..... 138

### 이슈&포커스

“한국 지하경제, GDP의 25% 추정엔 신뢰하기 어려워” 외 ..... 141

## 미룰 수 없는 조세입법 업그레이드



소순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좋은 세법만들기’는 조세법 선순환의 첫걸음

오늘날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 없이는 정치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는 모두의 바람이지만 공짜가 아니다.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은 조세수입, 기채 등으로 조달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는 조세법을 통해 실현된다. 조세법은 국민 개개인의 돈 문제인 만큼, 지극히 정치적이고 다양한 이해집단이 복잡하게 얽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조 말에는 조세체계가 허물어져 재정문란이 나타났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조세법은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재정은 ‘좋은 세법만들기’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세법이 만들어져야 무리 없이 조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조세쟁송에 이르러서도 합리적인 세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세법 선순환 구조의 첫걸음이다.

### 우리는 ‘좋은 세법만들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조세입법의 수준은 어떠한가? 아직은 정부 주도의 입법이지만 합격점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다. 조세입법은 기술적인 면도 강하지만 고도의 법률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난해한 작업이다. 세법은 사회의 다양한 경제흐름 속에서 과세대상을 포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헌법을 비롯하여 거래법, 규제법 등 공사법(公私法)의 전 영역이 스며들어 있어 복잡다기 할 수밖에 없다. 날줄과 씨줄로 얽혀 있어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비유하건대 종합예술의 결정판과 같다. 그렇기에 조세입법에는 조세전문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지속적으로 시행상의 문제가 제기되던 법원 경매에 의한 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이 시도되었다. 법원의 강제경매에는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정부의 입안을 거쳐 법

제처 심의,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정작 법원의 임의경매를 제외한 것이 문제되었다. 당연한 귀결이다. 법원의 경매는 그 원인이 집행권원에 의한 것인지 당사자 사이의 담보약정 등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관여자가 검토한 사안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 이듬해에 임의경매가 추가됨으로써 바로 잡혔다. 이것이 최근까지 우리가 경험한 조세입법의 수준이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좋은 세법만들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조선조 세종이 시행한 전세(田稅)제도 개혁이 있다. 1430년 개정안에 대하여 의정부, 육조, 지방관리, 일 반백성 등 전 계층 17만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지역이나 지질에 따른 수 차에 걸친 시범실시를 거쳐 무려 14년 만인 1444년에 공포, 시행되었다. 그 뿐 아니다. 천만 관객의 영화 <광해>를 보면,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양반들의 반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로 재탄생된 장면이 겠지만, 광해군이 공평한 과세를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였고, 완성까지 100 년이 걸렸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조선 최고의 개혁입법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세법은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훌륭한 역사적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매년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검증 없이 시험적, 즉흥적인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우리는 아직 매년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검증 없이 시험적, 즉흥적인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조세입법의 업그레이드 대책은 무엇인가? 조세입법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각 국과에서 매년 예산편성과 맞물려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 세법개정안 마련작업은 국세청 및 각 계층의 요망사항과 의견이 수렴되어 세법전문가의 자문을 거친다. 아쉬운 것은 입법과정에서 장기적인 조세행정의 틀이나 정책 내지 철학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실무자가 주도하는 입안 관행의 한계이다. 각 과마다 내놓는 개정내용의 체계성과 정합성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세제입법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싱크탱크의 부족이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여기도 조세법 전문가가 태부족하다. 반면 국회는 입법활동 강화로 종전에는 조세입법의 검증이나 개선요청에 그쳤던 것이 기본법을 포함한 각 세법에 대한 수많은 의원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인력을 갖

- .....
- 우선 외부 연구기관의  
확충과 세법전문가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

춘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전문인력 연구와 보고도 활용된다. 종전과 달리 정부 주도의 조세입법은 그 환경이 달라지고 입법동력이 약화되어 세법개정안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재작년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둘러싼 정부안 재검토 파동이 그 예이다. 조세입법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정치적 타협과 이해집단의 입김으로 누더기, 부실세법이 되거나 좌절되고 만다. 국회의 조세 관련 의원입법은 특정 납세자군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유럽 국가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의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인다 하여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세제실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계획이 나왔지만 세제실의 조세입법을 지원할 획기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정된 세제실 인력과 약한 전문성으로는 낮은 수준의 조세입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때로는 땀질식 혹은 아주 독창적인 세법이 입안되기도 한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집행상의 어려움을 겪고 위헌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속 바뀐다. 세계에서 유일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그 예이다.

세법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전형적인 분야로 납세자에게 인식되어 있다. 거기에 세법의 규범력이나 건전한 납세의식이 자리잡기 어렵다. 우선 외부 연구기관의 확충과 세법전문가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1년에 몇 번 하는 전문가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까운 일본의 내각 세제조사회는 최고의 세법전문가로 구성되어 1년 내내 활동한다. 우선 세제입법에 있어 시급한 것이 평가법의 제정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징세법」은 물론 「관세법」, 「지방세법」에 이르기까지 적정한 평가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가장 침해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다. 역사적 가격이 아니므로 평가는 항상 그 적정성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대두된다. 그만큼 중요한 평가에 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제의 마련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 입안작업은 세제실에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시작하여도 몇 년이 걸릴 대작업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는?**

조세입법의 업그레이드는 세제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제실은 연차사업으로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부가치세법」을 필두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에 대한 용역보고를 받고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렇지만 입법화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유일하다. 세제실은 알기 쉬운 세법을 위하여 조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예컨대 법률 1조,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1-1-1조로 정하여 연계성 확보)하는 안을 냈으나 법제처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 좌절되었다. 종래의 경직된 법조문 체계의 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조문 찾기 술래잡기로 소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문장을 바꾸는 수준의 다시쓰기를 넘어 그 실제적 내용에 관하여 체계성, 정합성,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세입법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조세입법 과정에서 조세법률가의 참여와 검증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조세전문가 그룹이 적극 나서야 하고 기재부는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KIPF

.....  
**조세입법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조세입법 과정에서 조세법률가의 참여와 검증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losing	Mid	Ch
	6.1293		
	1.2386		
	0.4823		
	8.8393		
	2.6432		
	1.2827		
	618.813		
	7.9738		
	0.0082		
	-0.0029		
	-0.0004		
	-1.3000		
	0.007		
	0.005		
	6.9100		
	2.0663		
	1.0028		
	483.750		



# | 현안분석 |

- **상하수도 요금수준 인상과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기능분류의 공식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제언**  
정성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상하수도 요금수준 인상과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 I. 논의의 배경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yuna@kipf.re.kr)

상하수도 사업은 지역주민의 필수공공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등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물공급 서비스와 수혜자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구당 사용요금과 각종 원인가부담금과 같은 물 사용자의 부담요금을 근간으로 재원이 구성된다. 따라서, 현재 상하수도의 '일반재정부담(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규모)'은 기타 SOC 사업들보다는 낮은 편이다. 또한, 전력이나 가스과 같은 네트워크 관망산업들과도 사업성격의 차이가 있다. 강수량과 지형적 특성에 따라 수자원의 규모가 결정되는 특성상 '원가산정'이 국가 간, 지역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하수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밀착형 필수공공재로서 자리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이다.

이러한 상하수도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원 구성 역시 사용자 요금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에 해당된다. 특히 상하수도의 보급률이 높고, 수질관리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사용자요금 위주의 재원 구성을 이루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상하수도시설의 전국적인 관망설치의 비용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국제기구(ODA)지원과 함께 국고지원 부담이 높다.

상하수도 요금 수준은 원가산정의 기본원칙에서부터 다양한 공급주체와 수요자인 국민과의 합의의 산물로서 정치적으로도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국제비교나 요금원가 수준 증가 등 원칙론적인 논의만으로 요금

\* 본 원고는 발간예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5년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물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김현아·김지영)의 일부를 정리하여 재작성한 것임 (필자 주)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수준의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서이다.<sup>1)</sup>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의 논의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단선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에서는 요금 인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원가산정의 합리화 등 기술적인 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요금 물가정책에 묶여 있는 자치단체별 요금결정 구조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즉, 요금구조에 대한 주무 사업부처와 실제 운영주체인 지자체간 각각의 영역에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자체적 논의의 정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사업 자체의 구조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성공확률이 높다.<sup>2)</sup> 따라서,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요금 인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적절한 요금 인상 환경 및 시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요금수준의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의 비용절감 방안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요

“  
**본 분석에서는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요금수준의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

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편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상·하수도 재정부담 구조

### 1. 상수도 및 하수도 재정부담 현황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 전체 재정규모는 2013년 결산기준 15.8조원 규모로 GDP 대비 약 1% 수준에 해당한다. 그중 상수도가 약 6.8조원, 하수도가 9조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먼저 상수도를 살펴보면, 전체 재정에서 요금을 포함한 자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조원 내외로 88.6%의 사업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나머지 약 10% 정도를 국비(국고보조+교부세)와 지방비(도보조+일반회계보조금)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하수도의 경우 전체 사업비 9조원 중 1.9조원 규모인 약 21.5%만이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비

1) “행정자치부는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 2배 이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수도 요금 역시 80%대인 현실화율을 90%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말 기준 하수도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조례가 개정됐으며,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부는 파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10월 29일).”

2) “The timing of a reform is also important. Two hypotheses(Williamson, 1994)—the crisis hypothesis and the honeymoon hypothesis—are offered to account for the time factor in the reform implementation process.....” Dinar(2000), p. 18.

3) 참고로, 2014년 환경부의 전체 예산은 약 5조 4천억원이며 이 중 약 3조 5천억원, 즉 60% 정도가 상하수도 관련 예산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환경부, 「환경예산안개요」, 2015(부록참고)).

중 국비가 1.9조원 규모인 20.7%, 지방비가 3.7조원 규모인 4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sup>4)</sup>

상대적으로 상수도에 비하여 하수도의 국비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첫째, 상수도는 지역 주민이 최종 사용자로서 최종적인 혜택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데 비해, 하수도는 지역 사용자의 하수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불분명한 이른바 ‘공공수역 관리체계’의 특징

때문이다. 이는 외부효과의 크기가 상수도에 비하여 하수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나라 하수도 사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도 하수도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역사에 따른 것으로 비교적 최근까지도 하수도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수도는 신규투자가 대부분인 사업으로 관망설치와 같이 국

〈표 1〉 2013년 시군구별 상수도 국비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억원, %)

	자본수입	보조수입					총세출	총세출 대비 지방비부담	총세출 대비 자본수입
		계	국고보조	도보조	교부세	일반회계 보조금			
특광역시	20,914	641	475	-	20	147	21,855	0.7	95.7
자치도	879	172	95	-	-	77	1,051	7.3	83.6
시	33,469	2,345	833	137	19	1,356	35,966	4.1	93.1
군	5,089	4,094	1,477	181	22	2,414	9,244	28.1	55.1
합계	60,351	7,252	2,880	317	61	3,993	68,116	6.3	88.6

주: 자본수입=수도요금+시설부담금+수도료 등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연보』, IV. 수도운영관리현황, 세입현황, 2014.

〈표 2〉 2013년 시군구별 하수도 국비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억원, %)

	세출	국비	지방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총세출 대비 지방비부담	총세출 대비 사용료 및 부담금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체			
특광역시	12,875	907	3,535	-	6,489	27.5	50.4
자치도	1,665	364	309	-	294	18.6	17.6
시	40,512	10,718	902	6,448	11,542	18.1	28.5
군	30,313	6,471	428	21,556	728	72.5	2.4
구	4,764	219	3,291	962	291	89.3	6.1
합계	90,128	18,681	8,464	28,966	19,344	41.5	21.5

주: 원인자 부담금 징수대상은 배수설비설치자(「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타공사·타행위자(「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임. 세출 총액에는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이외에도 부채 및 이월액 등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연보』, 10.1 하수도 재정결산, 2014.

4) 그 밖에 나머지 비중은 지방채, 기타잡수입 등이 차지하고 있다.

고 투입의 비중이 높은 사업적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sup>5)</sup>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부담 면에서 살펴보면, 상수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은 군단위의 지방비 부담이 28.1%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이외에는 상당부분 자본수입이 높게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재정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상수도 국고부담 내역의 대부분은 ‘농어촌 취약급수’에 집중 투자되고 있기에 이른바, 국가의 재분배적인 지원 성격으로서 국고부담의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하수도의 경우는 특·광역시조차도 자체 요금부담 비중이 50% 내외 수준이며 군과 구지역은 각각 2.4%와 6.1%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와 부채 등의 외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수도 부채의 경우, BTL 증가가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sup>6)</sup> 하수도 재정이 상수도에 비하여 심각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높은 국비 의존에 따른 낮은 요금수준과, 소규모 영세한 민간사업자 위탁을 통한 수익성 저하 등의 사업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

이상의 지방공기업 경영분석 결과는 다음 <표 3>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사업운영손실 보전 내용인데, 상수도는 2009년 약 6,171억원에서 2012년 8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6천억원대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하수도는 2009년 1,4조원 수준에서 2013년 2,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분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설비투자

“  
**상수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은  
 군단위의 지방비 부담이 28.1%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이외에는 상당부분 자본수입이 높게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재정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자본반영) 분야가 각각 급증한 것이 원인에 해당한다. 장기재정 관점에서 본다면, 자산으로 남는 설비투자의 증가로 인한 당해년도 장부상의 사업손실은 감가상각분을 감안하더라도, 주민서비스 향상을 생각해 본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설비투자 부분이 하수도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데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상수도 설비투자 손실은 2009년 3,554억원에서 2013년 2,606억원으로 절대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다.

5) 2015 기본과제 간담회시 상·하수도 전문가 토론내용에 따른 것임

6) 2008년 이후 중앙정부의 하수도 부문의 부채는 감소하였으나, 지방공기업 부문의 부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의 부채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표 3〉 2013년도 결산 기준 상·하수도사업 운영손실 보전 현황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수도	재정지원계(①+②)	6,171	6,361	7,165	8,071	6,117
	① 일반회계	4,318	3,864	3,918	3,929	3,447
	· 결손보전 및 수선비지원(경영손익반영)	764	859	757	825	841
	· 설비투자(자본반영)	3,554	3,005	3,161	3,104	2,606
	② 국비	1,853	2,497	3,247	4,142	2,670
	· 결손보전 및 수선비지원(경영손익반영)	190	299	234	159	261
	· 설비투자(자본반영)	1,663	2,198	3,013	3,983	2,409
하수도	재정지원계(①+②)	14,316	15,249	19,333	20,682	22,736
	① 일반회계	3,814	3,950	5,881	6,601	7,953
	· 결손보전 및 수선비지원(경영손익반영)	1,142	1,176	1,471	2,048	2,364
	· 설비투자(자본반영)	2,672	2,774	4,410	4,553	5,589
	② 국비	10,502	11,299	13,452	14,081	14,782
	· 결손보전 및 수선비지원(경영손익반영)	741	845	983	1,157	1,233
	· 설비투자(자본반영)	9,761	10,454	12,469	12,924	13,549

출처: 행정자치부(2014), 「2013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p. 30.

## 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

상·하수도 사업 재정규모가 전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2008년 이후 6%에서 2011년 9.3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8.58%, 2015년 7.0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적인 비중에 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각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소 상이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8년 8%에서 점점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약 3% 수준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같은 기간의 재정 비중은 11.3%에서 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예산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상하수도 부문 예산규모는 약 3,4조원이

고 기초자치단체는 약 8.9조원 규모로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높은 분야이다. 2008년 이후의 광역 대 기초의 재정규모 추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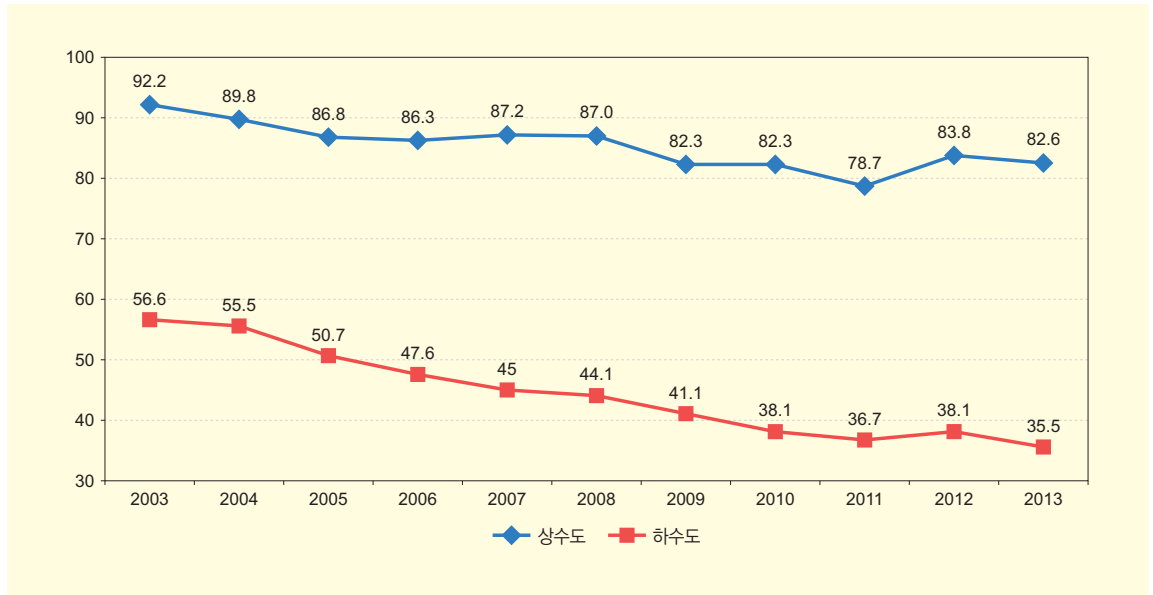
7) 〈부표〉 참고

### III. 상·하수도 요금수준 현황 및 요인분석

#### 1. 상하수도 요금수준 및 국제비교

[그림 1]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단위: %)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각 연도

[표 4] 2012-2013년도 결산 기준 상·하수도 사업 요금 적정화율

(단위: 원, %)

	2012			2013		
	평균요금(A)	총괄원가(B)	적정화율(A/B)	평균요금(A)	총괄원가(B)	적정화율(A/B)
상수도	629	751	83.8	642	777	82.6
하수도	322	843	38.1	340	958	35.5

출처: 행정자치부(2015), 「2013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p. 29.

2013년 기준 상수도의 경우 80%대의 요금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하수도는 2003년 당시 5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기준 35%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하수도의 2013년 총괄원가는 958원인 데 비하여 평균요금은 약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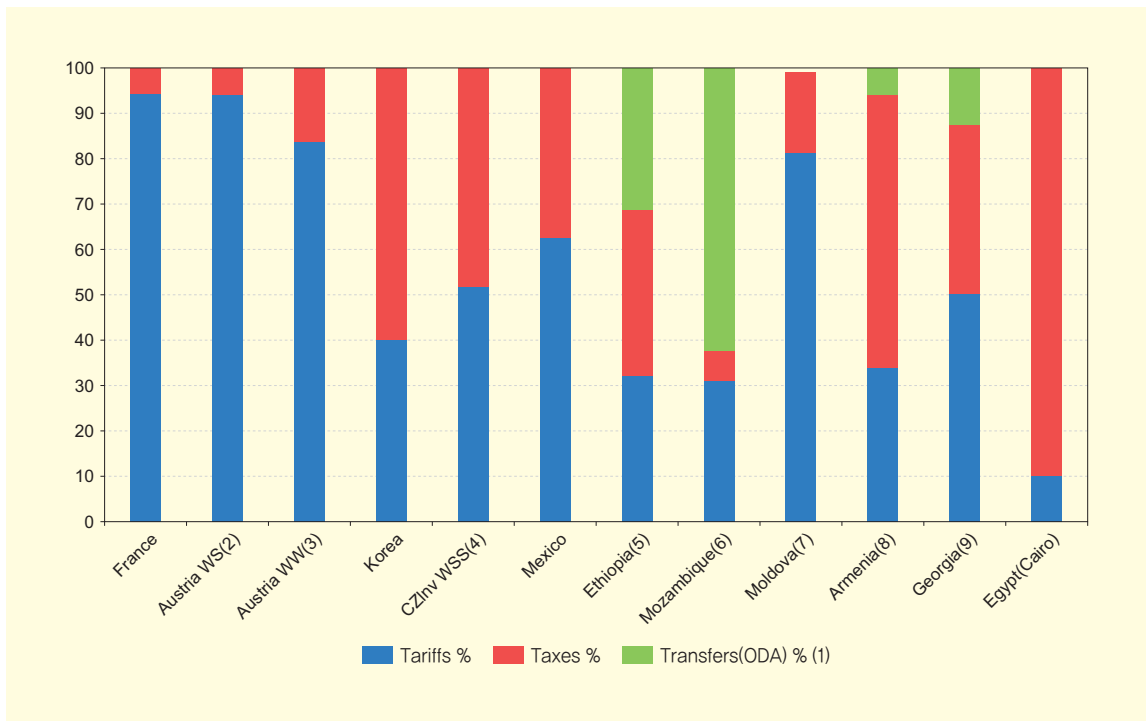
원 수준이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평균요금 수준 자체는 2000년 이후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지만 원가 또한 상승하여 현실화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상하수도 요금수준은 국제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상하수도 세입의 90% 이상이 요금부담인 데 비해, 우리나라가 40% 정도로 30% 비중의 모잠비크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이는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재정에서 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부담을 의미하는 '일반재정부담'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ECD 분석에서는 상하수도사업 자원 비중에서 국

가부담 재원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9)</sup> 재원의 책임성 면에서 볼 때, 사용자 요금비중을 높이고 일반재정부담 비중을 줄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물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2] 외국의 3T 자원부담 구조

(단위: %)



출처: OECD (2009a), "Strategic Financial Planning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 36, Figur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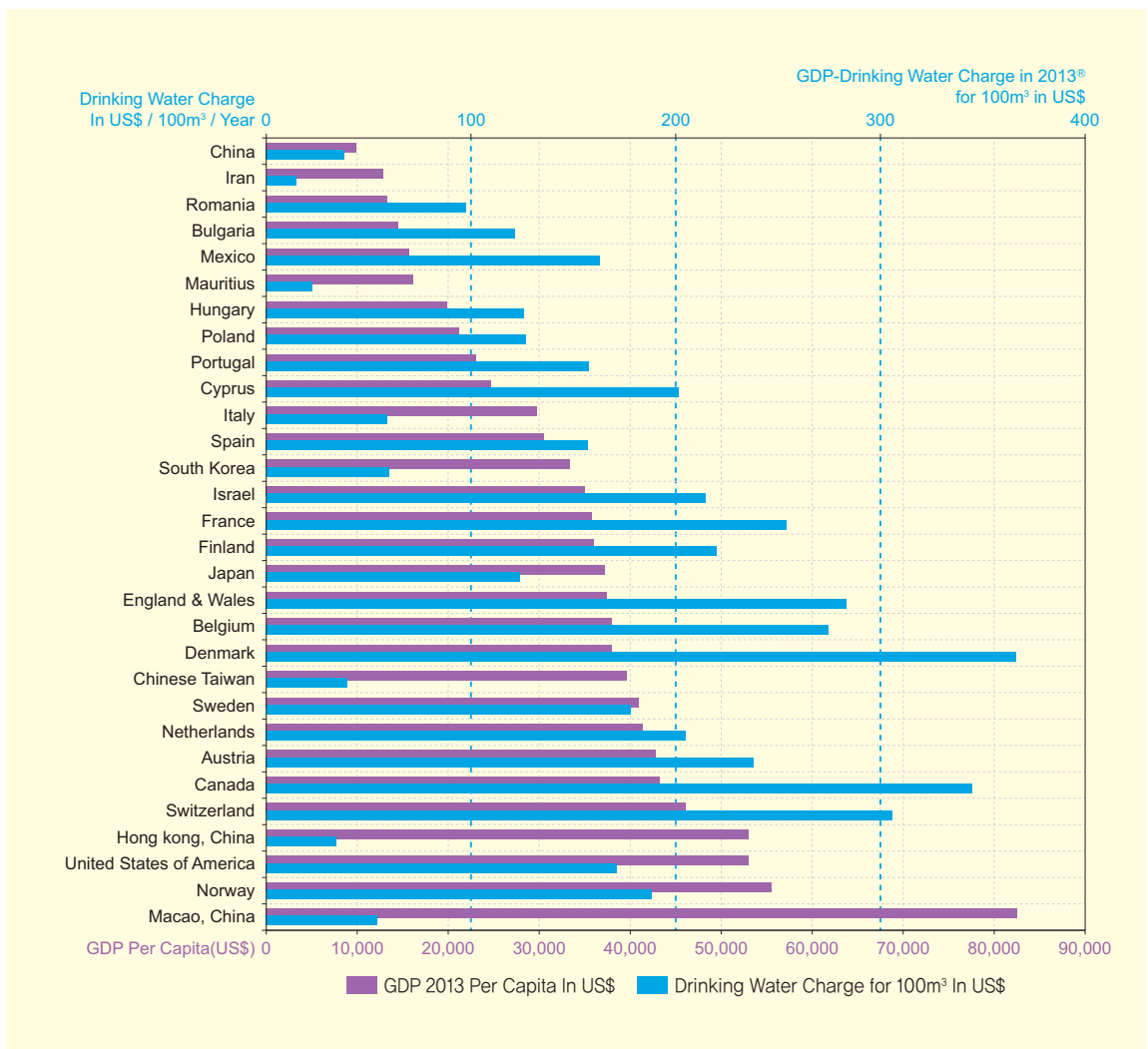
8) 상하수도 재원의 국고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로서 ODA 지원을 받지 않는 나라는 이집트, 아르메니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2011), p. 16; OECD(2009a), p. 36)

9) "Tax-funded grants and subsidies are normally assured only in the short/medium term in extreme cases from year to year, and even in well-managed systems of public finance only up to the limit of the budgetary planning cycle."(OECD(2009b), p. 25)

IWA 통계에 따른 국제비교 역시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 국가의 상하수도 요금수준은 해당 국가의 GDP 수준, 강수량, 지형 등의 자연조건과 사회적 여건, 정치적 상황 등 제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IWA 통계는 GDP 수준 대비 요금수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2013년 기준 단위부피(1m<sup>3</sup>)당 1달러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0.59달러)와 이탈리아(0.58달러)뿐이다. 선진국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요금수준은 미국(1.71달러)과 일본(1.24달러)인데 이들 나라도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요금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보통 6배 이상(스위스

[그림 3] 2013년 기준 GDP 대비 상수도 요금수준 현황



출처: IWA(2014), p. 10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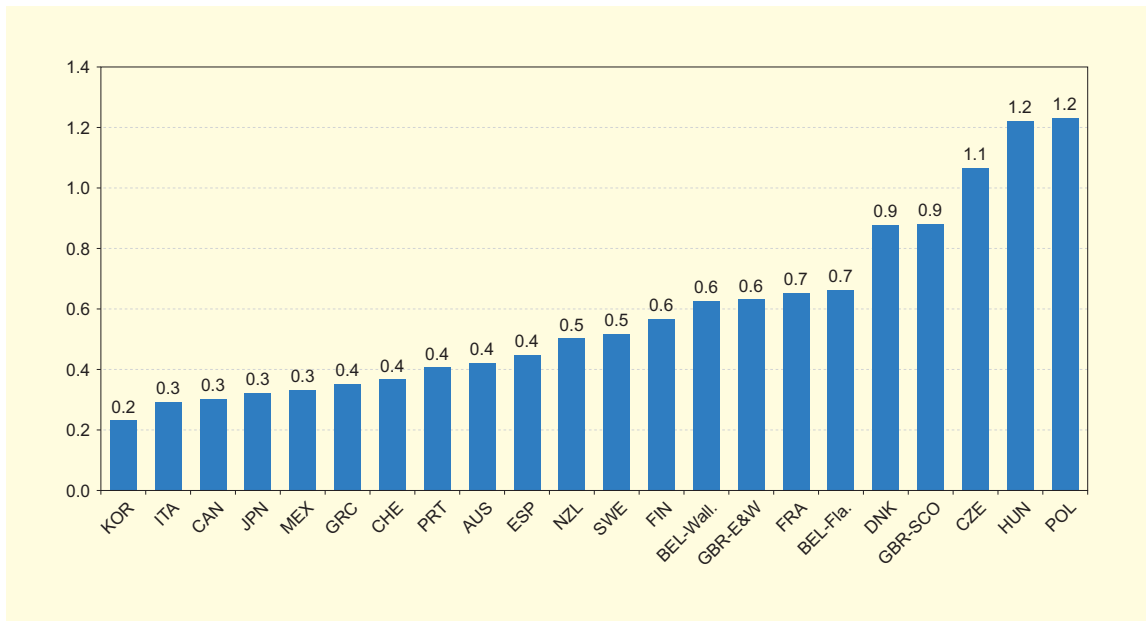
3.05, 덴마크 3.66, 영국 2.83, 프랑스 2.54달러)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0)</sup> 우리나라 GDP 수준과 유사하거나 높은 나라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타이완, 홍콩, 마카오뿐이다. 한편, 160개 도시별 비교에서는 이보다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는데 0.32부터 7.43까지 약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전이 13번째, 서울, 대구가 각각 15, 16번째를 차지하였고, 우리보다 낮은 선진국 도시는 밀라노, 마이애미 정도이다.

또한, 가구당 매달 지불하는 요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상

수도 요금이 가구소득 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 수준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진국은 일본, 캐나다, 미국이 포함되고 있다. 스웨덴 0.5%, 영국과 프랑스가 0.7%, 덴마크가 0.9% 정도이다. 가장 낮은 우리나라와 가장 높은 헝가리, 폴란드와는 약 6배 정도의 부담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the lowest decile of the population)을 대상으로 한 소득 대비 부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1%이며, 오스트리아(1.5%), 프랑스(2.2%), 덴마크(2.5%), 멕시코(4.2%), 폴란드(7.9%)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sup>11)</sup>

[그림 4] 2008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상수도 요금 비중

(미국달러 기준, 단위: %)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OECD(2010), p. 74, Figure3.1.

10)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2014), 「International Statistics for Water Services」, "Comparison of annual water cycle charges in 2013: related to a consumption of 100m<sup>3</sup> in US\$,"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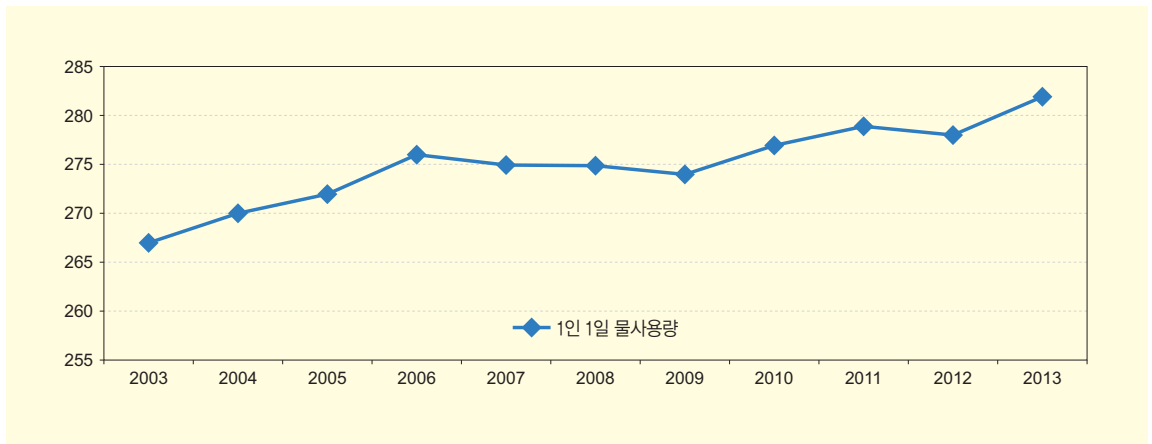
11) OECD(2010), Figure 3.2, p. 75.

이상의 우리나라의 낮은 물사용 요금은 물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인 1일 물 사용량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

의 경우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 물 사용량이 감소추세이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5] 우리나라 1인 1일 물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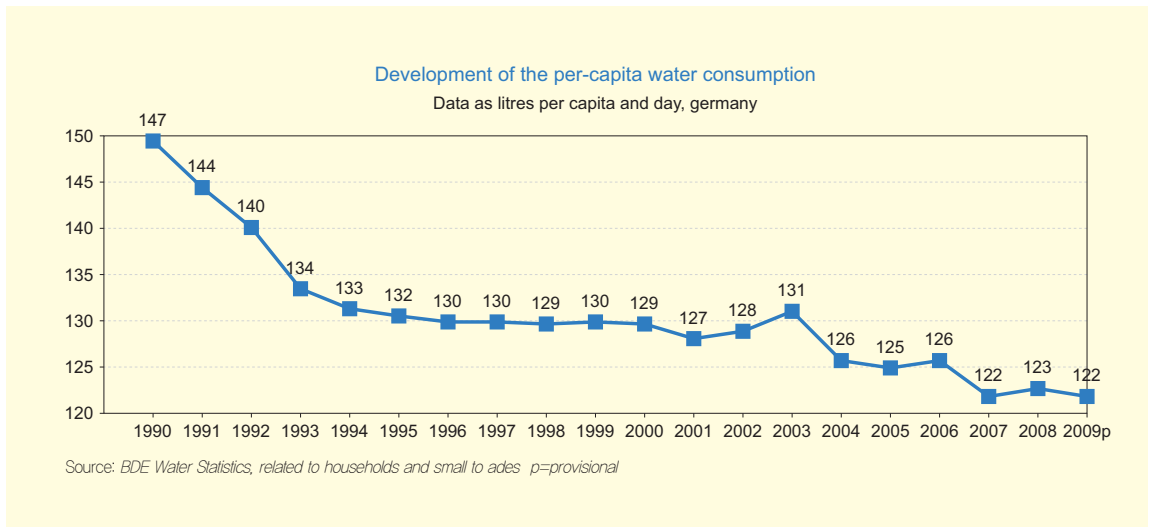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환경부, 『상수도 통계』, 각 연도

[그림 6] 독일 연도별 1일 물사용량

(단위: ㉀)



출처: Wasser-Schutzgebiet(2011), "Profile of the German water sector 2011 summary," p. 8 그림 인용

“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요금수준이 낮은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미터화된 실제 사용량과 수자원의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가치를 적절하게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 2. 우리나라의 낮은 요금원인과 국제기준에 따른 비용산정의 원칙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수준이 낮은 이유는 기술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원가산정 단계에서 수자원의 가치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 즉 미터화된 실제 사용량과 수자원의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 가치(Full Cost Recovery: FCR) 등을 적절하게 내재화(internalize)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공급 비용을 계산할 때 공급비용 자체만을 계산할 경우에는 ① 운영 및 유지비용, ② 자본비용, ③ 채무변제비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④ 자원의 훼손 비용과 다음 세대 사용자의 사용가능성을 제한하는 개념의 ‘기회비용’, 더 나아가 ⑤ 관개(irrigation) 및 수로 개선을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와 하수오염의 부정적 외부효과 비용인 경제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sup>12)</sup>

이는 경제학 이론에서의 ‘한계비용 부담원칙(MC pric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의 비용부담자와 사용자가 같도록 하는 비용부담 원

칙을 의미한다. 반면, 직접 사용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 즉 다른 사람의 비용(other people’s money)으로 해당 서비스 생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평균비용 부담원칙(AC pricing)’이라고 한다. 해당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을 경우, 즉, 평균비용 부담원칙하에서는 사용규모와 비용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요금수준에 대한 합의 역시 쉽지 않아서 장치산업인 상하수도 사업의 장기투자자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급비용 계산은 직접공급 비용(가변비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원가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제 그 이상의 ‘기회비용’과 ‘경제적 비용’은 일반재정지원 부담을 통하여 지원해 왔다. 상하수도 전체 재정에서 일반재정지원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평균비용 원칙’에 따른 생산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국제기준에서는 한계비용 부담원칙에 기초한 원가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EU Parliament와 Council 내 Water policy 부서인 Water Framework Directive(WFD)는 유럽내 물공급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원가보상 원칙(Cost recovery),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 인센티브 비용부담구조(Incentive pricing)를 제안한 바 있다.<sup>13)</sup> 특히, PPP 원칙은 OECD가 1972년부터 채택한 환경오염 비용부담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sup>14)</sup> 프랑스는 ‘Water pays for water’ 정책으로 원가보상 원칙을 가장 충실하

12) OECD(2010), pp. 19~20.

13) “More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water pricing are listed in Article 9 of the European Union’s Water Framework Directive(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this introduces the concepts of cost recovery, the polluters pay principle(PPP) and incentive pricing...”(EEA, p. 8).

14) Recommendation C(72)128 on Guiding Principles Concerning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EEA p. 20).

게 이용하는 국가로서 물 사용자 부문 간 교차보조는 허용하되, 정부예산에서 보조금은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2001년 'Water supply and Sewerage Act'가 성립되어 역시 총비용 회수(full cost recovery)를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먹는 물 서비스에 대해서는 총비용 회수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sup>15)</sup>

또한, 낮은 공공요금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성향도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상하수도 요금은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공공요금의 특성상 적시에 적정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지자체별 인상 내용을 분석하여 경제위기 이후 자치단체 요금 결정방식이나 수준이 변화하였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요금 인상의 정당성 확보가 쉽지 않거나 그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물공급비용 분석에서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요금수준 인상이 가능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적으로 요금 인상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이 심화될 경우, 즉 불가피한 경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임을 두 나라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sup>16)</sup>

### 3. 비대칭적인 상·하수도 요금수준

이상의 내용은 우리나라 상하수도의 요금이 전체적으로 낮은 원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체적으로 요금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유독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sup>17)</sup>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가장 높은 나라의 4분의 1 수준이고, 하수도 요금은 약 10분의 1 수준인데, 평균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1달러 수준임을 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하수도 요금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부담은 비슷한 수준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의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이 더 높은 편이다.<sup>18)</sup> 상하수도 요금격차가 비교적 큰 나라는 그리스, 벨라루스,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 등에 해당한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정도 수준으로 상하수도 요금 격차가 벌어진 나라는 스페인 정도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상수도에 비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이 환경투자 비용 회수의 목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매우 더딘 것이 주요 차이점으로 분석된 바 있다.<sup>19)</sup> 상수도는 ODA 등 국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수공공재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여 나라 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 수준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왔는가를 의미하는 선진국 지표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수도와

15) OECD(2010), p. 72.

16) EEA(2013), p. 9.

17)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OECD(2009b), p. 21).

18) Wasser-Schutzgebiet(2011), p. 8.

19) OECD(2010), p. 48.

하수도 간의 요금체계나 사업구조는 반드시 대칭적인 필요는 없지만, 대개의 선진국은 대칭적인 (요금 산정방식 및 부과체계) 구조를 갖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비대칭적인 사업구조와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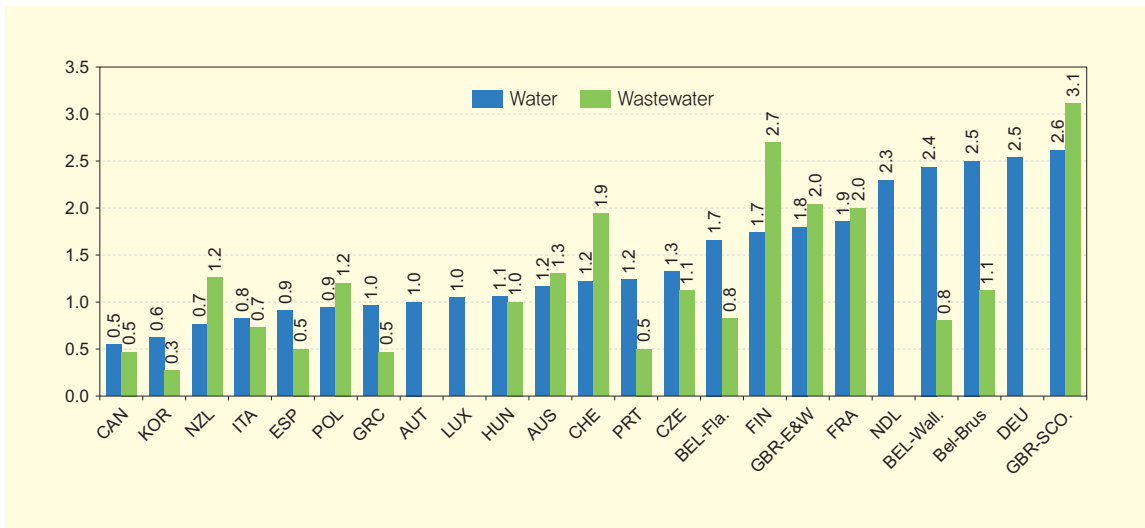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도의 사업연수가 상수도에 비하여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구조와 요금체계는 해당 사업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는 ‘사업연수’와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상수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하수도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이른바 하수관 건설이 시작되었기에 비교적 역사가 짧다. 하수도의 역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과 일치하는 것(화학비료의 탄생 시기 이후)으로 향후 상하수도와 관련된 장기 수요

전망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다.<sup>20)</sup> 따라서 하수도는 최근까지도 신규투자를 통한 관망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부담이 높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국비 투자의 증가는 오히려 사용료 인상에 대한 유인을 상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수도는 대규모 고정비용 투입이 필요한 관망설치가 대부분 이루어졌기에 운영수입을 위한 요금 인상 기제가 작동가능할 수 있었다. 반면, 하수도는 사업연한이 비교적 짧아 국비부담이 높은 초기 사업단계에 해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부담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상하수도 역사가 100년 이상인 유럽 국가들과 대비되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림 7] 2008년 기준 가정용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수준의 국제비교

(단위: USD/m<sup>3</sup>)



주: OECD estimates based on country replies to the OECD 2007-08 Survey when available, or public sources validated by the countries  
 출처: OECD(2010),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p. 48, Figure2.4.

20) 2015 연구보고서 전문가 간담회 토론내용

## IV. 상수도 요금과 물 사용량과의 관계

### 1.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과 물 사용량

〈표 5〉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수도 요금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

	종속변수	m <sup>3</sup> 당 요금	
공급요인	시설용량(m <sup>3</sup> /일)	-0.05*** (0.00)	-0.04*** (0.00)
수요요인	인구밀도	-	-0.04*** (0.00)
재정적 요인	상수도 부채액	0.004 (0.33)	0.003 (0.44)
	재정자립도	-0.01** (0.04)	-
제도적 요인	민간위탁 더미	0.10*** (0.00)	0.10 (0.34)
	가정용부과량 비율	-0.002*** (0.00)	-0.003** (0.04)
	군지역 더미	-	0.005*** (0.00)
상수		7.4*** (0.00)	7.42*** (0.00)
R <sup>2</sup>		0.29	0.33
N of Observations		335	339

출처: ( ) 안은 P-value이며, \*\*\*, \*\*, \*은 각각, 1%, 5%, 10% 미만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부담 체계는 물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금구조와 재정부담 구조 확보가 가능할 때 담보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물 사용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8개 광역자치단체와 153개 기초자치단체의 상수도 정수장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의의는 직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수도 요금과 물 사용량 및 기타 요인들과의 관계가 최근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Pooled OLS를 활용하였고 자료는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와 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지방재정연감』, 주민등록인구 자료 등을 사용하였으며, 비율변수를 제외한 수준변수들은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인구밀도가 높고 시설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지역의 경우에 낮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효과 즉, 원가 및 비용절감 유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물 사용량을 의미하는 ‘시설용량’은 상수도 요금을 0.05%( $\eta$ ) 내외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연간총생산량, 1일평균생산량 등과도 유사한 수준(0.4~0.6%)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 밖에 ‘인구밀도’나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도 유의하게 상수도 요금을 낮추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른바 원가산정 단계에서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전체 시설용량에서 ‘가정용 부과량’ 비율이 높은 지역과 군지역 더미의 경우도 사실상 ‘규모의 경제’ 효과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제도적인 요인이나 재정적인 요인보다는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한  
 비용원가 절감이 수도 요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 수도사업 민간위탁 수행 여부가 수도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으나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민간위탁 더미만을 사용할 경우 수도 요금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군지역 더미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효과가 상쇄되어 ‘민간위탁’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용 부과량 비율’이 높을수록 상수도 요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요금부과체계의 특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제도적인 요인이나 재정적인 요인보다는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한 비용원가 절감이 수도 요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물 사용 행태 국제비교 연구

가구당 상수도 요금과 물 사용량과의 관계를 연구한 국제비교 중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Grafton et al.(2009)이 가장 최근 자료에 해당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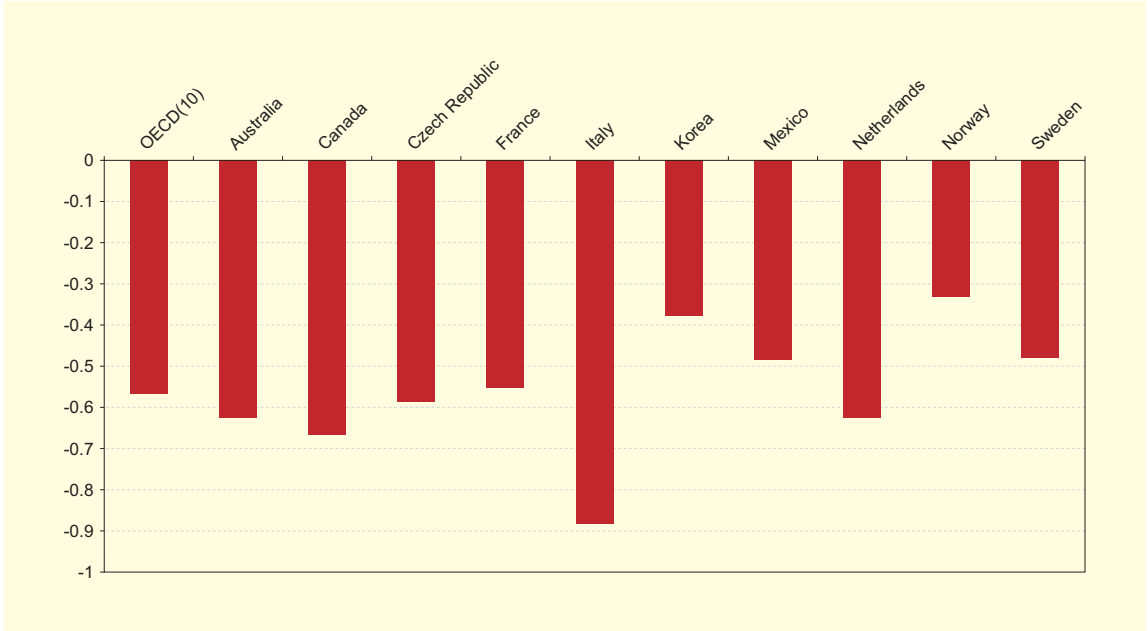
다. 당시 5~6개의 설문지를 통한 응답자 결과를 바탕으로 10개국의 물소비 패턴을 분석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수도요금 대비 물사용량 탄력성이 가장 비탄력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즉, 수도요금에 대한 물 사용량의 변화 정도가 매우 낮아서 실질적으로 요금 변화가 물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수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0개국 비교 시 요금수준은 가장 낮고 연간 사용하는 물 사용량은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분석내용은 사적재 및 공공재의 소득효과와 가격효과 등 직관적인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첫째, 대개의 국가들에서 요금 인상에 따라 물 소비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물 사용량 감소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 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와 비교 시 보다 더 비탄력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고, 가구면적이 높을수록 물 소비량은 증가하며, 셋째, 환경적인 요인(예: 빗물 사용 등)에 따른 소비량 변화는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규모의 경제는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측정가능하다. 김현아·김지영(2015)은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설비 확장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모의 경제’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그림 8] 10개국의 물사용량에 대한 가격탄력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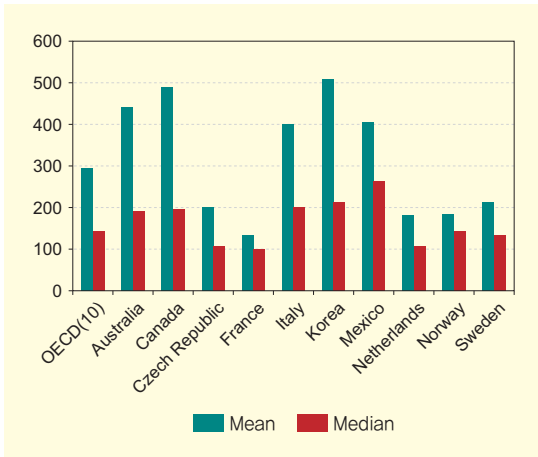
(단위: USD/m<sup>3</sup>)



출처: Grafton(2009), p. 16.

[그림 9] 10개국의 물 사용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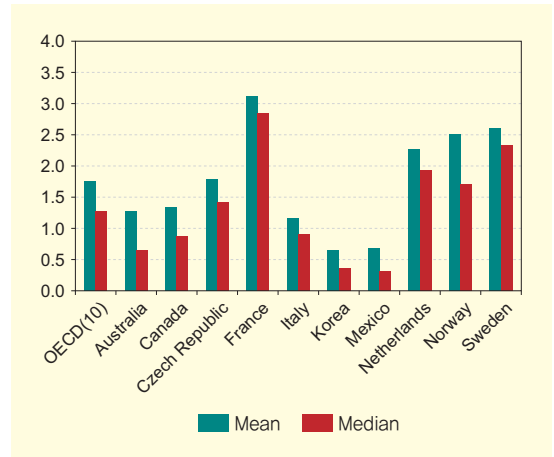
(단위: kL per year)



출처: Grafton(2009), p. 8.

[그림 10] 10개국의 수도요금 수준비교

(단위: Euro per kL)



“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역 간 요금격차’이다.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인구분포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의  
 중앙정부 재정조정 규모가 줄어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V. 쟁점사항 및 개편방향

### 1. 요금구조 개편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요금구조 개편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유럽 국가들의 최근 상수도 요금 개편과정을 소개한 EU의 보고서에서도 EU가 제안한 세 가지 요금산정 기준이 각 회원국들의 요금구조 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요금개편 사례인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의 경우는 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위기로 인한 것으로 WFD 권고와는 상충되는 개편내용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22)</sup> 이론에 따른 원칙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준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개의 나라들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요금구조 개편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집행가능한 정치적 구조, 정치-경제 간의 상호관계, 사회제도적인 규제 정도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이익단체와 농업분야와의 협

조가 요금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3)</sup>

또한, 사회 전체가 이론적인 원칙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저성장 시에는 역시 요금구조 개편 논의는 진행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요금구조 개편 (the timing of a reform) 시기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이를 설명하는데 경제위기 시에 개편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Crisis hypothesis’)과, 정권 교체기에 개편의 실행력이 높다는 가설(‘Honeymoon hypothesis’)이 개편사례에서도 뚜렷이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요금구조 개편은 단지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4)</sup>

### 2. 불균형적인 인구분포에 따른 지역 간 요금 격차 문제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역 간 요금격차’이다.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인구분포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의 중앙정부 재정조정 규모가 줄어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 간 요금 격차 논의현상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의 특이사항인데 이 같이 지역 간 요금격차가 큰 경우에는 요금수준 인상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대도시의 요금 수준이 낮고 농어촌 지역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시와 도 지역의 상수도 생산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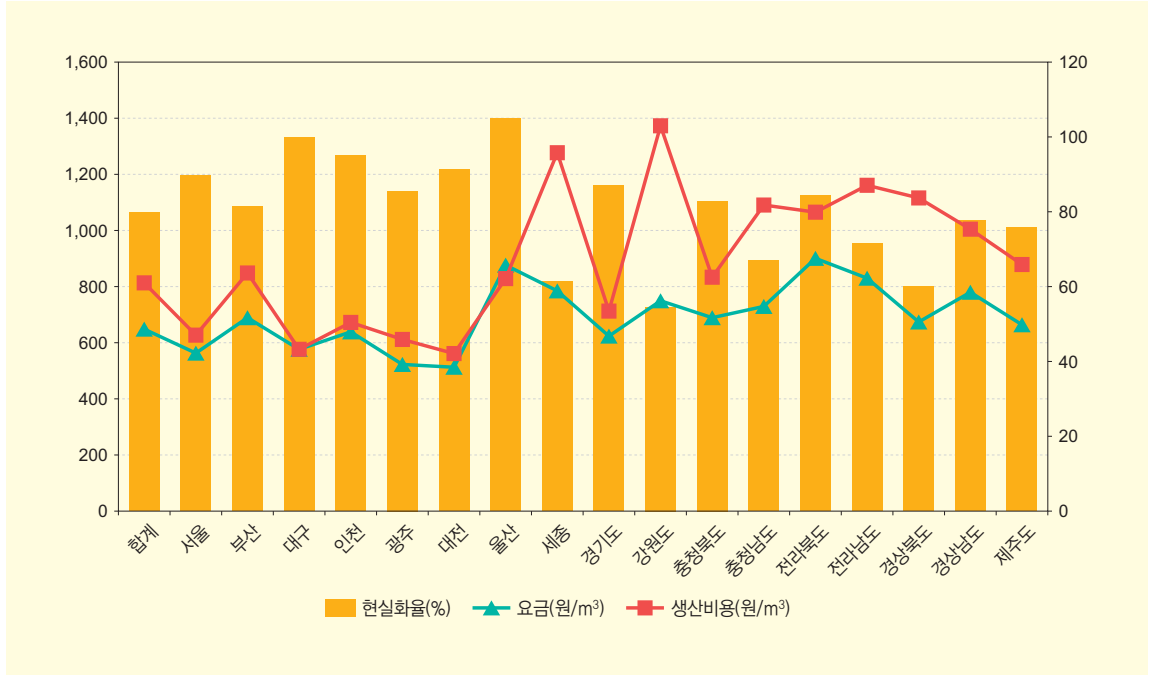
22) EEA(2013), p. 9.

23) EEA(2013), pp. 72~74.

24) Ariel Dinar, “The political economy of water pricing reform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World Bank, 2000, p. 18.

[그림 11] 지역별 수도요금 현황(2012년)

(단위: 원/m<sup>3</sup>, %)



출처: 환경부(2013), 「2012 상수도통계」

나타난다. 이를 반영하여 농어촌 지원 및 각종 감면 등이 반영된 이후의 지역별 요금수준은 생산비용 격차보다는 낮지만 역시 인구집중지역인 광역시와 도 지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비용 대비 낮은 요금지역인 도 지역과 군 지역의 요금 인상폭이 클 수 있기에, 소득 대비 부담 면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요금부과체계 및 요금 결정 관련 개선을 통한 단계별 요금 인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 간 생산비용 격차 완화방안이 필요하다.

### 3. 하수도 요금 ‘저부담-저환경’ 인식 개편 필요

요금수준 인상 논의는 상수도보다는 하수도보다 더 시급하다. 국제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하수도 요금수준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물자원 보호역량과 관련이 깊다. 하수도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수도보다는 요금수준 인상과 민간투자 비중 확대가 비교적 용이하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하수도 요금은 오염수준, 처리비용 및 외부효과 등이 반영되는 등 상수도 요금에 비하여 하수도 요금이 현저하

〈표 6〉 197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투자현황

(단위: 십억원, %)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투자	
		사업비	비중	사업비	비중	사업비	비중	사업비	비중
특광역시	4,739	915	19.3	3,737	78.9	3	0.1	84	1.8
시	12,074	5,598	46.4	4,991	41.3	902	7.5	583	4.8
군	4,253	2,574	60.5	1,496	35.2	117	2.7	66	1.6
구	1,225	110	9.0	795	64.9	-	0.0	320	26.1
합계	22,291	9,197	41.3	11,020	49.4	1,022	4.6	1,053	4.7

출처: 환경부, 「201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sup>25)</sup>

우리나라의 하수도 분야는 사업 시작 초기부터 민간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바, 상수도에 비하여 민간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정부담에서의 ‘민간투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4.8%에 그치고 있다. 다만, 인구집중 지역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약 2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규모, 즉 사업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민간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사용자 부담부분인 하수도 요금에 일정 부분 인상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 과정에서 일차적인 ‘물수요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는 영세적인 하수처리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역시 비용절감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 4. 상수도 광역화사업 통한 비용절감 방안

상수도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노후 상수관 교체를 위한 대규모 자본비용에 대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차별화된 시설부분만큼은 지역주민의 요금 인상을 통한 시설 보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까지 도출된 연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이상의 공공요금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용원가 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도 지역과 군 지역의 상수도 광역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수도 광역화사업’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물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공급비용 단가를 줄이는 규모의 경제 확보방안이 필요하므로 수도사업 통합을 의미하는 광역화사업이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원인이나 외부 정치적인 원인 이외에도 내부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경쟁구조 도입을 위해서도 광역화사업은 대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25) OECD(2010), Table 2.4 “Household water and wastewater tariff changes in OECD and selected non-OECD countries, 2008,” p. 49.

독점구조도 낮은 요금의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구역 단위 중심의 상수도사업의 영세성과 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2007년 「수도법」 개정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독점운영에서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sup>26)</sup> 현재 2003년 ‘논산’ 지역을 시작으로 한 상수도 광역화사업은 2013년 기준으로 총 24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sup>27)</sup>

상수도 공급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유수율(water efficiency)’은 광역화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진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위탁업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사실상 광역화사업을 중단한 상태라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상수도 사업의 자산규모, 투자규모, 운영관리시스템 등 사업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지자체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면적인 광역화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면, ‘단계별 상수도 광역화사업 시도’가 실현가능한 대안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 통합을 위해서는 두 지역의 시설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전에 운영주체만이라도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비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것(예: 정수장 운영, 시설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위탁)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지자체 상하수도 투자재원 확보방안

주요국의 재정부담 체계에서는 상하수도 운영비용과 자본시설 투자비용은 해당 사용자와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재분배적인 특성이 있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감면에 대해서는 ‘국고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국고 역할은 제한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하수도 분야에서의 BTL 방식의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민간투자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한 재정위험 문제는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수도 사업의 성격상 재정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정위험도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기타 SOC 사업인 도로, 경전철의 ‘수요’ 파악이 불확실한 것과는 달리 ‘거주 인구수’에 기초한 상하수도 사업은 수요산정이 거의 정확한 편이다. 다만, 현재 BTL 부분을 지방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자치단체의 부채압박으로 작용하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채를 통한 상·하수도 투자사업 재원 마련 역시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수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추진한 김해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sup>28)</sup> 하지만 분야별 지방채 발행규모가 실질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어서 하수도 분야와 상수도 분야별 신규 채무 확대가 어려운 점, 주민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

26) 수도사업의 위탁 관련 규정은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하고 있고 위탁방식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된다. 위탁방식은 시설소유권은 지자체가 갖고,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이 갖는 형태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이다(원구환, 2010).

27)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보도설명자료, 2013.10.21.

28) <http://www.y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5887>


해 의회 통과가 어려운 점 등은 실제 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VI. 결론

앞으로 외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와 재정의 어려움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 주체들의 재정효율화 국민은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더욱 침해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하수도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역사, 공간적 인구불균등 현황, 정부 간 재정부담 문제, 다부처 간 거버넌스 문제, 요금수준의 정치적 결정과정을 비롯하여 삶의 질,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등 실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갖는 정책적 의미가 결국 재정압박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재정분야 연구의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전통적으로 상하수도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에 일차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정구조적으로 국가부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1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이전되고 있는 연성예산구조하에서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중앙부처 예산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지방침하' 등으로 인하여 국민 안전 및 주민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주민이자 국민의 요구는 담당 부처, 예산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서는 상하수도 재정체계 개편의 핵심

은 '요금수준 인상'이며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구조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정부문과 사업부문의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상하수도 구조개편 사업은 담보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원투입은 부채로 감당하고 상환은 다음 세대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되는 재정위험 상황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첫째, 요금수준 인상은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에 따른 하수도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상수도 광역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며, 셋째, 상하수도 관련 추가 재원마련은 사용자의 '요금 인상'과 자치단체의 '지방채 및 민간투자'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참고문헌〉

- 김현아·김지영, 『지방자치단체 물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orking paper, 2015.
- 문현주·정아영,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13.
- 원구환, 「지방상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32호), 2010.11, pp. 91-110.
- 정성영·조세현·현대용·배수호,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생산비용 및 요금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90호), 2012.9, pp. 287-310.
- 조임곤, 「지방공기업 요금결정의 합리화 방안」,

- Working paper, 2014.
- 행정자치부, 「2013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14.
- \_\_\_\_\_,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각 연도.
- \_\_\_\_\_,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개요」, 각 연도.
-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2012.
- \_\_\_\_\_, 『상수도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하수도통계연보』, 각 연도.
- Audette-Chapdelaine, Marianne, “Local public enterprises: Water provision in Montreal,” the KIPF and the OECD, Working paper, 2013.
- Ariel Dinar, “The political economy of water pricing reform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World Bank, 2000.
- Bae, Suho, “Explaining geographical differences in water prices: Do institutional factors really matter?,” *The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37, No.2, 2007, pp. 207–250.
- Grafton, R.Q., “Determinant of residential water demand in OECD countries,” Presented in OECD, 2009.  
(<http://www.oecd.org/env/consumption-innovation/43181240.pdf>)
-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Assessment of cost recovery through water pricing,” EEA technical report, No 16/2013.
-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IWA), “International Statistics for Water Services,” 2014.
- Hyun-A Kim, “The strategic financing structure of water LPEs in Korea,” 「Capacity of sub-national governments for governing LPEs: The case of water supply」, December 5th, 20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the OECD.
- OECD, “A framework for financing water resource management,” 2012.
- \_\_\_\_\_, “Meeting the challenge of financing water and sanitation: Tools and approaches,” OECD Studies on Water, 2011.
- \_\_\_\_\_,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2010.
- \_\_\_\_\_, “Strategic Financial Planning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www.oecd.org/water/](http://www.oecd.org/water/), 2009a.
- \_\_\_\_\_, “Managing Water for All : Perspective on pricing and financing,” 2009b.
- \_\_\_\_\_, “Infrastructure to 2030: Telecom,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 OECD, 2006.
- Salvetti, Maria, “Local public enterprises: Eau du ponant,” the KIPF and the OECD, Working paper, 2013.
- Wasser-Schutzgebiet, “Profile of the German water sector 2011 summary,” Profile of the German water sector, 2011.

<부표>

<부표 1> 지방 재정의 부문별 투자 현황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환경보호	136,795	43,114	93,681	143,932	41,884	102,048	149,026	42,963	106,063
상하수도 수질	97,019	30,698	66,321	101,604	29,029	72,575	106,230	30,224	76,006
폐기물	24,889	3,203	21,686	27,146	3,143	24,003	27,527	3,776	23,750
대기	7,288	4,985	2,303	7,008	5,408	1,600	7,373	5,576	1,797
자연	2,356	753	1,603	2,716	700	2,016	2,750	844	1,906
해양	394	152	242	361	90	271	333	73	260
환경보호 일반	4,849	3,323	1,526	5,097	3,514	1,583	4,813	2,469	2,343
	2011			2012			2013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환경보호	196,717	75,861	120,856	154,187	40,550	113,638	206,566	77,430	129,136
상하수도 수질	146,664	58,831	87,833	110,219	29,456	80,764	151,831	60,450	91,380
폐기물	32,279	5,684	26,595	29,924	3,605	26,319	36,822	6,570	30,253
대기	8,044	6,183	1,862	6,061	4,555	1,505	7,760	6,061	1,698
자연	4,282	2,315	1,967	3,743	1,446	2,297	4,142	1,565	2,577
해양	1,370	1,103	267	574	298	276	975	625	350
환경보호 일반	4,078	1,745	2,333	3,666	1,190	2,476	5,036	2,158	2,878
	2014			2015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환경보호	162,636	43,620	119,016	170,868	44,847	126,021			
상하수도 수질	116,007	32,534	83,473	122,425	33,789	88,636			
폐기물	33,189	4,282	28,907	34,967	4,265	30,703			
대기	5,944	4,512	1,432	5,768	4,384	1,384			
자연	3,259	799	2,459	3,611	918	2,693			
해양	473	164	309	500	144	355			
환경보호 일반	3,764	1,328	2,436	3,597	1,347	2,250			

주: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규모 순계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각 연도

# 정부기능분류의 공식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제언

## I. 서론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jazzsh@kipf.re.kr)

정부기능분류(COFOG) 지표는 일반정부 단위의 기능별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체계 중 하나이다. 국내적으로는 기능별로 정확한 지출 규모를 파악하여 지표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높여 사전·사후적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IMF 등 국제기구에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정보를 보고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COFOG 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표 산출과정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COFOG 지표 산출과정에서 현금주의 방식의 지출규모와 발생주의 방식의 결산상 지출규모의 차이와도 연관된다.

흔히 세출예산이라 불리는 예산의 편성과 공시는 분야(division)에 기초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COFOG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출예산은 현금주의 기준에 근거한 예산 규모를 공시하지만, COFOG 지표는 발생주의 기준에 기초한 결산 규모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지표의 차이를 인식하고, 추후 COFOG 지표의 공식 작성을 전제로 할 때 지표의 산출과 그 활용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COFOG 기준에 근거하여 신뢰성이 보장된 지표를 생성하고, 그 지표를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식적 지표 작성을 전제로 COFOG 지표의 집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제약요인과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COFOG 지표 산출을 위해 2013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활용하는데, 중앙정부는 정부부처의 d-Brain 결산자료를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e-Hojo 통합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활용한다. 궁

“  
**COFOG는 정부재정지출 분석 및 국제비교를 위해 OECD가 개발하였으며, 유엔통계처(UNSD)가 출판하였다. 최근 버전은 1970년도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1999년에 발표되었다. 국민계정체계(SNA) 1993에서는 목적에 따른 지출 분류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극적으로는 추후 COFOG 지표의 공식 작성의 선결요건 차원에서 전 과정상 발생가능한 제약요인과 대안을 모니터링해 보고 그 활용에 관해 논의한다.

## II. 정부기능분류의 체계

### 1. COFOG 특징

정부기능별 분류(COFOG)는 일반정부 단위가 다양한 종류의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상세 분류기준이다. 정부 재정지출은 주로 일반조세나 기타 소득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재 차원의 집단적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사회·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개별 가구에 재화 및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주로 가계(household)나 기타 기관 단위에 지급되는 이전지출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COFOG는 정부재정지출 분석 및 국제비교를 위

해 OECD가 개발하였으며, 유엔통계처(UNSD)가 출판하였다. 최근 버전은 1970년도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1999년에 발표되었다. 국민계정체계(SNA) 1993에서는 목적에 따른 지출 분류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sup>1)</sup>

또한 목적에 따른 지출분류는 분야(Division: two-digit level), 부문(Group: three-digit level), 등급(Class: four-digit level)으로 구분된다. IMF는 UN 및 OECD의 SNA 1993의 COFOG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현 체계인 정부재정통계(GFS) 2001 COFOG를 도입하였는데, COFOG는 정부의 비용 거래(expense transactions)와 비금융자산 거래(transactions in nonfinancial assets)를 대상으로 한다. 즉, GFS COFOG는 거래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다.

GFS COFOG는 GFS 1986에서 GFS 2001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분야(Division)가 14개에서 10개로 축소되었고, 환경보호가 별도의 분야로 설정되었으며, R&D 지출이 부문으로 분리되었다. GFS COFOG는 OECD 및 UN의 분류 항목과 완전히 일치하지만, 개념상 다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OECD 및 UN의 분류 항목에는 출연, 용자, 보조 등이 포함되지만 GFS 체계는 비용과 비금융자산의 순투자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용자 같은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는 제외된다.

COFOG는 목적에 따라 지출을 분류할 수 있으며, 여러 분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면 교육, 사회보호, 환경보호 등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할 수 있고, 특정 기능이나 정책 목적에

1) 그 분류는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목적에 따른 개별 소비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의 목적별 분류(COPNI: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s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목적에 따른 생산자 지출 분류(COPP: Classification of the Outlays of Producers According to Purpose)이다.

관한 정부 지출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기능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른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 활동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 분류 체계

COFOG 지표 통계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그 비

용을 지출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특정 기능과 관련한 모든 지출은 그 경제적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특정 기능을 위해 사용되도록 설계된 현금 이전, 그와 동일한 기능으로 가계로 이전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 일반정부단위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그와 동일한 기능의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모두 동일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표 1〉 분야 및 부문별 기능별 분류 구조

7	총지출	7	총지출
701	일반 공공행정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1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7061	주거시설 개발
7012	해외 경제원조	7062	지역사회 시설 개발
7013	일반 서비스	7063	수도 공급
7014	기초연구	7064	가로등
7015	일반 공공행정 R&D	7065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7066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7	공공 채무 거래	707	보건
7018	정부 간 일반 이전	7071	의료 제품, 기기, 장비
702	국방	7072	외래 환자서비스
7021	군사 방어	7073	병원서비스
7022	민방위	7074	공공 보건서비스
7023	해외 군사원조	7075	보건 R&D
7024	국방 R&D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7025	기타 미분류 국방	708	휴양, 문화, 종교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81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
7031	경찰서비스	7082	문화서비스
7032	소방서비스	7083	방송 및 출판서비스
7033	법원	7084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7034	교도소	7085	휴양, 문화, 종교 R&D
7035	공공질서 및 안전 R&D	7086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703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709	교육
704	경제활동	7091	유아 및 초등교육
7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7092	중등교육
7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7093	2차 중등교육

〈표 1〉의 계속

7	총지출	7	총지출
7043	연료 및 에너지	7094	고등교육
7044	광업, 제조, 건설	7095	등급 외 교육
7045	운송	7096	교육 보조 서비스
7046	통신	7097	교육 R&D
7047	기타 산업	7098	기타 미분류 교육
7048	경제 R&D	710	<b>사회보호</b>
7049	기타 미분류 경제	7101	질병 및 장애
705	<b>환경보호</b>	7102	노령
7051	폐기물 관리	7103	유족
7052	폐수 관리	7104	가족 및 자녀
7053	공해 방지	7105	실업
7054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7106	주거
7055	환경보호 R&D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7108	사회보호 R&D
		7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출처: IMF, 「GFSM 2014」, 2015, 제6장 부록, p. 142.

〈표 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COFOG 체계는 정부 정책목표를 그 포괄 범위에 따라 10개의 분야 (division)와 그 하위항목인 69개의 부문(group) 및 최하위항목인 다수의 등급(class)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부문, 등급은 각각 2, 3, 4자리의 코드를 가지며, GFS 체계의 다른 통계들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코드 앞에 ‘7’을 붙여 표기한다. 이 중에서 최하위 범위인 등급은 그 서비스가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지, 집단적으로 공동체에 혜택을 주는지에 따라 개인적 서비스(IS)와 집단적 서비스(CS)로 구분된다.

COFOG의 또 다른 특징은 고정자본소비(Consumption of fixed capital) 처리와 관련된다. COFOG의 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의 순투자로 구성된다. 이 중 비용에 고정자본소비가 포함되며, 비금융자산 순투자의 산식에도 고정자본소비가 포

함되므로 실질적으로 COFOG 통계에서 고정자본 소비는 제외된다. 즉, 다음의 산식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text{COFOG 총지출} &= \text{비용} + \text{비금융자산 순투자} \\
 &= \text{고정자본소비} + \dots + \text{기타비용} \\
 &\quad + (\text{비금융자산취득} - \text{처분} - \text{고정자본 소비})
 \end{aligned}$$

또한 〈표 2〉는 정부운영표(Statement of Operations)의 비용분류에 활용되는 경제적·기능별 분류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교차분류표이다.

〈표 2〉 기능 및 경제적 분류에 의한 지출의 교차 분류

경제적 분류 기능적 분류	피용자 보상 [GFS]	재화 및 서비스 사용	고정자본소비 [GFS]	이자 [GFS]	보조	출연	사회급여 [GFS]	기타 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주: [GFS]는 GFS 항목이 2008 SNA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지만, 상이한 범위를 가진 경우에 표시됨  
출처: IMF, 「GFSM 2014」, 2015, 제6장 부록, p. 324.

COFOG 통계는 정부 지출의 기능별 규모와 그 추이 등 비교와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투입(input) 측면에서의 시계열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분석은 다음 회계연도 또는 중장기적 재정운영 방향 수립 중 기능별 한도(ceiling)를 배분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GFS는 일반정부의 재정운영 관련 국제비교, 재정정책으로의 환류 등을 목적으로 IMF에서 제시한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여러 국가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비교·분석 등에 활용된다.

또한 COFOG 통계는 어떤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정부가 지출한 규모와 그 추세를 분석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부처가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부처별 결산 등을 통해 조직별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정부 조직이 개편될 경우 시계열에 따른 일관성 있는 통계 작성이 제한되며,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유사한 분류체계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예산 과목구조), 나라살림개요, SOCX 등이 있다. 프로그램예산체계는 예산과목 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그 구조는 ‘장(분야) - 관(부문) - 항(프로그램) - 세항(단위사업) - 목’으로 구성된다.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3항과 제4항이다. 특히, 16개 장(분야) - 69개 관(부문)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며, 그 하위의 항 프로그램과 세항으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69개 관(부문)은 COFOG의 69개 부문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COFOG 지표 산출의 기초자료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기초하여 COFOG 지표를 집계한다. 따라서 COFOG의 부문(69)에 근거하여 예산편성부터 결산과정을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예산과목 구조상 분야·부문 분류체계

16개 분야 69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0. 교통 및 물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089 사회복지일반	124 해운·항만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62 관광	090. 보건	125 항공·공항
021. 법원 및 헌재	063 체육	091 보건의료	126 물류 등 기타
022. 법무 및 검찰	064 문화재	092 건강보험	130. 통신
023. 경찰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품안전	131 방송통신
024. 해경	070. 환경	100. 농림수산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01 농업·농촌	140. 국토 및 지역개발
030. 통일·외교	072 폐기물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1. 통일	073 대기	103 수산·어촌	142 지역 및 도시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40. 국방	075 해양환경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0. 과학기술
041. 병력운영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출처: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3, p. 251.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별 투자방향’ 수립 또는 나라살림(예산개요 또는 예산홍보책자)상 ‘분야별 자원배분’ 설명 시 활용되는 12개 분야는 예산 과목구조(프로그램 예산체계)상 16개 분야와 차이가 있다. 이는 대국민 설명(홍보)용으로 재구성하여 기능별 지출규모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OECD SOCX는 1996년 사회정책 분석을 위해 개발된 사회보장관련 통계체계로, SNA에서 사회적 이전(현금과 현물급여)에 대한 통계자

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SOCX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로 구성되며, COFOG에서는 보건(707)과 사회보호(710)가 혼합된 지출형태라 할 수 있다.

## 2. 주요국 사례

### 가. EU 통계청(Eurostat)

Eurostat는 SNA 1993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ESA 95(European System of Accounts 1995)의 COFOG를 작성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국가별 비교를 위해 일반정부부문 및 정부지출에 대한 기준 마련, 발생주의 회계 기준의 통계 작성, 연결(consolidation)과 순계처리(netting) 등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UN COFOG와 동일한 분류체계이다.

Eurostat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COFOG 통계 작성 시 분류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간접측정 금융서비스(FISIM)의 이자, 고정자본소비(consumption of fixed capital), 사회기여금 및 급여(social contributions and benefits), 개인적 및 집단적 최종소비지출, 현물 사회적 이전 등에 대한 분류 지침 및 사례 등이다.

Eurostat는 COFOG와 여타 국제통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환경보호활동과 보건계정활동이 그 예이다. 환경보호활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COFOG의 '환경보호'는 환경보호활동 및 지출분류(CEPA)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환경보호 분야의 6개 부문은 CEPA를 기초로 하고 있다.

〈표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COFOG의 환경보호 분야와 CEPA는 동일한 분류항목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CEPA의 경우 통계 작성 목적상 '공해 방지(pollution abatement)' 부문이 세분화되어 있다. 두 통계치가 상이할 수 있는데, 이는 COFOG가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를 분류단위로 하고 있지만, 부처나 행정적 단위 자체가 분류단위가 될 수 있어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PER)이나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작성과 비교할 때 개략적

“  
Eurostat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COFOG 통계 작성 시 분류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간접측정 금융서비스(FISIM)의 이자, 고정자본소비, 사회기여금 및 급여, 개인적 및 집단적 최종소비지출, 현물 사회적 이전 등에 대한 분류 지침 및 사례 등이다.  
”

인 통계로 작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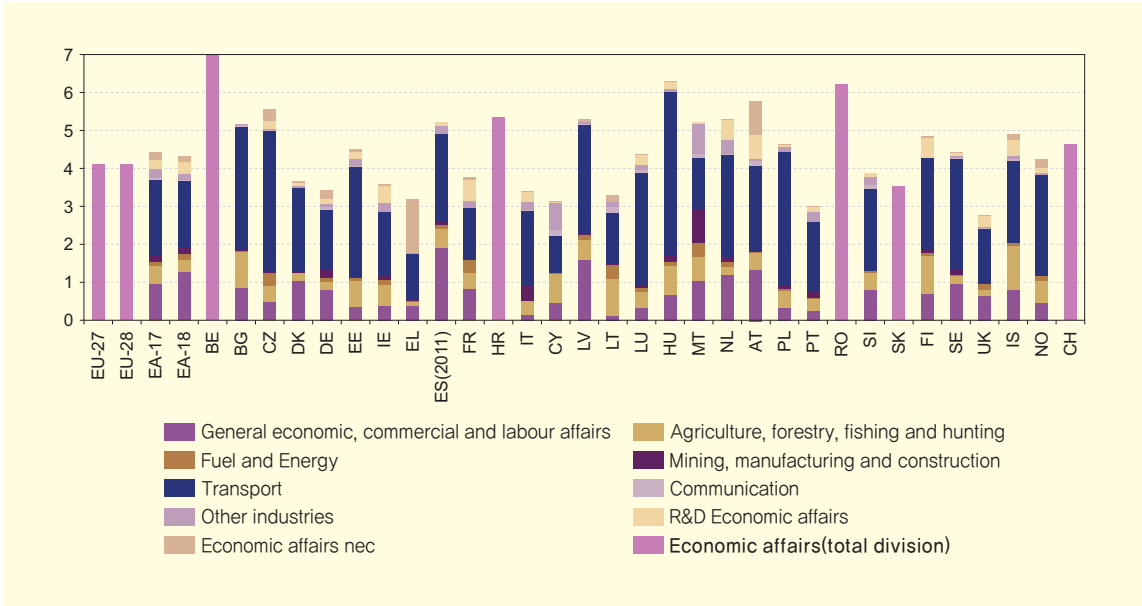
〈표 4〉 COFOG의 환경보호(05) 분야와 CEPA 2000 분류항목 비교

COFOG(05 환경보호)	SEEA(CEPA 2000)
05.1 폐기물 관리	3. 폐기물관리
05.2 폐수 관리	2. 폐수관리
05.3 공해 방지	1. 대기 및 기후 보호
	4.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의 보호 및 복구
	5. 소음 및 진동 방지
05.4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7.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6. 종(생물)의 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호
05.5 환경보호 R&D	8. 연구 및 개발
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9. 기타 환경보호 활동

Eurostat는 연도별 GDP 대비 특정 기능의 지출 규모에 대한 EU 회원국별 비율과 EU 평균 비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EU 27개국 일반정부 지출은 GDP 대비 49.3%, 경제 분야는 GDP 대비 4.1% 지출로 2011년도 GDP 대비 4.0%인 것과 비교할 때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2012년도 경제분야에 대한 EU-27 일반정부 지출 비율

(단위: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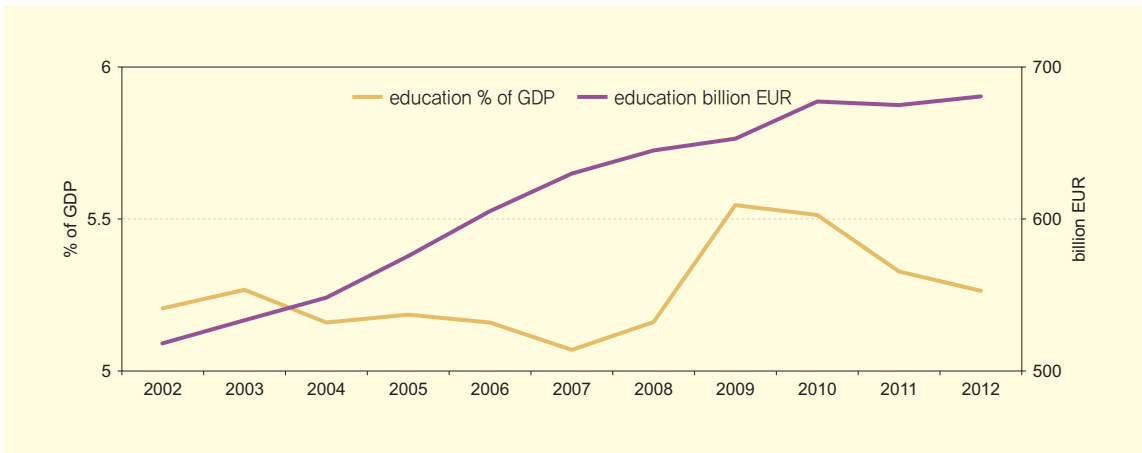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6/2014, ISSN: 2314-9647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분야 지출 추세도 발표하고 있다. 교육의 경우 EU 27개국 일반

정부의 GDP 대비 교육분야 지출 비율은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 2002~2012년도 교육분야에 대한 EU-27 일반정부 지출 변화



출처: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5/2014, ISSN: 2314-9647

또한, EU 통계청은 주요 분야별로 회원국 간 비교 및 부문별 통계에 대한 분석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통계데이터의 원천과 이용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단일의 기준 제공을 위해 분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호주**

호주는 2010년 14개 분야로 구성된 정부 목적별 분류(GPC: Government Purpose Classification)를 COFOG를 기반으로 하여 수정·발표하였다. GPC는 일반정부의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비용,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등의 거래를 목적별로 분류하는 데에 사용된다. 14개 분야는 COFOG 10개 분야와 비교할 때 환경보호 분야가 없으며, 경제활동 분야가 6개의 분야로 세분화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사한 체계이다. COFOG 10개 분야 중 경제활동 분야는 GPC에서는 연료 및 에너지(09),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10), 광업, 제조업, 건설업(11), 운송 및 통신(12), 기타 경제활동(13), 기타 목적(14) 등의 6개 분야로 분류된다.

GFSM 2014 발간과 관련하여 호주는 이를 반영한 호주 GFS 매뉴얼 3판을 발간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SNA 2008을 기반으로 하며, GPC를 수정한

**〈표 5〉 호주 GPC 및 COFOG-A 체계 변화**

COFOG	GPC	COFOG-A
01. 일반공공행정	01. 일반공공행정	01. 일반공공행정
02. 국방	02. 국방	02. 국방
03. 공공질서 및 안전	03. 공공질서 및 안전	03. 공공질서 및 안전
04. 경제활동		04. 경제활동
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13. 기타 경제 활동	
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10.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043. 연료 및 에너지	09. 연료 및 에너지	
044. 광업, 제조, 건설	11. 광업, 제조, 건설	
045. 운송	12. 운송 및 통신	
046. 통신		
047. 기타 산업		
048. 경제 R&D	13. 기타 경제 활동	
049. 기타 미분류 경제		
05. 환경보호		05. 환경보호
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07.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07. 보건	05. 보건	07. 보건
08. 휴양, 문화, 종교	08. 휴양, 문화	08. 휴양, 문화, 종교
09. 교육	04. 교육	09. 교육
10. 사회보호	06. 사회보장 및 복지	10. 사회보호
	14. 기타 목적 <sup>1)</sup>	11. 운송

주: 1) 기타 목적 분야는 공공채무거래, 일반 목적 정부 간 거래, 자연재해 구조 부문 등으로 구성됨

COFOG-A를 제시하고 있다. COFOG-A는 SNA 2008 및 GFS 2014 COFOG의 10개 분야에 경제활동 중 운송 부문을 별도의 분야로 편성한 총 11개 분야로 구분한다. 또한 특정 항목의 처리 관련 사례, 데이터의 산출 및 작성 방법 등은 별도의 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미국

미국은 2000년도 국민계정(NIPA'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에서 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를 기존 21개 기능으로 분류했던 체계

에서 9개 기능 및 25개의 하위 기능 체계를 변경하였다. 9개 기능은 국제적인 COFOG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COFOG의 환경보호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이전 체계에서도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특히 폐기물 관리와 폐수 관리 등은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기능에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NIPA 체계는 예산관리처(OMB)에서 사용되는 예산체계와도 연관이 있다. OMB의 예산 체계는 20개의 예산기능으로 구분되고, 그중 17개는 주정부 관련 광범위한 범위의 기능에 대한 것

〈표 6〉 미국 NIPA 및 OMB 분류체계

COFOG	NIPA	OMB (현재도 동일)
01. 일반공공행정	01. 일반공공행정	150. 국외업무 800. 일반정부 900. 순이자 920. 총당금
02. 국방	02. 국방	050. 국방
03. 공공질서 및 안전	03. 공공질서 및 안전	750. 사법행정
04. 경제활동	04. 경제활동	250. 일반과학, 우주 및 기술 270. 에너지 300. 자연자원 및 환경 350. 농업 370. 상업 및 주거지원 400. 운송
05. 환경보호	n/a	n/a
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05. 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450. 지역사회 및 지역 개발
07. 보건	06. 보건	550. 보건 570. 의약품 700. 보훈급여 및 서비스
08. 휴양, 문화, 종교	07. 휴양, 문화	
09. 교육	08. 교육	500.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10. 사회보호	09. 소득보장	600. 소득보장 650. 사회보장 950. 비배분차감수령액

이며, 나머지 3개는 순이자, 비배분 차감 수령액 (undistributed offsetting receipts), 충당금 등으로 연방정부 예산과 관련된다. COFOG 체계와 NIPA 기능별 분류 및 OMB 예산기능 체계는 차이가 있는데, COFOG의 환경보호 분야는 NIPA 체계의 경우 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및 경제활동 분야에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OMB 예산기능 체계의 경우 자연자원 분야, 환경 분야, 지역사회 및 지역 개발 분야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 라. 캐나다

캐나다는 IMF의 GFS COFOG를 기반으로 한 CCOFOG(Canadian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2014<sup>2)</sup>를 작성하였다. 최근 수정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하였고, GFS 통계 작성을 위해 Canadia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CGFS<sup>3)</sup>는 일반정부부문 전체의 기능별 비용을 포괄하고 있다.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자료는 2015년도 초부터 작성되어, 향후 이 통계자료와 국민계정, 수지보고서, 국제투자대조표, 투입산출표 등의 거시통계와의 연계하여 국민계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CCOFOG와 GFS COFOG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두 분류체계는 10개 분야의 동일한 체계를 가진다. 다만, 2008-2012 통계 작성 시 CCOFOG는 고정자본소비 및 비금융자산의 취득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만 작성하였다. 더불어 CCOFOG 활용 방안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연재해 동안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보건, 사회보호, 교육 분야)의 안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2) 캐나다 COFOG를 의미한다.

3) 캐나다 GFS를 의미한다.

4)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을 포괄한 재정통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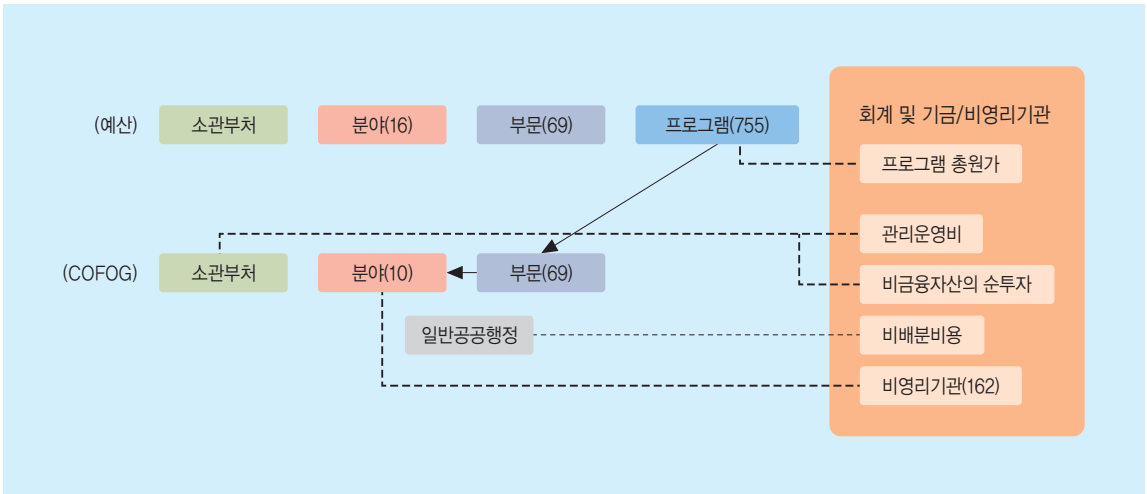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의 집계는  
 프로그램 단위별 총원가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관리운영비와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한다.  
 또한 162개 비영리기관은  
 그 기관의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지표가 집계된다.**  
 ”

### Ⅲ.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COFOG 지표의 산출은 중앙정부(중앙회계·기금+비영리기관)와 지방자치단체(지방회계 및 기금+비영리기관)와 지방교육재정을 합한 일반정부를 단위로 집계한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작성중인 지방교육재정은 지역통합재정통계(「지방재정법」 제59조)<sup>4)</sup>에 근거하여 향후 광역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의 집계는 프로그램 단위별 총원가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관리운영비와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정으로 집계한다. 또한 162개 비영리기관은 그 기관의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지표가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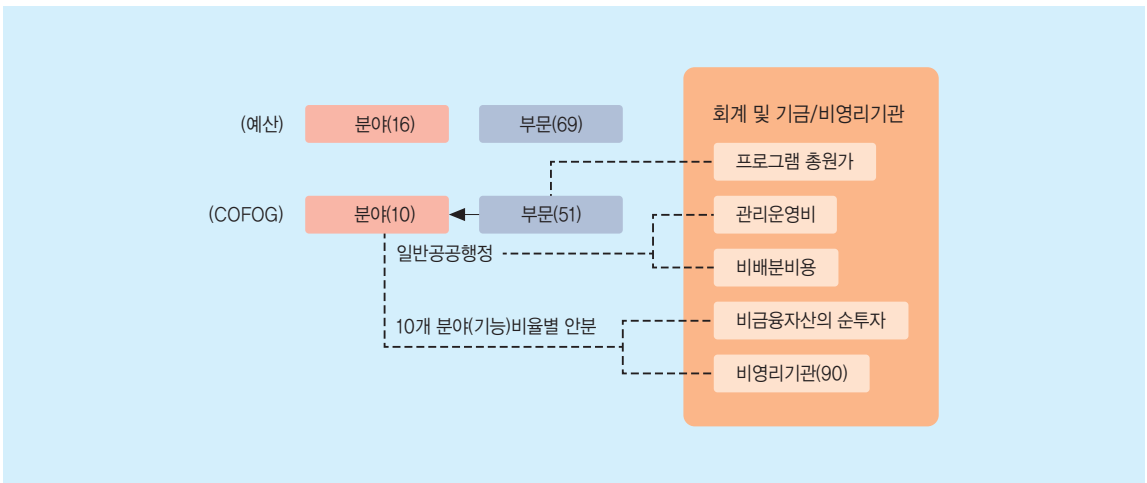
[그림 3]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과정(현재)



지방자치단체는 e-Hojo 프로그램에서 COFOG 지표가 자동산출되며, 회계 및 기금의 집계는 프로그램별 총원가를 부문별로 집계한다. 또한 '관리운영비(인력운영비 등)'와 '비배분비용'은 '일반공공행

정'으로 집계하고, '비금융 자산의 순투자'를 포함하여 90개 '비영리기관'은 10개 기능별 총지출 비율에 근거하여 안분되고 있다. 다만 관리운영비는 일반 공공행정으로만 집계되어 과다하게 추계된다.

[그림 4]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과정(현재)



### 1.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중앙정부 부문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재정운영표 결산자료를 기초로 COFOG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COFOG 지표 산출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작성된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에서 프로그램 총원가, 관리운영비(인건비 포함), 비배분비용 등 비용항목에 대해 기능별로 분류한 후 비금융자산 순투자를 배분해야 한다. 즉, COFOG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비용(프로그램 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을 각각의 기능별로 분류하고, 비금융자산 순투자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합산해야 한다.

〈표 7〉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일반공공행정 152개, 국방 33개, 공공질서 및 안전 51개, 경제사업 256개, 환경보호 21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3개, 보건 40개, 휴양·문화·종교 58개, 교육 32개, 사회보호 99개 등 총 755개 프로그램에서 COFOG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d-Brain 프로그램에서 COFOG 지표가 자동 집계되지 않아 755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지표를 집계

“  
COFOG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정부 단위로  
집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부문’ 단위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하라는  
명시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COFOG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정부 단위로 집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부문’ 단위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하라는 명시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부문’ 또는 ‘프로그램’ 단위 중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COFOG를 산출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정부부처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주요 기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명에 기초하여 COFOG 기능을 분류해 본다.

〈표 8〉은 프로그램 총원가를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주된 기능을 집계한 자료이며, 부처의 기능

〈표 7〉 중앙정부의 COFOG 산출(FY2013 기준)

(단위: 개)

GFS 코드 및 기능	프로그램 수
701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152
702 국방(DEFENSE)	33
703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51
704 경제활동(ECONOMIC AFFAIRS)	256
705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21
706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13
707 보건(HEALTH)	40
708 휴양, 문화,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58
709 교육(EDUCATION)	32
710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99
합계	755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내부자료

〈표 8〉 중앙정부 부처 주기능의 COFOG 기능별 분류

COFOG 분류	해당 부처
701 일반공공행정	감사원, 관세청, 국과위, 인권위, 국정원, 국무조정실, 권익위, 국세청, 국회, 기재부,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 민주평통, 법제처, 외교부(외통부), 원자력위, 조달청, 선관위, 통계청, 특임장관실, 행안부
702 국방	국방부, 방위사업청
703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청, 대법원,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704 경제활동	고용부, 공정위,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금융위, 기상청,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청, 지경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705 환경보호	환경부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행복청
707 보건	식약처(식약청)
708 휴양, 문화, 종교	문화재청, 문화부
709 교육	교과부(교육부)
710 사회보호	보훈처, 복지부, 안행부, 여가부, 통일부

이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 부처별 COFOG 기능 매칭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 부처가 여러 기능에 중복된 경우가 많은데, 이 중 프로그램 총원가가 가장 큰 규모를 해당 부처의 주된(main) 기능으로 분류한다. 특이한 점은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경제활동이 주 기능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반공공행정이 주 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자금관리, 각 부처의 공용 재산 취득 프로그램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주요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부록〉 참고).

한편 관리운영비 등을 각 부처별 주기능으로 배분하는 것은 여러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부처의 경우 주 기능이 왜곡되거나, 상당한 규모인 주 기능 이외의 나머지 기능이 무시될 수 있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처별 배분의 경우 주 기능에 단일 배분할 것인지, 중복된 기능의 총원가 비율에 따라 안분할 것인지 등의 배분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2. 중앙정부 비영리기관의 COFOG 산출

〈표 9〉는 2013 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 산하 비영리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한 자료이다. GFS 작성대상인 비영리기관은 총 162개이다. 다만 8개 기관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들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COFOG 기능에 매칭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부처는 COFOG 기능 매칭 시 하나의 부처가 여러 기능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영리공공기관의 매칭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비영리공공기관은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각각 단일 COFOG 기능으로 매칭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의 기능을 집계할 때 단일 기능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9〉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기능별 분류(8개 기관 예시)

기관명	사업내용(주요 기능)	COFOG 분류
명동·정동극장	• 명동에술극장 및 정동극장의 운영·관리사업 등	708 휴양·문화·종교
체육인재육성재단	• 체육분야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및 평가 등	708 휴양·문화·종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등	707 보건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게임산업과 게임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 등	708 휴양·문화·종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 등	701 일반공공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사업〉·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등	707 보건
...(중략)	...(중략)	...(중략)
국민연금공단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710 사회보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에 관한 연구 등	701 일반공공행정

### 3.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지방자치단체의 COFOG지표는 중앙정부의 69개 부문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51개 부문만을 기준

으로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그 산출방법은 〈표 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문’ 단위로 집계된다.

〈표 10〉 지방자치단체 COFOG 산출(부문 단위)

GFS 코드	기능(분야)	부문
701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지원 및 기타경비
702	국방	재난방재·민방위
703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704	경제활동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705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주택,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707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708	휴양, 문화, 종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709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710	사회보호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출처: 행정자치부, COFOG 매핑자료

[그림 5] e-Hojo의 GFS COFOG 산출 화면 예시

GFS코드	GFS계정명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내부거래	합계
7	총 경비	6,235,309,082,252	654,721,045,093	74,353,257,456	659,777,295,031	0	7,624,240,670,632
701	일반공공행정	1,517,620,770,716	141,101,045,761	63,169,379,522	2,663,146,143	0	1,724,755,142,142
702	국방	0	0	0	0	0	0
703	공공질서및안전	70,757,267,596	0	4,429,452,607	0	0	75,186,720,203
704	경제활동	982,855,281,470	132,274,152,225	272,191,115	282,259,259,801	0	1,397,700,924,621
705	환경보호	146,029,206,296	5,291,685,286	1,156,906,242	73,677,855,802	0	226,144,628,826
706	주식 및 지역 사회 시설	113,489,984,229	919,597,249	548,138,000	301,136,994,085	0	416,093,583,562
707	보건	227,165,963,346	0	2,541,909,970	0	0	229,707,873,316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184,787,732,228	0	1,482,511,800	0	0	186,240,244,028
709	교육	413,491,598,150	0	273,832,340	0	0	413,765,430,490
710	사회보호	2,578,992,398,122	375,144,704,462	498,935,860	0	0	2,954,636,118,444

출처: DSI 연차보고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GFS 주요 보고서(정부운영표, COFOG 등)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e호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운영표(GFSM 2001의 정부운영표)의 경우 기말 결산 시 특정 항목이 GFS의 해당 항목으로 불러 오도록 매핑되어 있어 쉽게 산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COFOG 통계도 자동적으로 산출된다.

지표 산출과정에서 간단한 프로세스로 매핑이 될 수 있지만, 미수 또는 미지급 계정 같은 발생주의 항목과 비금융자산 순취득의 매핑 처리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COFOG 지표 통계는 운영보고서의 총비용과 비교·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COFOG의 총지출 합계는 운영보고서의 비용과 비금융자산 순취득의 합과 같은 지 검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운영비(인건비 포함)를 배분하는 것도 중앙정부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가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어 부처 인건비를 해당 기능으로 한번에 매핑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기능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각 과별 기능을 감안해서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배분했을 유인이 크다. 이렇게 일괄 배분된 인건비가 정확한 통계수치를 얼마나 왜곡시키는 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기능별로 정밀하게 배분할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 IV. COFOG 재원산출 대안 탐색

### 1. 집계단위

세출예산 중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 부문 및 그 하위인 프로그램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단위는 정부 기능별 구분으로 최상위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일반공공행정(010), 공공질서 및 안전(020), 통일·외교(030), 국방(040), 교육(050), 문화 및 관광(060), 환경(070), 사회복지(080), 보건(090), 농림수산(10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교통 및 물류(120), 통신(130), 국토 및 지역개발(140), 과학기술(150), 예비비(160) 등 16개로 구성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야 분류는 GFS COFOG의 10개 분야(division)와 매칭이 가능하다.

‘부문’ 단위는 69개로 구성된다. 1개의 분야는 다수의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며, 분야와 부문의 차이는 정책목표가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050)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051), 고등교육(052), 평생·직업교육(053), 교육일반(054) 등의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다만, 예비비(161)를 제외한 68개 부문 중 사회복지(080) 분야의 공적연금(083) 부문은 다른 부문들과 상이한 특징이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나 부문을 기준으로 지표를 집계할 경우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결과를 낼 수 있다. 즉,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보다 분류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목표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분류 기준과의 정부조직,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체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즉, 분류에 대한 정확성의 측면에서는 하위단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  
**분야나 부문을 기준으로  
 지표를 집계할 경우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결과를 낼 수 있다.  
 즉,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보다 분류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

지표집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에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는 그 수가 상당하므로 세분화에 큰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고, 많은 경우 상위 정책목표에 따라 구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COFOG 분류에 비용 대비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단위로 분류하는 것은 분야나 부문보다 분류기준 적용에 있어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COFOG 통계 작성을 위해 기존 세출예산 프로그램체계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부문과 COFOG의 부문이 일치된다면, 부문별 결산자료를 통해 COFOG 통계 산출 시 정확성 및 편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COFOG 지표를 집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문’ 단위로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편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부문’에 근거하여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실무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대대적인 개편

〈표 11〉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COFOG에 따른 부문2 추가 예시

〈예산 편성〉 현행체계에 부문추가								
소관	회계명	회계	계정	분야	부문	부문2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84	0	080	083	71020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결산〉 현행체계에 부문추가								
소관	분야명	부문명	부문2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교육부	사회복지	공적연금	71020		600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이 어렵다면,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COFOG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예산편성 시부터 결산과정까지 부문코드(등급코드 5자리)를 추가하면 프로그램상에서 집계가 용이할 것이다. 〈표 1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산편성 시부터 ‘부문 2’를 추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산 시에도 이 코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경우 수작업으로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e-Hojo 시스템에서는 COFOG 지표가 자동 산출되고 있으나, 지표의 정확성은 물론 세부 ‘부문’ 단위까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2. 인력운영비 등 배분 방안

인력운영비 등 간접비 배분에는 ‘부문’의 상위단위인 ‘분야’가 기본단위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의 중복 없이 기능별로 정부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며 부처별 결산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부처의 간접비(특히 인건비)가 해당 기능으로 바로 집계될 수 있다. 만일 보다 정밀한 통계치를 위해 부

문, 프로그램이나 세부사업 단위의 통계를 작성한다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밀한 통계치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중 인건비는 정밀하지 못한 방법으로 배분하게 되는 것으로 목적과 방법이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인건비 배분은 분야 단위로 직접 분류할 경우 많은 문제가 해결되며,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통계작성이 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인건비 배분이 분야별로 이루어진 부처별 결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존 결산자료에서 별도의 배분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지출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전체 일반정부 지출규모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얼마나 정확한 통계치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통계 산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e-호조에 결산자료에서 COFOG 10개 분야로 매핑되어 있어 담당자가 내부거래를 입력만하면 손쉽게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가 정확한지? 정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는지? 또는 내부거래를 빠짐없이 입력하였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입력부터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소수 인력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를 검토, 취합 후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작성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은 일선 부서의 경우 주요 업무를 해당 부문(2013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1개 부문)에 매핑하여 분야로 집계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배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처럼 인건비가 사업부문에 배분되어 편성되지 않고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대부분 일반공공행정(701) 분야로 배분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통계상 일반공공행정(701) 분야가 실제보다 과다 집계된다. 어느 정도 규모의 통계 왜곡이

“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를 관련 사업부문으로 배분하였다. 이때 부서별 인건비에 대해 각 부서의 주요 사업내용,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우선 분류하고, 행정지원부서의 경우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D시, B시의 경우 일반공공행정(701) 분야에 각각 9.3%, 27.0% 과다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2013회계연도 D시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후)

(단위: 원, %)

GFS 코드	GFS계정명	배분 전 합계 (A)	공통인건비 (B)	인건비 배분액 (C)	배분 후 합계 (D=A-B+C)	비율 A/D × 100
7	총경비	7,624,240,670,632	269,731,412,715	269,731,412,715	7,624,240,670,632	100.0
701	일반공공행정	1,724,755,142,142	269,731,412,715	123,515,140,690	1,578,538,870,117	109.3
702	국방	0	0	0	0	0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5,196,720,203	0	87,717,936,795	162,914,656,998	46.2
704	경제활동	1,397,700,924,621	0	13,770,154,140	1,411,471,078,761	99.0
705	환경보호	226,144,633,826	0	2,798,880,790	228,943,514,616	98.8
706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416,093,583,562	0	15,477,857,910	431,571,441,472	96.4
707	보건	229,707,873,316	0	6,019,037,350	235,726,910,666	97.4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186,240,244,028	0	13,603,823,430	199,844,067,458	93.2
709	교육	413,765,430,490	0	0	413,765,430,490	100.0
710	사회보호	2,954,636,118,444	0	6,828,581,610	2,961,464,700,054	99.8

출처: D시청 인력운영비 내부자료 재구성

〈표 13〉 2013회계연도 B시 COFOG 통계(인건비 배분 후)

(단위: 원, %)

GFS 코드	GFS계정명	배분 전 합계 (A)	공통인건비 (B)	인건비 배분액 (C)	배분 후 합계 (D=A-B+C)	비율 A/D×100
7	총경비	1,033,798,185,899	58,806,302,474	58,806,302,474	1,033,798,185,899	100.0
701	일반공공행정	242,733,424,640	58,806,302,474	7,140,134,238	191,067,256,404	127.0
702	국방	0	0	0	0	0
703	공공질서 및 안전	6,246,684,318	0	1,399,058,655	7,645,742,973	81.7
704	경제활동	107,420,507,837	0	2,119,213,000	109,539,720,837	98.1
705	환경보호	164,072,681,600	0	12,133,499,720	176,206,181,320	93.1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23,558,087,354	0	20,961,972,730	44,520,060,084	52.9
707	보건	20,344,456,424	0	6,863,038,790	27,207,495,214	74.8
708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54,429,180,970	0	4,484,328,751	58,913,509,721	92.4
709	교육	42,256,742,100	0	258,211,430	42,514,953,530	99.4
710	사회보호	372,736,420,656	0	3,446,845,160	376,183,265,816	99.1

출처: B시청 인력운영비 내부자료 재구성

이를 지방자치단체 전체 통계에 확장하면, 인건비의 일괄 배분으로 인해 일반공공행정(701)분야 전체 규모 39.7조원 중 3.7조원(9.3% 적용시), 10.7조원(27.0% 적용시) 과다 집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액인 167.9조원의 2.2%, 6.4%에 해당하며, 일반정부 전체 지출규모인 463.3조원의 0.8%, 2.3%에 해당한다. 적은 규모가 아닌 만큼 국제비교 또는 내부 관리 목적을 위한 보다 정확한 통계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D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이 과소 집계(46.2%)되고 있고, B시의 경우,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이 과소 집계(52.9%)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D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에, B시의 경우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등에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FY2013 일반정부 및 한국은행 COFOG 통계 비교

(단위: 십억원)

구분	GFS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은행 통계
	지방자치단체	일반정부	일반정부
총지출	167,892	463,269	453,991.4
일반공공행정	39,740	77,601	77,495.0
국방	-	32,985	35,368.8
공공질서 및 안전	2,652	17,163	18,239.9
경제활동	28,689	84,195	76,061.0
환경보호	11,761	13,754	10,764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14,832	18,349	13,533.8
보건	2,961	48,788	55,159.4
휴양, 문화, 종교	6,835	9,936	9,821.5
교육	9,165	63,458	73,840.2
사회보호	51,253	97,036	83,707.7

주: 한국은행 통계자료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at <http://www.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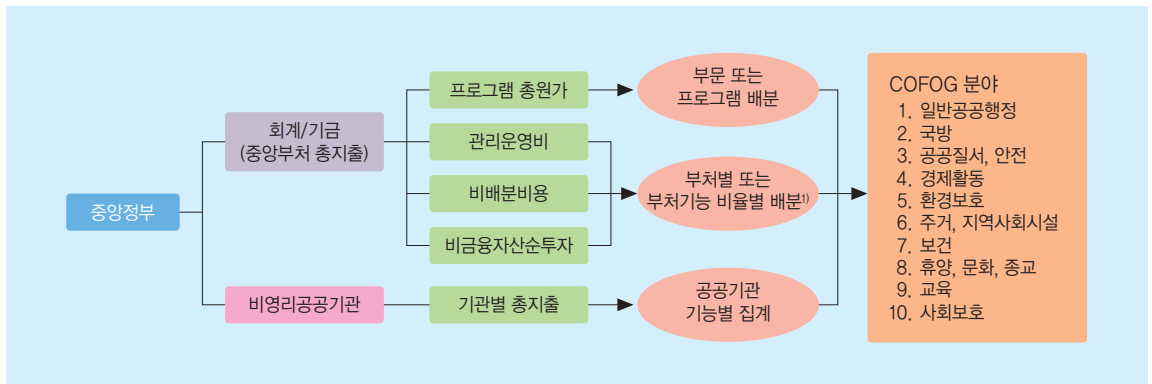
GFS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와 한국은행의 COF OG 통계자료를 비교하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는 정부의 자기자본형성을 위한 산출액은 차감하고 사회보장 현물급여는 사회부조에 포함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교육 기능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교육의 경우 한국은행의 경

우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포괄하고 있지만, GFS 기준 시물레이션 결과는 결산자료인 교육비특별회계만을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관해 추후 갭(gap)을 줄이기 위해 두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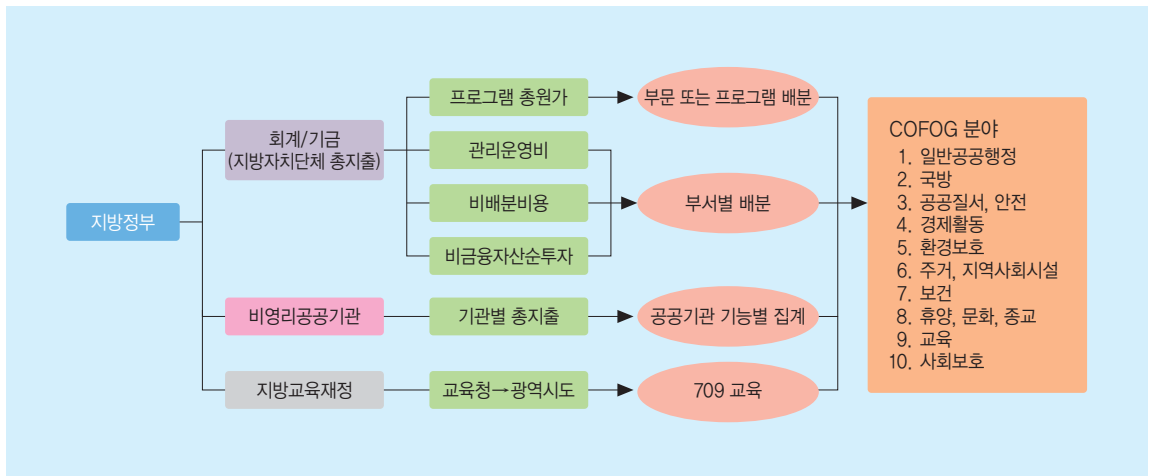
###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그림 6] 중앙정부 COFOG 지표 산출(안)



주: 1) '부처기능 비율별 배분'은 각 부처의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COFOG 기능에 분류했을 때, 프로그램 총원가가 배분된 모든 기능에 비율별로 안분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7]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  
**우리나라의 COFOG 기능별  
 정부지출규모는  
 경제활동, 교육, 보건, 일반공공행정 순이다.  
 OECD 국가들은  
 사회보호, 보건, 일반공공행정,  
 교육 순이다.**  
 ”

첫째,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총원가를 산출 후 ‘부문’ 단위로 집계하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부처별 또는 부처기능 비율로 배분하여 집계하고, 비영리기관별 총지출은 공공기관 기능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총원가를 산출 후 ‘부문’ 단위로 집계하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부서(기능)별로 배분하여 집계하고, 비영리기관별 총지출은 공공기관 기능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기관의 총지출을 집계할 때 그 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지표를 집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e-Hojo 시스템에서 자동산출되는 통합재정통계 연차보고서<sup>5)</sup>에서는 인력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으로만 집계되고 있어 일반공공행정(701)이 과다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운영비가 부서별(기능별)로 배분되도록 e-Hojo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운영비를 경제활동(704)으로 집계하기도 한다(N시 a면과 s면 인터뷰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소수의 공무원으로 대부분 민원업무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COFOG 지표를 분류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비를 타 기능(예, 경제활동 704)으로 자의적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V. COFOG 활용 방안

### 1. COFOG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지출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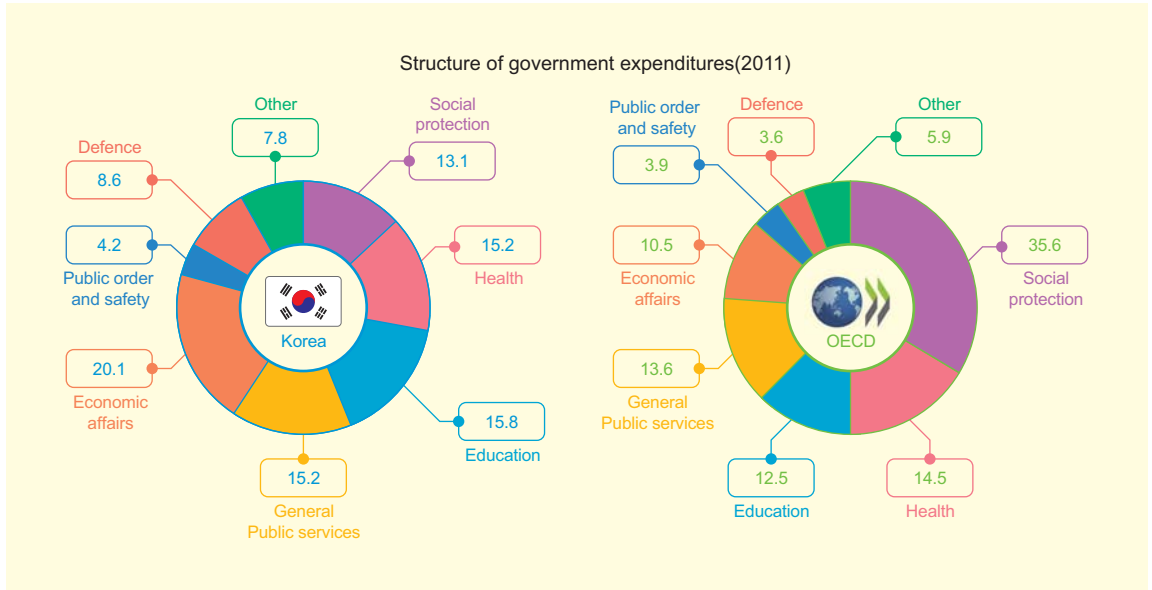
EU 통계청(eurostat)은 연도별 GDP 대비 특정 기능에 대한 지출 규모를 집계하여 EU 회원국별 비율, EU 평균 비율, 통계데이터의 원천과 이용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분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가별 정부조직 구조 등과 관계없이 일관성이 제고된 통계자료의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아래 [그림 8]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COFOG 기능별 정부지출규모는 경제활동, 교육, 보건, 일반공공행정 순이다. OECD 국가들은 사회보호, 보건, 일반공공행정, 교육 순이다. 한 마디로 한국은 경제활동과 교육에 많은 지출하고 있지만, OECD 국가는 복지분야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기능별 분류를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COFOG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5) 연차보고서의 종류는 발생주의 기준에 근거한 통합재정통계양식을 의미한다. 그 구성은 운영보고서,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수익명세, 비용명세,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 자산과 부채의 보유손익명세, 자산과 부채의 기타 내용변화명세, 재정상태표,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 부문별 금융자산부채의 명세, 자산과부채의 거래외경제유량 등 11개이다.

[그림 8] OECD 평균 및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구조

(단위: %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출처: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at [http://www.oecd.org/gov/GAAG2013\\_CFS\\_KOR.pdf](http://www.oecd.org/gov/GAAG2013_CFS_KOR.pdf)

## 2. COFOG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지출추이 분석(국내)

일반적으로 COFOG 기능별 지출추이를 내부 통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COFOG 지표에 기초하여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선은 특정 기능별 정부지출(government outlays)의 시계열 추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일반정부가 제공하는 개인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와 집단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구분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결산정보에 근거하여 COFOG 통계를 작성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EU와 같이 동종 자치단체별로 재정지출규모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분야와 부문 간 지출 규모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정정

책의 방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EU와 호주 같이 지표 작성기준(매뉴얼)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3. 재정정책 수립자료로 활용

GFS 체계에서의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산출된 정보는 수익 및 비용 등의 재정운영 성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재정상태 점검 및 분석, 미래의 위험요인 식별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COFOG 통계와 함께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 수립 및 원가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자원배분 등의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VI. 정책적 함의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COFOG 통계 작성을 위해 기존 세출예산 프로그램체계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COFOG 통계 산출의 정확성, 편이성 및 시계열적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또는 ‘부문’ 단위로 COFOG 지표를 집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문’ 단위로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계의 작성단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전면적인 개편이 현실적, 실무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COFOG 지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부문’ 단위에 기초하여 COFOG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산편성 시부터 결산단계까지 부문 코드(등급코드 5자리)를 추가하여 COFOG 지표 집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예산편성(세출예산서)시에 부문 2를 추가하여 활용하고, 결산(결산보고서)에도 이 코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총원가를 산출 후 부문단위로 집계하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부처별 또는 부처기능비율별로 배분하여 집계하고, 비영리기관별 총지출은 공공기관 기능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총원가를 산출 후 부문단위로 집계하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는 부서별로 배분하여 집계하고, 비영리기관별 총지출은 공공기관 기능별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영리기관은 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지표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타당성 여부는 논

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경우 수작업으로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d-Brain에서 자동으로 지표가 집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e-Hojo에서 COFOG 지표가 자동 집계되고 있지만 일부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인력운영비는 일반공공행정(701)으로 자동집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각 COFOG 기능(701~710)별로 인력운영비가 자동집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비를 경제활동(704)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인력운영비가 타 기능(예, 경제활동 704)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필요가 있다.


COFOG 정보의 활용은 다음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COFOG 지표의 국제비교를 통해 정책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세출)예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마디로 예산 정보에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만큼 결산정보 활용은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COFOG 지출의 규모 및 추세 등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국제 비교를 통해 정책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COFOG 지표를 활용하여 기능별 지출추이를 분석하고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기능별 정부지출을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재정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FOG 통계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결산 정보이므로 성과정보와 원가정보를 통해 분야별 비용-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기반한 COFOG 통계의 정확한 산출이 필수적인데, 과거 재정운용 전략(재원 배분)의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략 수립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3, p. 251.
- 대한민국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4.
- 지방자치단체, B시, D시, 2013회계연도 연차보고서 등
-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COFOG 관련 내부자료.
- 행정자치부, GFS COFOG 매핑 수정자료
- Adema, W., Fron, P., & Ladaique, M.,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2011.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mendments to Australia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formation Paper, 2012.
- \_\_\_\_\_, *Australia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 2015.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Government Spending by Function: A New Presentation,”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0.
- Eurostat, “EU-27 Government expenditure on economic affairs stable at 4.1% of GDP in 2012 compared with 2011,” *Statistics in Focus*, 6/2014.
- \_\_\_\_\_,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ratio to GDP continued to fall in 2012,” *Statistics in Focus*, 5/2014.
- \_\_\_\_\_, “Manual on sources and methods for the compilation of COFOG Statistics,”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2011.
- \_\_\_\_\_, *Statistics in Focus*, 6/2014.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1*.
- \_\_\_\_\_,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at [http://www.oecd.org/gov/GAAG2013\\_CFS\\_KOR.pdf](http://www.oecd.org/gov/GAAG2013_CFS_KOR.pdf)
- Statistics Canada, “Canadian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CCOFOG) 2014,” 2014, <http://www23.statcan.gc.ca/imdb/p3VD.pl?Function=getVD&TVD=201435&CVD=201436&CPV=7&CST=01011960&CLV=1&MLV=4>.
- Statistics Canada, “Canadian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2008 to 2012,” 2014,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41126/dq141126b-eng.htm>.

<부록>

<부록> 중앙정부 부처별 COFOG 기능 및 FY 2013 프로그램 총원가

(단위: 원)

부처명	701 일반공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활동	705 환경보호
감사원	109,652,342,345				
경찰청			1,141,870,182,618		
고용부				8,504,282,295,156	
공정위	5,788,720,386			37,931,197,287	
관세청	46,656,751,873		39,383,815,352	15,415,662,041	
교과부	771,219,373,204			33,984,000,000	
교육부	368,777,807,247				
국과위	10,139,000,000				
보훈처					
인권위	24,531,548,479				
국정원	456,629,333,280				
국조실	474,726,863,628				
권익위	68,885,961,710				
국방부		23,348,498,134,738			
국세청	168,884,472,799				
국토부			265,349,511,220	10,468,341,417,778	100,000,000
국해부	45,638,000,000		38,117,953,264	2,988,829,870,986	7,856,502,946
국회	197,674,102,750				
금융위	1,313,571,892,737			3,188,695,573,868	
기상청	11,051,514,330			163,582,864,190	
기재부	19,587,210,745,621			334,059,222,768	
농림부				1,628,804,579,524	
농축부				8,311,934,732,006	
농진청				654,817,990,573	
대법원			72,283,268,362		
경호실	61,093,914,017				
비서실	60,512,860,684				
대통령실	39,073,390,090				
문화재청					
문화부	16,397,469,654			739,865,146,215	
미래부	2,906,083,476,808			5,965,368,701,791	
민주평통	24,527,150,346				

〈부록〉의 계속

부처명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707 보건	708 휴양·문화·종교	709 교육	710 사회보호	총계
감사원						109,652,342,345
경찰청		58,432,458,306				1,200,302,640,924
고용부					4,440,862,728,217	12,945,145,023,373
공정위						43,719,917,673
관세청						101,456,229,266
교과부			11,398,872,683	15,026,076,368,444		15,842,678,614,331
교육부				32,895,177,649,727	2,147,787,162,471	35,411,742,619,445
국과위						10,139,000,000
보훈처					4,100,433,362,304	4,100,433,362,304
인권위						24,531,548,479
국정원						456,629,333,280
국조실					83,927,082	474,810,790,710
권익위						68,885,961,710
국방부		488,214,549,343			8,239,136,024,461	32,075,848,708,542
국세청						168,884,472,799
국토부	562,991,571,920				4,891,388,672,293	16,188,171,173,211
국해부	252,842,166,572				25,264,958,587	3,358,549,452,355
국회						197,674,102,750
금융위					255,284,473,358	4,757,551,939,963
기상청						174,634,378,520
기재부					211,417,214,960	20,132,687,183,349
농림부						1,628,804,579,524
농축부						8,311,934,732,006
농진청						654,817,990,573
대법원						72,283,268,362
경호실						61,093,914,017
비서실						60,512,860,684
대통령실						39,073,390,090
문화재청			489,740,591,262			489,740,591,262
문화부	30,916,101,764		2,347,432,448,346	32,593,652,243	52,783,634,401	3,219,988,452,623
미래부			623,547,358,006	109,600,204,371		9,604,599,740,976
민주평통						24,527,150,346

〈부록〉의 계속

(단위: 원)

부처명	701 일반공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활동	705 환경보호
방통위				36,680,539,775	
방사청		2,304,886,369,155			
법무부			962,575,906,540		
법제처	5,250,851,767				
병무청		21,058,475,283			
복지부				3,446,000,000	
산림청				1,428,998,587,154	27,150,447,209
산업부	182,601,250			7,404,818,294,538	779,743,112
방재청			891,919,297,726		
식약처				12,854,183,924	
식약청					
안행부	29,582,316,415,573		93,732,414,599	193,236,037,350	
여가부	64,272,528,844				
외교부	1,329,972,048,746				
외통부	430,434,477,324			1,426,659,018	
원자력위	47,471,000,000			31,246,000,000	
조달청	80,867,749,438				
중기청				2,934,728,749,715	
선관위	67,518,179,577				
지경부	19,500,000,000			2,304,025,679,630	
통계청	192,576,183,970				
통일부	78,942,088,222				
특임실	1,733,966,605				
특허청				355,030,084,804	
해경청			352,685,899,943		5,411,471,878
해수부	108,337,000,000		3,000,000,000	2,026,172,067,625	144,131,299,568
행안부	9,111,142,301,369		23,184,546,152	34,445,180,220	
행복청					
헌재			37,142,120,900		
환경부				688,153,829,865	4,554,186,910,513
총합계	67,889,244,084,673	25,674,442,979,176	3,921,244,916,676	60,491,175,147,801	4,739,616,375,226

〈부록〉의 계속

부처명	70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707 보건	708 휴양·문화·종교	709 교육	710 사회보호	총계
방통위			21,262,722,728			57,943,262,503
방사청						2,304,886,369,155
법무부				3,782,450,490		966,358,357,030
법제처						5,250,851,767
병무청						21,058,475,283
복지부		8,211,141,785,213			51,112,823,696,876	59,327,411,482,089
산림청						1,456,149,034,363
산업부						7,405,780,638,900
방재청						891,919,297,726
식약처		126,017,307,530				138,871,491,454
식약청		15,677,510,944				15,677,510,944
안행부	527,176,243,611			7,608,267,454	30,811,775,539,189	61,215,844,917,776
여가부					397,060,937,200	461,333,466,044
외교부						1,329,972,048,746
외통부						431,861,136,342
원자력위						78,717,000,000
조달청						80,867,749,438
중기청						2,934,728,749,715
선관위						67,518,179,577
지경부						2,323,525,679,630
통계청						192,576,183,970
통일부					118,919,867,192	197,861,955,414
특임실						1,733,966,605
특허청						355,030,084,804
해경청						358,097,371,821
해수부	11,273,551,697					2,292,913,918,890
행안부				1,072,059,234	12,316,952,360	9,182,161,039,335
행복청	101,226,570,804					101,226,570,804
현재						37,142,120,900
환경부						5,242,340,740,378
총합계	1,486,426,206,368	8,899,483,611,336	3,493,381,993,025	48,075,910,651,963	106,817,339,150,951	331,488,265,117,195

주: 음영은 각 부처의 여러 기능 중 프로그램 총원가 규모에 따른 주(main) 기능 표시  
출처: 대한민국 정부, 「FY2013 부처별 결산보고서」

## 2016 예산안 편성

### ■ 2016년 예산안 편성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과장

### ■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청년 희망,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 2016년 예산안 편성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과장

우리 경제는 재정지출, 규제완화 등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월 중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소비·서비스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부진 흐름이 지속되면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0.3%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은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성장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12조원의 추경예산안을 포함하는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과 코리아 그랜드세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거시적 확장정책과 미시적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여 내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경제는 7월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소매판매와 생산, 투자 등도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은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

망되나, 얼마 전 IMF가 201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3.6%로 하향조정된 바와 같이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여전히 미흡하고, 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6년 예산안은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부족한 수요를 보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고 민생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I. 2016년 예산안의 모습

내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올해보다 3.0% 증가한 규모이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2.4% 증가한 391.5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2.3\%$ , 국가채무는 2015년 추경예산 편성 등의 영향으로 4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전성은 다소 후퇴하였다. 이는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에 따른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결과이다. 앞으로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조정,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 자원배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를 비롯한 복지, 문화 등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히 일자리분야는 12.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분야는 7.5%, 복지분야는 6.2% 증가하였다.

반면, 산업, SOC, 농림 등 경제분야는 성과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지원하였다.

(단위: 조원)

구 분	'15예산 (A)	'16예산안 (B)	증감 (B-A)	%
◆ 총지출	375.4	386.7	11.3	3.0
1. 보건·복지·노동	115.7	122.9	7.2	6.2
※ 일자리	14.0	15.8	1.8	12.8
2. 교육	52.9	53.2	0.3	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4	41.3	1.9	4.7
3. 문화·체육·관광	6.1	6.6	0.5	7.5
4. 환경	6.8	6.8	-	0.4
5. R&D	18.9	18.9	-	0.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6.1	$\Delta 0.3$	$\Delta 2.0$
7. SOC	24.8	23.3	$\Delta 1.5$	$\Delta 6.0$
8. 농림·수산·식품	19.3	19.3	-	0.1
9. 국방	37.5	39.0	1.5	4.0
10. 외교·통일	4.5	4.7	0.2	3.9
11. 공공질서·안전	16.9	17.5	0.5	3.0
※ 안전투자	14.7	14.8	0.1	1.1
12. 일반·지방행정	58.0	60.9	2.9	4.9
※ 지방교부세	34.9	36.2	1.3	3.7

## II. 투자의 중점

### 1.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 희망' 예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민관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의 핵심이다.

우선, 기업 주도, 유망업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대기업이 청년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 기회도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 기간·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을 올해 3.5만명에서 7.7만명으로 확대하고 일학습병행제도 3,300개사에서 6,300개사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 수요 기반의 대학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 도입 등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도 지원한다.

또한 준비된 청년 CEO를 양성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 창업사관학교 등에서 지역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유망 벤처기업에서 현장경험을 쌓는 창업인턴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유지 지원 등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전국에서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zone)을 신설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고용복지센터를 올해 4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여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2.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수출·중소기업의 성장 및 신성장산업을 지원하여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수요기업 애로 해소 및 연계·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과 '창업성장자금'을 확대하여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 재도전에 이르는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제2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이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창업 2~5년차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지원 자금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전용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형 창업에서 유망창업·기술창업 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생계형 업종의 과잉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및 기술창업스쿨을 각 22개소, 16개소로 확대한다.

R&D 분야는 IoT, 5G 이동통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R&D 혁신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4천억원 규모의 R&D 바우처를 지급하는 동시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지급과 민간수탁 실적을 연계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기업연구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을 선진국 중심에서 인도·베트남 등 신흥 수출국으로 확대하고 할랄식품종합센터를 구축하여 할랄시장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개선펀드 대폭 확대, 산단형 어린이집,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등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주요 철도망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며 울릉도·흑산도 등 교통오지에 항공 SOC를 구축하여 관광 수요 확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예정이다.

### 3. 문화 창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정부는 혁신과 성장,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창조 선순환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향유 기회 확충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자생적 창작 생태계 허브로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조성한다.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기획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기업에 공간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양한 한류 콘텐츠 구현의 랜드마크로서 K-Culture Valley(콘텐츠 체험, 쇼핑, 숙박이 가능한 첨단문화컴플렉스), K-Experience(전통문화 중심의 복합문화 허

브), 국내 최초 아레나 공연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재투자한다.

콘텐츠, 관광,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지원한다. 게임 등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전통문화는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 세계 28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강 등 지역 고유의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국가별 진출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관광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전용 콜센터, 통역·교통 등 종합서비스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의 체험 기회를 늘려나간다. 지역순회 공연, '문화가 있는 날'의 지원을 늘리고, 복지·교정시설 등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유아문화예술교육 도입, 실버세대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200개에서 300개로 확대하는 등 세대별로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등 경제적 애로를 줄이는 안전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 4. 맞춤형 복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등 '민생 든든' 예산

복지분야는 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로 전년 대비 7.2조원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총지출 대비 31.8%)가 되었다.

내년도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를 전면 적용하고 생계급여는 월 최대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지급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확대,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 대상의 내일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돕는다.

장애인의 일상 활동 지원과 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지원(620→757개)과 시간제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대폭 늘리고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다.

장학금 지원과 민간기숙사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 확대로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늘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감염병, 해상재난, 대형 교통사고, 지반함몰 등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장비 보강, 항바이러스제 비

축,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긴급상황실, 109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국민들이 치안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 증원, 야간 우범지역 기동순찰대도 확대한다.

국방예산은 올해 37.5조원에서 39.0조원으로 전략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DMZ 전력, 대잠수함 및 북핵 대응 등 강한 전투력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Ⅲ. 맺음말


최근 S&P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 평가한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은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고, 미래 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여 2조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년에 이어 부처 간·부처 내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통합 완료하였으며, 재정사업평가결과와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하는 원점재검토도 추진하였다.

또한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보조사업 수를 16% 감축하고 비보조사업은 기존 사업 폐지 시에만 사업 신설을 허용하여 사업 수를 2015년 이하로 관리하는 등 사업 수 관리를 적용하여 무분

별한 사업 수의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동안 관행화되고 부처별로 칸막이가 쳐진 사업들을 환경변화와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 맞게 재편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소중히 쓰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2016년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국회와 정부가 한뜻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법정기한 내 확정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sup>1)</sup>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I. 개요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난 9월 11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3년까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2013년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과년도인 올해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예산안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우리 경제 체질개선에 대한 뒷받침을 재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중점 투자분야(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와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예산안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긴축재정의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였는데, 이번 2016년 예산안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눈에 띄는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13년 예산안이 「경제활력·민생안전 예산」, 2014년 예산안이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었다면, 이번 예산안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 예산」으로, 청년부문을 부각시키고 있어 정부의 정책 중 청년 일자리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개혁 부분은 전년과 같이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원점 재검토, 사업 수 총량관리, 재정준칙 도입·추진,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 이행 및 성과의 제도화 등이 부각되어 좀 더 구체화되었다.

중기적 시계에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우리 경제의 활력 및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

1) 본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예산안 정책 토론회」(2015.09.24.)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필자 주>

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러 변수들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재정이 경기회복세가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경제활력 제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 II. 재정총량

2016년 재정수입은 2015년 본예산 382.4조 원 대비 9.1조원(2.4%) 증가한 391.5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221.1조원 대비 2.0조원(0.9%) 증가한 223.1조 원 수준이다. 그리고 지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수입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2015~2019년 중기계획에서는 이를 4.0% 증가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국세수입 또한 5.9%에서 3.7%로 하향조정하였다.

〈표 1〉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추이

(단위: 조원, %)

	'15년		'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증가율		'17년	'18년	'19년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382.4	377.7	391.5	2.4	3.7	406.8	426.6	446.6	4.0
국세	221.1	215.7	223.1	0.9	3.4	233.1	244.2	255.6	3.7
세외	27.6	28.3	27.2	-1.4	-3.9	26.6	26.7	26.7	-0.8
기금	133.6	133.6	141.2	5.7	5.7	147.0	155.8	164.3	5.3
재정지출	375.4	384.7	386.7	3.0	0.5	396.7	406.2	416.0	2.6
예산	260.1	263.6	263.1	1.2	-0.2	271.4	275.7	278.6	1.7
기금	115.3	121.1	123.6	7.2	2.1	125.3	130.5	137.3	4.5
의무	172.6	173.5	183.4	6.3	5.7	195.0	206.5	218.7	6.1
재량	202.8	211.1	203.3	0.2	-3.7	201.8	199.7	197.3	-0.7
관리재정수지	-33.4		-37.0			-33.1	-25.7	-17.7	
(GDP 대비)	-2.1		-2.3			-2.0	-1.4	-0.9	
통합재정수지	7.0		4.8			10.1	20.4	30.6	
(GDP 대비)	-0.4		-0.3			-0.6	-1.1	-1.6	
국가채무	595.1		645.2			692.9	731.7	761.0	6.3
(GDP 대비)	38.5		40.1			41.0	41.1	40.5	

주: 1. '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단,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2. 연평균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즉,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 및 중기계획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현실적인 전제에서 작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4~2018년 중기계획에서는 6% 수준의 경상 GDP 성장률 및 경상GDP 성장률 1% 대비 1.1% 수준의 세수신장률을 전제로 재정수입을 전망하였으나, 2015~2019년 중기계획에서는 4.1~5.5%의 경상GDP 성장률과 0.84~0.89% 수준의 국세수입 신장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국세수입의 세수신장률이 0.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번 중기계획에서 전제하고 있는 세수신장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중기 재정수입 기본 전제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상GDP 증가율	4.1	4.1	5.0	5.3	5.5
국세수입 증가율	3.6(5.0)	3.4	4.5	4.8	4.7
세수신장률	0.89	0.84	0.89	0.89	0.84

주: 2015년 담배소비세 순증 국세분을 포함하여 2014년 대비 2015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5.0%로 나타나지만 세수신장률 계산 시에는 2014년에는 부과징수되지 않았던 국세분 담배소비세 2015년 전망치 27조원을 제외한 국세수입의 증가율은 3.6%로 나타남. 이후 연도의 증가율은 담배소비세 국세분을 포함한 국세수입의 증가율임

그러나, 2016~2019년 동안 4~5%대의 경상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

으나,<sup>2)</sup> 중기계획에서는 2017년 이후 4% 초중반의 실질성장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증폭되는 가운데, 구조개혁의 속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 전제된 실질성장률 수준은 정부가 하향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인 전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sup>3)</sup>

다음으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기금수입을 살펴보면, 2014~2018년 중기계획에 나타난 규모보다 2016~2018년 동안 약 7조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5년 기금수입에 대한 전망은 두 중기계획에서 동일하나 2016년부터 기금수입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며 2018년에는 그 규모의 차이가 4.9조원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4~2018년 중기계획보다 낮은 경상성장률을 전제하고 있는 2015~2019년 중기계획의 기금수입 규모가 더 크게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sup>4)</sup>

〈표 3〉 기금수입 규모의 비교

(단위: 조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14-18 중기계획(A)	133.6	139.8	146.3	150.9		4.1
15-19 중기계획(B)	133.6	141.2	147	155.8	164.3	5.3
차이(B-A)	0.0	1.4	0.7	4.9	-	-

2)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2015년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을 2%대(36개 IB 전망치 평균 2.5%, 9월 21일 기준)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8%(7월 9일 기준)로 하향조정하여 전망(<http://news.mk.co.kr/newsRead.php?no=911078&year=2015>)

3) 이와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등 정부의 재정관리목표 또한 달성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4) 정부는 기금수입의 증가세는 사회보장성금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간접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은 현재의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sup>5)</sup> 또한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단, 비과세감면 합리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재정지출 재원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sup>6)</sup>

2016년 재정지출에 대한 전망은 386.7조원으로, 이는 2015년 본예산 375.4조원 대비 11.3조원(3.0%), 추경(384.7조원) 대비 2.0조원(0.5%) 증가한 수준이며,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지출이 연평균 2.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즉,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수입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을 기존의 5.1%에서 4.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지출 측면에서의 증가율을 이보다 낮은 수준인 연평균 2.6%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관리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sup>7)</sup> 이와 같은 측면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재량지출 수준을 감소시켜 재정지출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

다. 즉, 2015~2019년 동안 재정지출은 40.6조원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의무지출이 46.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재량지출은 동 기간 5.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재량지출 감축노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및 기타 정치적으로 인하여 재량지출이 증가 또는 충분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재정지출 수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계획은 또한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4〉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재량지출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가율
'12~'16년	173.5	181.9	183.3	186.4	188.6				2.1
'13~'17년		183.6	188.9	187.6	189.6	193.5			1.3
'14~'18년			188.6	202.0	201.4	203.3	204.3		2.0
'15~'19년				202.8	203.3	201.8	199.7	197.3	-0.7

재정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무지출의 2015~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재정지출 증가율 2.6%보다 2.3배 수준으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0%에서 2018년에는 50%를 초과하고, 2019년에는

5) 세율 인상과 같은 적극적 세입확충 방안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여건이 잠재수준을 상회하고, 경기과열 양상을 보일 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6) 간접방식에 의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직접 투입하는 것은 향후 여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7)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4.5%의 재정지출 증가를 계획하였음

52.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5〉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의무지출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가율
'12~'16년	151.9	160.6	174.3	186.7	201.1				2.1
'13~'17년		158.8	168.8	180.8	194.7	207.2			6.9
'14~'18년			167.2	174.0	192.2	205.1	219.6		7.1
'15~'19년				172.6	183.4	195.0	206.5	218.7	6.1

그리고 의무지출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복지분야 법정지출로 2015~2019년 동안 연평균 6.7% 증가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도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의무지출의 45% 수준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의무지출 중 이자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3~2017년 계획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관리대상수지는 37.0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2015년 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GDP 대비 -2.3% 수준이다. 작년에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기조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분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여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적자의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에 따라 적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은 재정지출로 인한 경기부양, 구조개혁의 성공 및 실적반영 등이 고려된 것으로 향후 경제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리대상수지는 더욱 악화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표 6〉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의무지출 항목별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 재원	'13~'17년	76.6	77.4	80.9	89.3	95.8			5.7
	'14~'18년		76.6	74.2	85.3	91.3	98.1		6.4
	'15~'19년			74.3	77.4	82.8	88.3	92.5	5.6
복지분야 법정지출	'13~'17년	62.4	69.5	77.6	82.6	88.5			9.1
	'14~'18년		69.8	77.3	83.6	89.7	96.4		8.4
	'15~'19년			77.5	83.1	88.8	94.3	100.5	6.7
이자지출	'13~'17년	15.7	17.8	17.9	18.0	18.3			3.9
	'14~'18년		16.8	18.0	18.5	19.3	20.3		4.8
	'15~'19년			16.5	18.0	18.6	19.0	20.9	6.1
기타 의무지출	'13~'17년	4.1	4.0	4.5	4.8	4.6			3.3
	'14~'18년		4.1	4.5	4.8	4.8	4.9		4.7
	'15~'19년			4.3	4.7	4.7	4.9	4.8	2.7

〈표 7〉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관리대상수지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2~'16년	-14.3	-4.8	1.0	2.2	8.3			
'13~'17년		-23.4	-25.9	-17.0	-14.1	-7.4		
'14~'18년			-25.5	-33.6	-30.9	-24.0	-18.1	
'15~'19년				-33.4	-37.0	-33.1	-25.7	-17.7

정부는 2015년 국가채무가 595.1조원으로 GDP 대비 38.5% 수준으로 전망하며, 2019년에는 761.0조원(GDP 대비 40.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에 처음으로 40%를 초과하여 2018년에 41.1% 수준까지 증가한 후 2019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40% 초반대에서 관리할 것을 명시하며, 우

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기조 변화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2014~2018년 중기계획에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명시한 이후 1년 만에 큰 폭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급속한 증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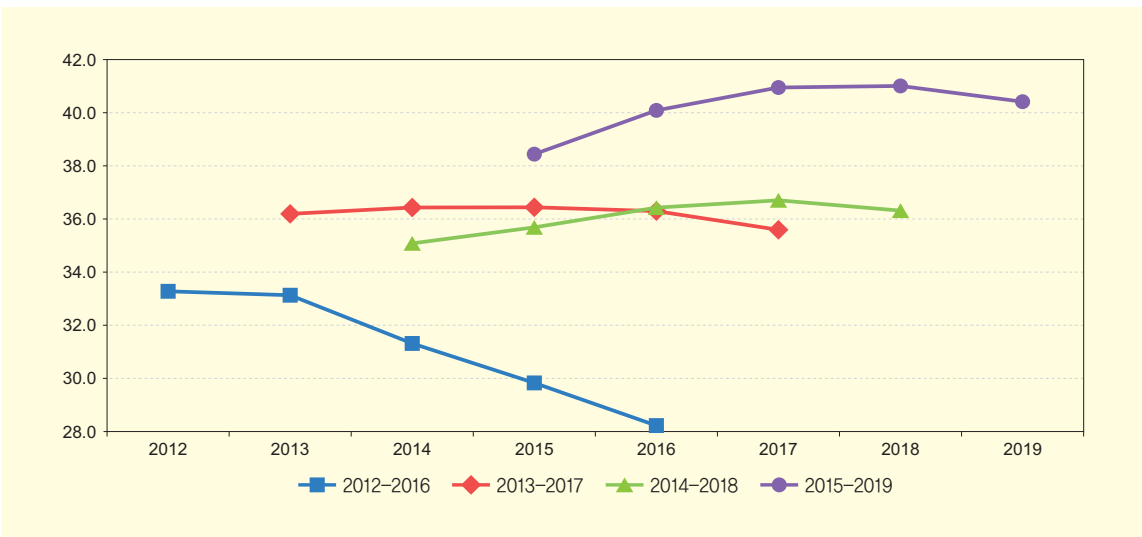
〈표 8〉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국가채무 전망 추이

(단위: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가율
'12~'16년	445.9	464.8	470.6	481.2	487.5				2.3
'13~'17년		480.3	515.2	550.4	583.1	610.0			6.2
'14~'18년			527.0	570.1	615.5	659.4	691.6		7.0
'15~'19년				595.1	645.2	692.9	731.7	761.0	6.4

[그림 1]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 추이

(단위: GDP 대비 %)



또한 큰 폭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전망수준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국가채무 전망은 ‘경제성장 → 세입확충 → 재정건전성 개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경우의 전망치이기 때문이다. 즉, 40% 초반에서의 국가채무 관리는 경제성장률이 2015년 4.1%에서 2019년 5.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낮을 경우 GDP 대비 국채비율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재정수지가 2016년 이후 감소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2018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수지의 개선이 재량지출 축소에 의존하고 있어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재량지출이 증가 또는 충분한 수준으로 감소하

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전망과 달리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 Ⅲ. 분야별 자원배분

2016년 예산안의 분야별 지출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및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증가율은 전년 예산안 대비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 R&D,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증가율이 1% 이하,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SOC 분야의 경우에는 (-)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지출을 중기계획상에서 살펴보면, 중기계획에서의 지출 증가율이 기존의 4.5%에서 2.6%로 하향조정됨에

〈표 9〉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배분

(단위: 조원, %)

	'15년 예산	'16예산안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			
				'17년	'18년	'19년	'15~'19년 연평균 증가율
◆ 총지출	375.4	386.7	3.0	396.7	406.2	416.0	2.6
1. 보건·복지·노동	115.7	122.9	6.2	129.2	134.7	140.3	5.0
※ 일자리	14.0	15.8	12.8				
2. 교육	52.9	53.2	0.5	54.5	56.9	59.0	2.8
3. 문화·체육·관광	6.1	6.6	7.5	7.2	7.9	8.1	7.3
4. 환경	6.8	6.8	0.4	6.7	6.6	6.4	-1.5
5. R&D	18.9	18.9	0.2	19.3	19.7	20.2	1.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6.1	-2.0	15.5	15.0	14.5	-3.0
7. SOC	24.8	23.3	-6.0	21.1	19.7	18.7	-6.8
8. 농림·수산·식품	19.3	19.3	0.1	19.1	19.0	18.9	-0.5
9. 국방	37.5	39.0	4.0	39.9	40.9	41.9	2.8
10. 외교·통일	4.5	4.7	3.9	4.8	5.0	5.1	3.2
11. 공공질서·안전	16.9	17.5	3.0	18.1	18.8	19.4	3.5
12. 일반·지방행정	58.0	60.9	4.9	61.9	65.3	68.3	4.2

따라, 2015~2019년 중기계획 모든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4~2018년 중기계획에 나타난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5~2019년 중기계획에 따르면, 12개 분야 중 7개 분야는 향후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나타나며(연평균 증가율>0), 5개 분야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연평균 증가율<0). 2015~2019년 계획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2014~2018계획과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연평균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5.0%)와 일반·지방행정 분야(4.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장 큰 감소를 보이는 것은 SOC 부분으로 연평균 6.8% 감소하며, 다음으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연평균 3.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모두에서 평균 미만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분야는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

림·수산·식품 분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분야와 관련된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가 여기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즉,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R&D,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달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지원의 적정성 문제, 유사·중복사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지출소요 평가 강화 등을 통한 재정개혁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향후 4년 동안의 지속적인 지출감소 및 이로 인한 재정의 역할 제한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분야별 지출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 비교

(단위: %)

총지출증가율 기준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출증가율: 2.6%)	
		증가율 ≥ 2.6%	증가율 > 2.6%
'16년 예산안 (지출증가율: 3.0%)	증가율 ≥ 3.0%	1. 보건·복지·노동(30.8) 3. 문화·체육·관광(1.6) 9. 국방(10.0) 10. 외교·통일(1.2) 11. 공공질서·안전(4.5) 12. 일반·지방행정(15.5)	
	증가율 < 3.0%	2. 교육(14.1)	4. 환경(1.8) 5. R&D(5.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4.4) 7. SOC(6.6) 8. 농림·수산·식품(5.1)


주: ( ) 안은 2015년 기준 총지출 대비 해당분야 지출 비중

#### IV. 분야별

이번 예산안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청년고용 부문이 예산안에서 부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드러나 있으며, 중기 재정운용의 3가지 기본방향 중 2가지 항목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경상GDP 성장률 전제 등에 대한 현실화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단,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측면, PAYGO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부재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재정개혁 추진 내용 중 사업 수 총량관리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총액관리 부분으로 향후 사업 수 총량관리과 함께 총액관리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안에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증가율을 발표한 반면, ‘국세 세입안’에서는 추경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계획에 대한 신뢰도 제고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sup>8)</sup> 재정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정부전망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전제

와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포함하여 설명해 준다면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제 국회가 예산안이 담고 있는 청년고용, 경제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심의하여 ‘경제성장 → 세입 확충 → 재정건전성 개선’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예산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8) 중기계획에서의 지표전망이 전반적으로 향후 1~2년까지는 좋지 않으나, 그 이후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중장기계획이 내년 예산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 재정패널 직업이력 부가조사 소개

■ 재정패널DB사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조사(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6차년도에 실시된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본조사데이터와의 병합을 통해 산출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직업이력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자 주>

## 들어가면서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단조사로, 조세정책과 행정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이다. 패널조사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고정된 조사대상(패널)에 대하여 일정한 주기마다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다.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1년을 주기로 1차년도에 표집된 가구를 원표본 패널로 삼아 해당 가구의 소득·지출·복지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조사하는 문항을 패널조사의 기본조사 문항이라고 한다.

기본조사 문항은 패널조사의 핵심이 되는 문항으로 변동 없이 조사되는 문항이다. 패널조사에서는 기본조사 문항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부가조사 문항이라고 하며, 패널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기본조사와 함께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목적은, 기본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방법이지만 한번 조사하고 종료되는 횡단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문항이 늘어날수록 응답자들이 조사에 대해 가지는 부담이 커지고, 조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본조사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보다는 조사목적에 맞는 주요 문항들을 우선하여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매 조사시점마다 측정할 필요가 없는 문항도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간헐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항은 부가조사에 포함하여 기본조사의 내용을 보강하도록 설계한다. 그 예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직업이력 조사를 들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10차년도(2007년) 시점에 15세 이후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누락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두 번째 목적은 특정한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동태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기본조사 문항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보다 사회의 기본이 되는 현상을 측정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즉, 현재 사회적 관심사항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울러 정보를 수집할 의미가 있는 내용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가 있다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부가조사 문항으로 설계하여 조사한다. 재정패널조사(NaSTaB)에서 4차년도에 실시한 출산관련 정책인식 조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 아동 부가조사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렇듯 부가조사는 이용자들에게 기본조사를 보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조사내용도 담고 있어 기본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조사이다.

재정패널조사는 4차년도와 6차년도 조사 당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부가조사를 진행하였다. 6차년도에 실시한 부가조사는 출산이력과 직업이력을 조사한 것인데, 출산이력 조사는 출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한 부가조사이며, 직업이력 조사는 기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부가조사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경우 개인의 직업 정보에 대해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한 부가조사로서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의 과정에 대한 정보, 일자리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부가조사이다. 덧붙여 기본조사에서 측정하는 경제활동 상태와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부가조사 종료 이후에도 개인의 일자리 변화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높은 조사자료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내용과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기본조사 데이터와의 병합을 통해 산출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직업이력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이력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1. 직업이력 부가조사 내용 및 유의사항

### 가. 조사 내용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은 2003~2013년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지속된 소득활동을 한 가구원이다. 소득활동은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것을 의미하며,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내용은 10년간의 직업 현황과 은퇴 현황으로 구성된다. 직업 현황에서는 일자리 시작 시기와 끝난 시기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며 현재까지 근무 중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자세한 직업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사업 내용 및 주된 활동내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형태, 주당 평균 근로일수 및 시간,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직업 현황에 대한 문항은 기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매년 측정하고 있는 문항으로 기본조사 문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직업이력 조사에서는 퇴직 사유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퇴 현황에서는 현재 은퇴상태인지, 은퇴상태가 아니라면 본인의 은퇴시점을 언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퇴직 중이며 구직 및 근로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은퇴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은퇴자로 정의하였다.

〈표 1〉 2003~2013년 5월 직업이력 부가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2003~2013년 5월 직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시작 시기와 끝난 시기, 또는 계속 근무 여부</li> <li>- 사업 내용(표준산업분류 21개 코드)</li> <li>- 직업 내용(표준직업분류 11개 코드)</li> <li>- 사업장 종사자 수</li> <li>- 종사상 지위</li> <li>- 근무시간</li> <li>- 주당 평균 근로시간</li> <li>- 월평균 소득</li> <li>- (퇴직자 대상) 퇴직사유</li> </ul>
은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지막 직장 은퇴 유무</li> <li>- (비은퇴자 대상) 예상 은퇴 연령</li> </ul>

## 나. 조사 특성별 유의사항

### 1) 회상조사

직업이력 부가조사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응답은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화되는데, 이전 차수의 종단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 중 직업이력 부가조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문항이 있다면, 교차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로 조사된 문항 중에도 두 값이 모두 회상에 의한 응답이어서 어떤 것이 참값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항이 있다. 예를 들어 직업이력에서 측정한 2008년도 한 해 동안 다녔던 직장의 연간소득과 2차년도에 조사된 작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이다. 두 값은 동일한 2008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응답이지만 모두 회상에 의한 것으로, 참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정패널조사팀에서는 불일치 오류들은 최대한 점검하되, 참값을 확인할 수 없는 불일치 오류들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를 수정한다면 한편으로는 종단조사데이터와 직업이력 부가조사 부가데이터의 일치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유의하여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 2) 조사 대상기간

재정패널조사팀에서는 내·외부 연구진과의 논의 끝에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을 ‘과거 10년 동안’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기간의 설정에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회상에 의존하여야 하는 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회상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이력을 조사한다면 조사에 활용 가능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겠으나 오래전에 근무한 일자리의 정보나 단기간 근무한 일자리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짧은 과거의 직업이력을 조사한다면 응답될 일자리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듯 조사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충분한 논의 끝에 재정패널조사팀에서는 10년을 응답자의 회상에 어려움이 없으며, 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한 대상기간이라고 판단하여 설정하였다.

따라서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은 2003년부터 6차년도 조사시점(2013년 5월)까지이다. 다만, 2003년 이전부터 조사 대상기간까지 계속 근무 중이었던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시작시기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부터 기입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근로자로 일하였다면, 해당 일자리의 시작시기는 ‘2000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조사지침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지침이 필요하다.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자료를 분석할 때에도 조사의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사지침은 조사대상자 선정지침이다. 직업이력 부가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6차년도 조사 당시 6개월 이상 동거하여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 중 만 15세 이상이며,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과거 10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최종 응답대상이 된다. 이런 응답자 선정 과정을 통해 직업이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은 총 6,234명이다.

두 번째 조사지침은, 동시에 발생한 일자리에 대한 작성지침이다. 사람에 따라 한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패널 직업이력 부가조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 중 주된 일자리를 선택하여 한 시기에 하나의 일자리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된 일자리의 정의는 시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일자리에 투입한 시간을 고려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고, 만약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였다면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아 기입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조사지침은, 고용 상황이 매번 변동하는 일자리 정보에 대한 작성지침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 정보를 기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적고 근로시간이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근로기간의 평균값으로 기입하도록 지침을 주었다. 또한 동일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종사상 지위나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 종사상 지위는 일자리가 종료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적고, 소득이나 근로시간 등은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주요 조사지침으로는 은퇴에 대한 정의이다. 은퇴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은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다양하여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웠다. 다만, 재정패널조사의 직업이력 부가조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개인의 생각을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현재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은퇴상태로 판단하여 정의하였다.

### 3. 직업이력 부가조사 기초 분석

직업이력 부가조사 자료는 횡단 분석과 종단 분석이 모두 가능한 데이터로서, 기본조사 자료와의 병합을 통한 분석도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직업이력 부가조사데이터의 구조와 병합 방법을 설명하고, 기본조사데이터와 연계하여 산출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가. 데이터 구조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데이터는 'NaSTaB\_JOB'라는 이름의 데이터 파일로 존재한다. 데이터는 개인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기본적 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 직업이력 부가조사데이터 구조

변수명	PID	HID	PS06A19	PS06A20	P06GA000	P06GA001~110	P06GA200~201
설명	가구원 ID	가구 ID	조사차수	직업 응답개수	직업이력 조사대상자 여부	일자리정보 01~10	은퇴
값			'6차년도'	'1~10개'	'예 또는 아니오'		

PID는 직업이력 부가조사데이터의 주요 변수로 중복값이 없는 가구원의 고유번호이다. HID는 모든 데이터에 존재하는 주요 변수인 가구고유번호로,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직업이력 응답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력데이터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PS06A19'는 생성변수로 직업이력 부가조사에 참여한 차수를 나타낸다. 이 변수와 함께 'P06GA000'을 통해서도 직업이력 응답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6차년도 기준, 가구원 설문지의 응답대상이 되는 사람 중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 6,234명이었다. 'P06GA001~110' 변수는 직업이력 부가조사 문항에 해당하며, 일자리의 시작시기와 끝난 시기, 직장의 기초정보, 근로시간 및 소득, 퇴직사유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최대 일자리 개수는 10개였으며, 가장 과거에 시작된 일자리부터 현재의 일자리 순으로 1~10개의 일자리 정보가 존재한다. P06GA200~201 변수는 은퇴 여부와 예상 은퇴시점에 대한 변수이다.

#### 나. 데이터 병합 방법

서로 다른 내용이 담긴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에 연계를 위한 식별변수가 존재해야 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식별변수는 HID와 PID로 어떤 데이터를 병합할 것인지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식별변수가 달라진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경우 개인의 고유번호인 PID가 식별변수가 되고, 기본조사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패널 가구데이터와 가구원데이터에서도 PID 변수를 병합시에 사용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가구데이터와 가구원데이터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를 이해하고 자료의 구조를 변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가구원데이터의 경우 직업이력 부가조사데이터와 같이 PID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 조사 자료가 정렬되어 있어 별도의 구조변환 없이 직업이력데이터와 병합이 가능하다. 가구원데이터의 구조는 아래의 <표 3>과 같은데, 6차년도를 기준으로 변수명을 살펴보면, PID 변수는 'PID06', HID 변수는 'HID06'으로 차수 정보를 변수명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직업이력데이터와 가구원데이터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PID 변수명을 동일하게 수정한 후 병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구원데이터에서 하나의 행(line)은 한 명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PID는 고유하게 나타나지만 HID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병합 시에는 반드시 PID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표 3> 6차년도 가구원데이터 구조

변수명	PID06	HID06	PS06A04	PS06A05	POS6A01	POS6A02	POS6A18
설명	가구원 ID	가구 ID	가구원번호	본인응답 여부	현재 연령 만15세 이상 여부	작년한해소득유무	최초본조사 참여차수
값			'01~10'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	'01~06'

다음으로 직업이력 부가조사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인적사항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데이터와 병합이 필요하다. 가구데이터는 직업이력데이터와 같이 PID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HID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한 후 병합해야 한다. 가구데이터는 하나의 행(line)에 PID를 비롯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6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가구데이터의 시작은 HID('HID06')변수이다. 가구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HID는 고유하게 나타나는 변수이고, 이후에는 그 가구에 포함되는 모든 가구원들의 인적사항 변수가 나타난다. 'W06BYR01'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적사항 변수인데, 변수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해석하면, 'W'는 인적사항을 '06'은 차수를, 'BYR'은 출생년도 변수임을, '01'은 1번 가구원을 뜻한다. 하나의 가구에 가구원은 총 9명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 변수는 동일한 변수가 '01'부터 '09'까지 존재한다. 직업이력데이터와 병합하기 위한 PID 변수 또한 'HPID01'부터 'HPID09'까지 존재하며, 가구데이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한다. HPID의 변수명에 있는 '01'부터 '09'는 차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몇 번 가구원인지를 표시하는 구분자임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 병합 시에는 HPID 변수를 활용하여 PID 변수를 생성하고, 각 가구원들의 인적사항 정보를 PID를 기준으로 구조를 변환한 뒤 정렬하여 직업이력데이터와 병합하여야 한다. 구조 변환과 데이터 병합에 대한 통계패키지별 설명은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의 '데이터 가공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 6차년도 가구데이터 구조

변수명	HID06	...	W06BYR01	...	W06BYR09	...	HPID01	HPID02	HPID03	...	HPID09
설명	가구 ID		출생년도-가구원 01		출생년도-가구원 09		가구원번호 -01	가구원번호 -02	가구원번호 -03		가구원번호 -09

#### 다. 기초 분석 결과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기초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직업이력 부가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6,234명이었으며 남성이 61.3%, 여성이 38.7%으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조사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47.4세였으며, 20대 이하가 9.3%로 가장 적고, 40대가 28.8%로 가장 많았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과 중졸 이하는 각각 34.7%, 19.8%였다.

직업이력 응답자 중 가구주는 3,920명으로 62.9%였으며, 비가구주는 2,314명으로 37.1%였다. 전체 응답자들은 10년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다. 직업 응답 개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1개의 직업을 응답한 사람이 4,531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의 일자리를 응답한 사람은 1,202명(19.3%)이었다. 3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사람은 501명(8.1%)으로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 수준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응답한 일자리 전체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는데, 월평균 약 25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은퇴 여부를 조사하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6.1%는 은퇴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93.9%는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비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시점은 평균 63.8세로 최소 40세부터 최대 99세라는 응답이 나왔다.

〈표 5〉 직업이력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N=6,234명)		빈도	비중
성별	남성	3,824	61.3
	여성	2,410	38.7
연령(조사시점)	평균연령(중앙값)		47.4세(46세)
	20대 이하	581	9.3
	30대	1,300	20.9
	40대	1,792	28.8
	50대	1,381	22.2
	60대 이상	1,180	18.9
최종 학력(조사시점)	중졸 이하	1,234	19.8
	고졸	2,162	34.7
	대졸 이상	2,837	45.5
가구주와의 관계(조사시점)	가구주	3,920	62.9
	비가구주	2,314	37.1
10년간 일자리 보유 개수	1개	4,531	72.7
	2개	1,202	19.3
	3개 이상	501	8.1
월평균 소득(중앙값)		250.7만원(191만원)	
은퇴 여부	예	381	6.1
	아니오	5,853	93.9
	예상 은퇴 연령(중앙값)		63.8세(65세)
	최소~최대 은퇴 예상		40~99세

본 자료를 이용하면 과거 10년간 일자리 변동이 없는 응답자와 이직을 경험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자리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0년의 기간 동안 1개의 일자리만 응답한 사람(4,531명)과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사람(1,703명)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1개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과 2개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 즉 이직의 횟수가 많은 집단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두 집단의 남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1개 일자리 응답자의 남성의 비율은 58.6%였으며,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의 경우는 61.6%가 남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일자리를 1개만 응답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두 집단 간 약 4세의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가 47.8%로 1개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43.9%)보다 높았다. 가구주 여부를 살펴보면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 집단에서 가구주의 분포가 4.7%p 정도 더 많았다. 10년의 기간 중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종사상 지위는 두 집단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1개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5.9%로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의 비율(20.1%)보다 높았다. 반면 임시직의 경우 2

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의 13.1%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1개 일자리 응답자(6.6%)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 임시직 임금근로자 중에 근무처가 매번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현장 근로자 등은 하나의 일자리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 변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월평균 임금은 전체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산출하였는데, 1개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256.0만원, 2개 이상 일자리를 응답한 집단은 219.9만원으로 두 집단 간 약 36만원의 소득 차이를 보였다.

〈표 6〉 일자리 보유 개수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특성		1개 일자리 응답자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4,531명		1,703명	
성별	남성	2,657	58.6	1,049	61.6
	여성	1,874	41.4	654	38.4
연령(조사시점)		48.0세(46.0세)		43.8세(42.0세)	
연령(조사시점)	20대 이하	454	10.0	110	6.5
	30대	951	21.0	552	32.4
	40대	1,236	27.3	596	35.0
	50대	882	19.5	256	15.0
	60대 이상	1,007	22.2	189	11.1
최종 학력(조사시점)	중졸 이하	1,030	22.7	211	12.4
	고졸	1,512	33.4	678	39.9
	대졸 이상	1,988	43.9	813	47.8
가구주와의 관계(조사시점)	가구주	2,954	65.2	1,190	69.9
	비가구주	1,577	34.8	513	30.1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2,138	51.2	871	52.8
	임시직 임금근로자	277	6.6	216	13.1
	일용직 임금근로자	330	7.9	137	8.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81	25.9	331	20.1
	고용원을 둔 사업주	157	3.8	70	4.2
	무급가족종사자	190	4.6	25	1.5
월평균 임금(중앙값)		256.0만원(200.0만원)		219.9만원(175.0만원)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또 다른 횡단 분석방법 중 하나로 각 일자리가 시작된 연도와 끝난 연도에 대한 응답정보를 이용하여 각 일자리별 이행 기간, 즉 퇴사 후 이직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을 산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동일한 조건 유지를 위해 직업이력을 응답한 사람 중 퇴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2개 이상의 일자리를 응답한 경우)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 결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데 평균 8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이직 소요 기간을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평균 6개월로 여자의 경우(1년)보다 약 6개월 더 빨리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평균 1년이 소요되었고 그 외 60대 이하의 경우는 1년 미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최종학력별 이행 기간 또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직업이력 부가조사의 경우 일자리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에 대한 응답을 월단위가 아닌 연간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과대 혹은 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7〉 퇴사 후 이직까지 걸리는 기간

(단위: 년)

		평균 기간
퇴직 후 이직까지 걸리는 기간		0.8
성별	남성	0.6
	여성	1.1
연령(조사시점)	20대 이하	0.8
	30대	0.8
	40대	0.7
	50대	0.9
	60대 이상	1.0
최종학력(조사시점)	중졸 이하	0.9
	고졸	0.7
	대졸 이상	0.8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또한 각 일자리별 월평균 임금 응답값을 이용하여 직업 이행 시 월평균 임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10년 동안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10년 동안 2개 이상 일자리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 이행 시 월평균 임금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과반(54.0%)이 월평균 임금이 더 많은 곳으로 이직하였으며 그다음 임금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 31.9%, 동일한 수준의 직장으로 옮긴 경우 14.1% 순이었다.

〈표 8〉 퇴사 후 이직 시 월평균 임금 변화

(단위: %)

	월평균 임금 변화
감소	31.9
유지	14.1
증가	54.0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이직 시 직장의 사업장 규모 변화를 파악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를 위해 10년간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변동 시 사업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 일자리가 1~4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한 응답자의 58.6%가 동일한 규모의 일자리로 이직하였다고 응답하여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장으로 일자리를 옮겼다고 응답한 경우(41.0%)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5~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다가 이직하였을 때 사업장의 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28.7%, 유지된 경우는 41.6%, 좀 더 큰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경우는 29.7%로 나타나 규모가 변동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반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이직한 경우 그보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직한 응답자가 과반으로(50~299인 54.5%, 300인 이상 58.6%) 동일한 규모나 좀 더 큰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다. 공무원, 군인, 교원으로 일하다가 이직하는 경우, 22.7%가 동일한 직종으로 이직한다고 응답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9〉 퇴사 후 이직 시 일자리 사업장 규모(종사자 수) 변화

(단위: %)

		이직 후 일자리 사업장 규모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공무원, 군인, 교원
이직 전 규모	1~4인	58.6	12.0	9.2	9.5	7.8	2.4	0.4
	5~9인	28.7	41.6	13.7	6.5	5.4	4.1	0.0
	10~19인	25.1	15.8	31.5	16.4	6.1	4.5	0.6
	20~49인	25.6	9.6	10.9	34.1	14.3	3.8	1.7
	50~299인	23.3	7.9	9.5	13.8	37.6	6.6	1.3
	300인 이상	22.4	7.6	6.7	7.6	14.3	40.5	1.0
	공무원, 군인, 교원	9.1	13.6	4.5	18.2	13.6	18.2	22.7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퇴사 후 이직 시 종사상 지위 변화도 추적 가능하다. 과거 10년 동안 이직을 경험한 응답자의 직업 이행 시 종사상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동일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용직 임금근로자: 67.8%, 임시직 임금근로자: 50.8%, 일용직 임금 근로자: 47.4%). 반면,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과반이 임금근로자로 종사상 지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 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일한 응답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이직한 경우는 36.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동일한 종사상 지위로 이동한 응답자(34.4%)보다 약 2.1%p 높은 수준이다.

〈표 10〉 퇴사 후 이직 시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

		이직 후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이직 전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67.8	6.5	4.1	15.8	4.7	1.2
	임시직 임금근로자	30.1	50.8	7.1	8.4	1.6	1.9
	일용직 임금근로자	21.8	17.9	47.4	10.9	1.9	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6.5	13.6	6.8	34.4	5.6	3.1
	고용원을 둔 사업주	37.0	14.0	7.0	24.0	16.0	2.0
	무급가족종사자	26.9	15.4	15.4	28.8	1.9	11.5

다음으로 직업이력 부가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은퇴 여부 변수를 활용하여 조사시점 당시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은퇴자 중 남성은 53.2%, 여성은 46.8%였으며, 비은퇴자 중 남성은 60.1%, 여성은 39.9%로 은퇴자 집단의 여성 비율이 비은퇴자 집단에 비해 6.9%p 더 높았다. 은퇴자들의 평균 연령은 66.5세로 10명 중 8명가량이 60대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최종 학력을 통해 살펴본 은퇴자들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경우는 22.1%, 16.3% 순이었다. 반면, 비은퇴자들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6.8%, 고졸이 36.4%, 중졸 이하가 16.8%로 은퇴자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자 중 가구주의 비율은 68.5%였고, 비은퇴자 중 가구주의 비율은 66.6%로, 은퇴자 집단에서 가구주의 분포가 약간 더 많았다.

다음으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내 취업자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퇴자 가구의 52.3%는 취업자 수가 '0'명인 상태였고, 취업자 수가 1명인 경우가 30.4%, 2명 이상인 경우가 17.3%였다. 반면, 비은퇴자 가구에서는 2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경우가 53.7%, 1명인 경우가 45.4%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가구원의 은퇴로 인해 가구 내 가구원의 취업가구원 수가 줄어든 효과 외에도 은퇴 시점에 해당 가구원의 자녀들이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한 분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해당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은퇴자 가구에서는 1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42.5%, 2분위 23.3%, 3분위 13.8%, 4분위 12.2%, 5분위 8.2%로 1~2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65.8%를 차지하는 반면, 비은퇴자 가구는 4~5분위는 25~28% 정도이고, 2~3분위는 16~20% 수준으로 중상위 소득층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를 포함하는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은 약 1,279.4만원이었으며, 비은퇴자 가구의 경우 연간 2,970.5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은퇴자 및 비은퇴자 특성

(단위: %)

		은퇴자	비은퇴자
성별	남성	53.2	60.1
	여성	46.8	39.9
연령	평균 연령(중앙값)	66.5세(69.0세)	45.5세(44.0세)
	20대	1.1	9.3
	30대	3.8	25.7
	40대	6.5	31.4
	50대	9.4	18.8
	60대 이상	79.3	14.9
교육수준	중졸 이하	61.6	16.8
	고졸	22.1	36.4
	대졸 이상	16.3	46.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68.5	66.6
	비가구주	31.5	33.4
2012년 말 기준 가구내 취업자 수	0명	52.3	0.9
	1명	30.4	45.4
	2명 이상	17.3	53.7
연간가구소득	평균 소득금액(중앙값)	2,417.5만원(1,580.0만원)	4,763.4만원(4,000.0만원)
	1분위	42.5	9.7
	2분위	23.3	16.3
	3분위	13.8	20.4
	4분위	12.2	25.3
	5분위	8.2	28.3
가구 소비 지출(중앙값)		1,279.4만원(1,279.0만원)	2,970.5만원(2,995.4만원)

주: 1.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은퇴 여부의 조사시점(2013년 5월)과 가구내 취업자 수의 조사시점(2012년 말) 간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또한 〈표 11〉에서 은퇴자의 남녀 비율의 격차(6.4%p)보다 비은퇴자의 경우 그 격차가(20.2%p)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12〉에서 비은퇴자의 연령대별 남녀 구성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대 비은퇴자의 경우 과반이 여성(58.3%)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41.7%)보다 16.6%p 많았다. 하지만 3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많았다. 특히 30대 비은퇴자의 64.7%가 남성으로 여성(35.3%)보다 29.4%p 더 높아 다른 연령대보다 그 격차가 가장 컸다. 전반적으로 비은퇴자의 남성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격차가 60대 이후 20%p 미만(남성: 58.5%, 여성: 41.5%)으로 줄어든 것 또한 특징적이다.

〈표 12〉 비은퇴자의 연령대별 남녀 구성비

(단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남성	41.7	64.7	60.9	62.1	58.5
	여성	58.3	35.3	39.1	37.9	41.5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그 외에도 〈표 11〉을 통해 은퇴자 집단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학력별 은퇴의 연령 및 최종 일자리의 특성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은퇴자를 추출한 후 최종 학력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은퇴자들의 마지막 일자리 종료 연령은 68.3세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고졸 58.8세, 대졸 이상의 경우 53.4세로 학력이 더 높을수록 마지막 일자리 종료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은퇴자의 마지막 일자리의 종사자 수는 1~4인이 69.7%로 가장 많아, 고졸이나 대졸 이상의 은퇴자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의 경우 공무원·군인·교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8.5%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4.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학력별로 마지막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은퇴자 절반 이상(63.6%)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 비율이 고졸 이하의 은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6.8%, 고용원을 둔 사업주 0.6%, 무급가족종사자 14.1%로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는 반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많은 중졸 이하의 은퇴자의 마지막 일자리 종료 연령이 고졸 이상의 은퇴자보다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표 13〉 은퇴자의 학력별 마지막 일자리 특성

(단위: %)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마지막 일자리 종료 평균 연령(중앙값)		68.3세(68.0세)	58.8세(61.0세)	53.4세(53.4세)
종사자 수	1~4인	69.7	32.8	28.4
	5~9인	9.6	14.9	13.0
	10~19인	7.2	10.7	3.4
	20~49인	7.4	16.5	13.3
	50~299인	2.9	12.0	20.7
	300인 이상	3.2	8.4	12.7
	공무원 군인 교원	0.0	4.7	8.5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15.2	47.7	63.6
	임시직 임금근로자	6.1	18.6	22.0
	일용직 임금근로자	27.2	5.7	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6.8	20.4	11.4
	고용원을 둔 사업주	0.6	4.6	2.9
	무급가족종사자	14.1	3.0	0.1

주: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동향 15-09

#### 요약

- 미국 재무부는 2015년 9월 1일 피지배외국법인(CFC)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임시규정을 발표함
  - CFC가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CFC가 미국 내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아 투자소득에 과세함
  - 또한, CFC의 주주가 파트너로 있는 외국파트너십에 자금을 대어하여 발생한 투자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함
  - 이 임시규정은 2015년 9월 2일부터 적용됨
  
- 미국 재무부는 2015년 9월 8일 외화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한 외화부채와 파생상품 통합거래의 일부 거래 종료 시, 남은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임시규정을 최종세법으로 규정함
  - 현행 임시규정하에서 납세자가 통합된 거래의 일부 거래 종료 시 손실만 인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됨
  - 이 규정은 2012년 9월 5일 이후 발생한 통합거래부터 적용됨
  
- 영국 정부는 자국 내 영화 제작 유치를 독려하

- 기 위하여 영화 세액공제(Film Tax Relief)를 확대 적용하기로 8월 21일 발표함
  -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육성을 장기 경제계획의 핵심으로 보고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
  - 영화 세액공제는 영국 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지출액에 대하여 20%, 25%의 단계적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지출 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액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를 2015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함
  
- 호주 재무부는 2015년 8월 21일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주정부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연방재정조세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소비세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안을 공개함
  - 현행 1천호주달러의 소비세 과세면세점을 폐지하여 모든 재화의 구매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함
  - 이 법률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됨
  
-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2015년 8월 31일 외국인의 거주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제안을 공개함
  -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거주용 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공개하였는데, 원천징수의무 부여는 이의 집행방법 중 외국인양도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후속조치임
  - 2015년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됨



- 뉴질랜드 내각은 2015년 9월 3일 채무탕감에 대한 과세방법 개정 제안을 승인함
  - 이 제안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일관성 있는 과세 및 조세체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지배외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뉴질랜드 자회사를 포함한 채무자가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입법은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2006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됨
  
-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2015년 9월 8일 소수주주 회사에 대한 과세체계 개정 제안을 공개함
  - 이 제안은 소수주주 비공개회사에 대한 도관 규정 등의 원활하고 목적 적합한 적용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들을 단순화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며 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관회사의 주주 산정방법 완화, 비용공제제한 규정의 폐지, 국외소득기준의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2015년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2017-18 과세기 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됨
  
-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증감회는 2015년 9월 7일 상장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지침인 재세 101을 공개함
  - 이 지침은 상장회사의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개인소득세 과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5년 9월 8일부터 적용됨

- 인도 과세관청은 2015년 9월 2일 국외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공개함
  - 이 지침은 인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기관투자자와 국외포트폴리오투자자에게 2015년 1월 이전기간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 따라서 과세관청은 각 하부관청에 현재 진행 중인 국외기관투자자 등과 관련한 최저한세 조사에서 이러한 지침을 고려하여 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함
  
- OECD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세협력 간소화 제도 등의 조세정책을 다루는 *Taxation of SMEs in OECD and G20 Countries 보고서*를 2015년 9월 2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OECD와 G20 회원국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국의 과세특례 및 납세협력 간소화 제도 등을 설문조사와 기존 OECD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개함

## 1. 미국 - 피지배외국법인(CFC)의 파트너십을 통한 조세회피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규정을 발표<sup>1)</sup>

- 미국은 2015년 9월 1일 피지배외국법인(CFC)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투자소득에 과세하도록 하는 임시규정을 발표함
  - 이는 CFC가 미국세법 제956조(IRC §956)<sup>2)</sup>의 목적에 반해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며, 임시규정은 2015년 9월 2일부터 적용됨
- 이번 발표에서 CFC가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CFC도 미국 내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재무부 임시규정<sup>3)</sup>을 개정함
  - 기존 임시규정에서는 CFC가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한 미국 내 자산을 CFC가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음
    - 이는 CFC가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외국법인을 통해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소득의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CFC가 미국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IRC §956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임시규정에 파트너십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 또한, CFC가 외국파트너십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파트너십의 이익을 분배받는 파트너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재무부 임시규정<sup>4)</sup>을 신설함
  - 이는 CFC의 주주가 파트너로 있는 외국 파트너십에 자금을 대여하고 발생한 투자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현행 IRC §956에서는 CFC가 미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발생한 투자소득에만 과세하고 있어, CFC의 주주가 파트너로 있는 외국파트너십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2. 미국 - 외화부채거래 과세제도 관련 임시규정을 최종세법으로 규정<sup>5)</sup>

- 미국은 2015년 9월 8일 외화의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한 외화부채와 파생상품거래가 통합된 거래(이하 '적격헤지거래'<sup>6)</sup>)의 일부 거래 종료 시, 남은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임시규정을 최종세법으로 규정함
  - 임시규정은 2012년 9월 5일 발표되었으며, 이 규정은 2012년 9월 5일 이후 발생한 적격헤지거래

1) 미국 재무부, "United States Property Held by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in Transactions Involving Partnership; (TD 9733)," 2015.09.02.  
 2) IRC §956 규정은 CFC가 규정된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경우, CFC의 유보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임. '미국 내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미국법인의 주식, 미국인의 채무를 말함  
 3) 미국 재무부 규정 CFR 1.956-1T(b)(4)  
 4) 미국 재무부 규정 CFR 1.956-1T(b)(5)  
 5) 미국재무부, "Integrated Hedging Transactions of Qualifying Debt," T.D. 9736.  
 6) 미국 재무부 규정 CFR 1.988-5(a)(1)에 정의된, 적격헤지거래로 구분되는 경우 처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부터 적용됨

- 현행 임시규정에서는 적격헤지거래를 구성하는 거래 중 1개 이상의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이하 'legging out')<sup>7)</sup>, 종료일에 모든 남은 거래를 공정 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함
- 임시규정은 납세자가 적격헤지거래의 legging out 시 부채거래의 손실만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헤지거래의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임
  - 예로, K회사가 100파운드를 차입하고, 이자·원금 지급을 위한 통화스왑 계약과 금리스왑을 맺은 경우 부채계약, 통화스왑, 금리스왑은 하나의 '적격헤지거래'로 판단됨
  - 만약, K회사가 이자율 인상으로 금리스왑을 처분하는 경우 통화스왑, 부채계약도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손실 인식과 함께 종료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통화스왑, 부채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도 함께 인식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3. 영국-영화산업에 대한 세액공제(Tax Relief) 확대

- 영국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영화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8월 21일에 발표함<sup>8)</sup>
- 영국은 장기 경제계획의 핵심으로 수백만개의 일

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있는 창조산업의 지원을 1990년대 후반부터 강조하였음

- 창조산업을 통해 지난 해 17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769억파운드의 경제 효과가 발생함
- 창조산업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하이-엔드(High-end) TV, 비디오 게임, 연극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세제지원 중 영화 세액공제(Film Tax Relief)는 2007년 1월에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개정된 영화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영화 지출액의 규모에 따라 20%~25%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25%를 적용하기로 함
-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는 영화제작사가 영국에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하여 영화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문화 테스트(Culture test)'를 통과하거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영국 영화, 비디오 게임' 등으로 제작되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함
  - 극장 상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함
  - 최소한 총 제작비용의 10%를 영국에서 소요되어야 함
  - 주요 촬영이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영화를 대상으로 함
- 현행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화의 지출액의

7) 'legging out'은 적격헤지거래를 구성하는 외화부채계약과 파생상품거래 중 일부를 만기일 이전에 처분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legging out 시 남은 부채계약 또는 파생상품거래는 적격헤지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처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인식해야 함

8)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were-backing-british-film-industry>

처음 2천만파운드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함<sup>9)</sup>

- 이번 조치는 2015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은 자국 내에 영화제작을 독려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영화들이 자국 내에서 제작될 것으로 기대함

- 재무장관은 자국 내에 영화제작을 유치함으로써 연기(acting)뿐만 아니라 영화제작, 의상, 세트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영화 세액공제는 2014년까지 1,680편의 영화에 적용되었으며, 대략 78억파운드의 영화 제작 지출규모로 이는 전체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72%에 해당됨<sup>10)</sup>

- 영국의 세제혜택을 지원받은 영화로는 ‘스카이 폴’, ‘월드 워 Z’, ‘해리포터’, ‘그래비티’, ‘어벤저스’ 등이 있으며, 영국 내에서 제작 작품이 작년 오스카에 8부문이 노미네이트되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 4. 호주-소비세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안 공개

- 호주 재무부는 2015년 8월 21일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주정부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연방재정조세개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소비세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안을 공개함<sup>11)</sup>

- 현행 1천호주달러의 소비세 과세면세점을 폐지하여 모든 재화의 구매(특히, 온라인 구매)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모든 재무장관이 동의함

- 이를 위해 매출이 75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비거주자(즉, 해외 공급자)는 호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비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함

- 다만, 동일한 과세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sup>12)</sup>

- 여성위생제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의견합치가 되지 않아 현재의 소비세 과세를 유지하기로 함

- 이 법률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5. 뉴질랜드-외국인의 거주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제안 공개<sup>13)</sup>

-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2015년 8월 31일 외국인의 거주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제안을 공개함

- 이전에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거주용 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공개<sup>14)</sup>하였는

9) <http://www.hmrc.gov.uk/manuals/fpcmanual/FPC55100.htm>

10) HMRC, Summary of tax credit claims: 2006 to 2014

11) 호주 재무부(<http://job.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75-2015/>).

12) Ernst & Young, Australia proposes elimination of low-value threshold on importations as of 1 July 2017, Indirect Tax Alert, 11 September 2015, p. 1.

13) Policy and Strategy, Inland Revenue, and the Treasury,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An officials' issues paper, August 2015.

14) 조세동향(15-07) 참조



데, 원천징수의무 부여는 이의 집행방법 중 외국  
인양도자(offshore seller)에 대한 징수를 위한 후  
속조치임

- 원천징수제도는 비거주자의 뉴질랜드 소득에  
과세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
- 2015년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7  
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됨

- 원천징수대상은 거주부동산을 매각하는 외국인양  
도자의 거래에 한하며, 이의 매수자는 정해진 금액  
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외국인(offshore person)이란 기존의 토지정보  
및 외국인정보 관련 세법(Taxation (Land Infor  
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  
Bill)과 동일하게 적용됨

- 3년 내 뉴질랜드에 입국한 적이 없는 뉴질랜드  
시민, 12개월 내에 뉴질랜드에 입국한 적이 없  
는 거주비자 소유자, 뉴질랜드 시민이 아니면  
서 거주비자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외국인으로  
분류됨

- 다만,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매수한 부동산과  
2015년 10월 1일 이후 매수한 부동산 중 2년 이상  
을 보유한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에서 제외됨
- 원천징수액은 양도자의 매각차익의 33%와 총매  
각금액의 10% 중 낮은 금액이며, 예납적 원천징  
수이므로 매각자는 별도의 신고가 요구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6. 뉴질랜드-채무탕감에 대한 과세방법 개정 제안의 내각 승인<sup>15)</sup>

- 뉴질랜드 내각은 2015년 9월 3일 채무탕감에 대한  
과세방법 개정 제안을 승인함
- 이 개정 제안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일관성 있  
는 과세 및 조세체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지배외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뉴질랜드 자회사  
를 포함한 채무자가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입법은 2016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불  
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2006년 4월 1일부터 소  
급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7. 뉴질랜드-소수주주 회사에 대한 과세체계 개정 제 안 공개<sup>16)</sup>

-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2015년 9월 8일 소수주주 회  
사(closely held companies)에 대한 과세체계 개정  
제안을 공개함
- 이 제안은 소수주주 비공개회사에 대해 2011년에  
도입된 도관(look-through) 규정 등의 원활하고  
목적적합한 적용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들을  
단순화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며 협력비용을 줄이  
는 데 주안점을 둠<sup>17)</sup>
- 이러한 규정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세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

15) 뉴질랜드 과세관청(<http://taxpolicy.ird.govt.nz/news/2015-09-03-debt-remission-proposals-proceed>).

16) Policy and Strategy, Inland Revenue, and the Treasury, Closely held company taxation issues: An officials' issues paper, August 2015.

17) 뉴질랜드 과세관청(<http://taxpolicy.ird.govt.nz/news/2015-09-08-closely-held-company-taxation-issues>).

도록 하는 규정들임

- 2015년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2017-18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됨
- 도관회사(look-through company: LTC)의 주주와 관련하여 종류주식의 허용, 신탁과 관련된 주주수의 합리적 계산 등이 제안됨
  - 기존에는 LTC의 수익과 비용 배분의 편의성을 위해 한 종류의 주식만을 허용하였으나,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복수의 종류주식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LTC에 이를 허용함
  - 주주 수의 계산에 있어 주주인 신탁에 대해 이의 수익자가 6년 내에 형식과 관계없이 이익분배를 받는 경우 수익자를 각각의 주주로 간주하고, 6년 내에 신탁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탁을 하나의 주주로 간주함
    - LTC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5인 이하야 하는데, 기존에는 주주인 신탁의 경우 신탁이 3년 내에 수익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면 이익을 수취한 수익자를 각각의 주주로 보았음
  - 주주인 신탁에 대해 이의 수익자가 법인이며 수취한 배당을 이러한 법인에 분배하는 경우 LTC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 기존에는 LTC가 아닌 법인이 주주인 경우에만 LTC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법인이 신탁을 통한 간접주주인 경우에도 LTC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비용공제제한 규정 폐지, 국외소득기준의 설정, LTC 이전의 유보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의 변경이 제안됨
  - 소규모 사업자가 산정하는 데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요구되었으나 실제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거의 없었던 주주의 비용공제제한 규정을 폐지함
    - 다만, 파트너십 과세에서는 유사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LTC가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유지함
  - LTC요건에서 비거주자가 LTC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국외소득기준을 1만호주달러와 총수익 중 20%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함
    - 이는 혼성체(hybrid entity)로 인한 조세회피의 방지 및 LTC의 취지가 국내의 사업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임
  - LTC 적용 이전의 유보소득에 대해 기존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각 주주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과세편의를 위해 단일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각 주주의 한계세율이 다르므로 형평성을 위해 한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LTC가 아닌 소수주주 회사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관청의 과세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완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선택권 부여 등을 제안함
  - 소수주주 회사가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tainted capital)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는 애초의 취지가 특수관계회사 간 거래를 통해 비과세되는 이익유보액을 창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 다른 회사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의 세액공제액이 수취자가 납부할 세액 이상인 경우(fully imputed dividend),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의 원천징수소득세 산정방법을 통일시켜 실제 귀속법인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주주인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급여는 확정되었으나 총급여는 연말 성과에 연동하여 추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급여에는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8. 중국-상장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지침 공개<sup>18)</sup>

-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증감회는 2015년 9월 7일 상장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지침인 「재세 101」을 공개함
  - 이 지침은 상장회사의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개인소득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5년 9월 8일부터 적용됨
- 상장주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이전보다 낮은 세율 또는 높은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한시적으로 증권결제회사에 부여하고 있음
  - 1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배당은 과세면제, 1

개월 초과 1년 미만을 보유한 상장주식의 배당은 50%를 공제하고 배당에 대한 일반세율인 20%로 과세함

- 따라서 이전과 비교하여 실제 과세가 완화되는 배당은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배당소득의 25%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과세면제로 완화됨

〈표 1〉 상장회사로부터의 배당 개인소득세 비교

(단위: %)

보유기간	현행	개정안
1개월 이하	20	20
1개월 초과 1년 이하	10	10 <sup>1)</sup>
1년 초과	5 <sup>1)</sup>	과세면제

주: 1) 공제되는 소득금액과 세율을 곱한 유효세율임  
출처: S. (Shiqi) Ma, China(People's Rep.)-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현행). 및 财政部·国家稅務總局·证监会, 關於上市公司股息紅利差別化個人所得稅政策有關問題的通知 財稅[2015] 101號, 2015年9月7日(개정안)을 재구성

- 한시적으로 증권결제회사에 개인의 주식 매각 시 보유기간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 증권결제회사는 다음달 5영업일 이내에 상장회사에 지급하고 상장회사는 수취한 달의 법적인 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8) 财政部·国家稅務總局·证监会, 關於上市公司股息紅利差別化個人所得稅政策有關問題的通知 財稅[2015] 101號, 2015年9月7日.

## 9. 인도 - 국외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최저한세 미적용 지침 공개

- 인도 과세관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은 2015년 9월 2일 국외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공개함<sup>19)</sup>
  - 이 지침은 인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기관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FIIs)와 국외포트폴리오투자자(Foreign Portfolio Investors: FPIs)(FIIs 등)에게 2015년 1월 이전기간에 대해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 MAT)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 따라서 과세관청은 각 하부관청에 현재 진행 중인 FIIs 등과 관련한 최저한세 조사에서 이러한 지침을 고려하여 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함
-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FIIs 등에 대한 MAT 적용은 이번 지침을 통해서 미적용으로 결론내렸는데, 이러한 지침 공개는 조사위원회(Committee on Direct Tax Matters)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결과임<sup>20)</sup>
  - FIIs 등에 대한 MAT 적용 논란은 2012년 Castleton 사건에서 사전고지당국(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AR)의 고지와 MAT에 대해 전진적 적용을 규정한 2015년 세법개정에 의해 촉발됨
    - Castleton Investment Limited 사건에서 AAR은 이전과 다르게 FIIs에 대해 인도에 고정사업

장 등이 없더라도 MAT를 적용하는 견해를 취함

- 이러한 논란 해결을 위해 2015년 재정법에서 외국회사의 증권, 이자, 사용료 등의 소득에 대해 MAT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을 2015년 4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이전기간에 대해 MAT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을 가중시킴
- 인도 재무장관은 2015년 5월 FIIs에 대한 MAT 적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추가적인 세법개정 또는 과세관청의 지침공개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함
  - 조사위원회는 문제가 된 1961 소득세법 115JB를 개정하여 FIIs 등에 대해 MAT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거나, CBDT가 MAT를 미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고할 것을 권고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10. OECD-OECD와 G20 회원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세협력 간소화 제도 등의 조세정책을 다루는 보고서 발표<sup>21)</sup>

- 본 보고서는 OECD와 G20 회원국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국의 과세특례 및 납세협력 간소화 제도를 소개함

19) Central Board of Direct Tax, CBDT's Instructions on Minimum Alternate Tax-Subject: Report on applicability of Minimum Alternate Tax (MAT) on FIIs/FPIs for th period prior to 01.04.2015 and acceptance of the Government thereof -reg.-, Instruction No. 9/2015, 2015.9.2.

20) Committee on Direct Tax Matters, Report on Applicability of Minimum Alternate Tax (MAT) on FIIs/FPIs for the period prior to 01.04.2015, 25 August 2015.

21) "Taxation of SMEs in OECD and G20 Countries,"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ation-of-smes-in-oecd-and-g20-countries-9789264243507-en.htm>)



- 조사대상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존 OECD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에 대한 내용을 다룸
-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고용창출, 경제성장, 세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sup>22)</sup>
  -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산업에 걸쳐 존재함
  - 인도를 제외한 설문에 응답한 국가 모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각국의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칠레, 에스토니아, 일본, 뉴질랜드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75%를 초과함
  - 중소기업이 각국의 부가가치 창출(value-adde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국가에서 55~75%로 나타남(대기업은 평균 42%)
  - 아일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비중은 40%를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이 각국의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국 전체에서 중소기업의 과세소득은 총 과세가능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의 63%를 차지함
- 중소기업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사업 영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간소화된 납세협력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의 제한과 그로 인한 이자비용 불공제, 사업초기 손실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규모 대비 높은 납세협력 및 기타 의무준수 비용 등 사업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음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 법인단계에서의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율, 감가상각 및 투자충당금 특례, 결손금 이월공제 혜택 등이 많은 국가에서 발견됨
  - 조사대상국 중 15개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율이 존재하며, 이들 국가에서의 일반 법인세율이 평균 29.09%인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은 평균 18.69%임
  - 중소기업의 세후수익 증대를 통한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자산의 가속상각과 즉시상각 특례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도로 파악됨
  - 많은 국가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급공제 및 투자자 소득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등 결손금 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제고하고 있음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가 존재함
  - 중소기업의 R&D활동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R&D 및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환급세액공제 형태로도 존재함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22)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각국마다 상이함. 본 보고서에서는 European Commission의 기준인 종업원 250명 미만과 매출액 5천만유로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함

고용주 부담 조세(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를 경감하거나 신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은 주로 설립 초기에 법인세 감면에서 이루어지나 중국과 멕시코 등에서는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세, 인지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다양한 세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투자자단계에서의 혜택으로는 설립 초기에 직접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자의 투자소득 및 기업 또는 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 여러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설립초기 손실과 개인 투자자의 기타소득 간의 상계를 허용하고 벤처캐피탈이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함
-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손실을 투자자의 과세소득과 상계를 허용하거나 배당소득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등의 과세혜택을 제공함
- 여러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자산매각차익, 투자자의 중소기업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것으로 파악됨

〈표 2〉 중소기업 과세특례제도 요약

	중소기업단계 혜택						투자자단계 혜택				
	비용공제		세액공제				조세감면	초기 투자	투자 소득	지분처분	
	감가상각	기타	투자	R&D	고용	기타				양도 차익	상속/증여
아르헨티나					○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	○				○	○
브라질											
캐나다			○	○	○				○	○	
칠레	○		○			○	○				
중국							○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	○	○		○	○	○	○	○	
독일	○		○		○						○



〈표 2〉의 계속

	중소기업단계 혜택						투자자단계 혜택				
	비용공제		세액공제				조세감면	초기 투자	투자 소득	지분처분	
	감가상각	기타	투자	R&D	고용	기타				양도 차익	상속/증여
그 리 스							○				
헝 가 리	○	○	○								○
아 이 슬 란 드				○							
인 도											
아 일 랜 드							○	○			
이 탈 리 아								○			○
일 본	○	○	○					○			○
한 국	○	○	○					○			
룩셈부르크											
멕시코	○						○				
네덜란드	○	○	○	○	○		○			○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							○		○	
스페인	○	○			○						
스웨덴					○			○			
스위스									○		
터키								○			
영국		○		○				○			
미국	○	○			○					○	○

출처: OECD, *Taxation of SMEs in OECD and G20 Countries*, 2015, p. 85.

- 조사대상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협력 간소화 제도로는 단일대체세, 추정세, 기장의무 단순화, 신고의무 축소, 부가세 면세사업자 지위 부여, 부가세 매입세액 계산 간소화 등이 존재함
  - 일부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세목을 하나의 세목으로 단일화하는 단일대체세(single replacement tax) 제도를 운영함
  - 상당수의 국가에서 법인세와 부가세의 신고·납

부 간소화 일환으로 일반적인 법인세 및 부가세 계산 없이 세금을 특정 지표에 따라 계산하는 추정세(presumptive tax)로 대체하여 영세법인의 납세협력을 촉진함

- 대다수의 국가에서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잡한 회계처리와 장부보관의무 등의 규정을 완화하고 법인세와 부가세의 신고의무 횟수와 신고서식을 축소하는 등 신고의무를 간소화함

〈표 3〉 중소기업 납세의무 간소화제도 요약

	단일 대체세	법인세 의무 간소화				부가세 의무 간소화					
		추정세	회계 단순화	신고의무 간소화	기타	부가세 면세	추정세	매입세액 공제간소화	현금 주의회계	신고의무 간소화	기타
아르헨티나							○				○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브라질	○	○					○		○	○	○
캐나다			○	○	○	○	○	○		○	○
칠레		○	○				○			○	
중국		○					○			○	
체코		○	○			○				○	
덴마크		○		○	○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프랑스		○				○	○			○	○
독일			○			○		○	○		
그리스						○	○		○		○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					
인도		○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한국						○	○				○



〈표 3〉의 계속

	단일 대체세	법인세 의무 간소화				부가세 의무 간소화					
		추정세	회계 단순화	신고의무 간소화	기타	부가세 면세	추정세	매입세액 공제간소화	현금 주의회계	신고의무 간소화	기타
룩셈부르크						○			○	○	○
멕시코	○		○	○			○		○	○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				○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남아공	○	○				○			○	○	○
스페인		○	○				○			○	○
스웨덴			○						○	○	
스위스						○	○			○	○
터키	○		○	○							○
영국			○	○		○	○		○	○	○
미국			○	○							

출처: OECD, *Taxation of SMEs in OECD and G20 Countries*, 2015, p. 85.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그리스 금융지원 협상 개시 합의(2015.7.13.) 이후 EU의 그리스 관련 주요 논의
  - (ESM<sup>1)</sup> 지원 합의)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요청(2015.7.8.)한 ESM을 통한 안정화 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2015.7.16.)<sup>2)</sup>
    - (배경) 1차 개혁 법안 그리스 의회 통과(2015.7.15.) 등 정상회의(2015.7.12.)에서 제시된 구 제금융 협상 조건<sup>3)</sup>을 그리스 당국이 이행함<sup>4)</sup>
    - (내용) 관련된 그리스 정부의 절차가 완료되면 3년간 ESM을 통한 그리스 안정화 지원을하기로 결정
  - (브릿지론 승인) EU 이사회는 EFSM<sup>5)</sup>의 그리스 단기 금융 지원을 위한 71억 6천만유로 규모의 브릿지론을 승인(2015.7.17.)<sup>6)</sup>
    - (내용) 구제금융 논의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필요한 그리스의 IMF에 대한 체납금, ECB에 대한 상환금 등을 지원
    - (만기) 최대 3개월 만기로 2회까지 분할 지급

- EU 통계청, 2015년 1분기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발표(2015.7.23.)<sup>7)</sup>
  - 유로존(EA19)과 EU 28개국의 2014년 4분기 GDP 대비 계절조정된 재정수지는 각각 -2.3%와 -2.6%를 기록
    - 전분기 대비 재정적자는 유로존은 2.5% 감소, EU 28개국은 2.8% 감소
    - (EA19) 2014년 4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5%, 총지출은 48.7%를 기록
    - (EU28) 2014년 4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5.0%, 총지출은 47.6%를 기록

〈표 1〉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2014 Q1	2014 Q2	2014 Q3	2014 Q4	2015 Q1
EA19					
재정수지	-2.5	-2.5	-2.2	-2.5	-2.3
총수입	46.6	46.7	46.6	46.7	46.5
총지출	49.1	49.2	48.9	49.2	48.7
EU28					
재정수지	-3.1	-3.0	-2.8	-2.8	-2.6
총수입	45.2	45.2	45.2	45.4	45.0
총지출	48.3	48.2	48.0	48.1	47.6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7.23.

1)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유럽안정화기구)  
 2) 출처: [http://www.consilium.europa.eu/press-releases-pdf/2015/7/40802200889\\_en.pdf](http://www.consilium.europa.eu/press-releases-pdf/2015/7/40802200889_en.pdf)  
 3)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15년 7월 2호 참고  
 4) 한편 7월 22일에는 유로그룹이 요청한 2차 개혁안의 그리스 의회 통과가 완료됨  
 5) European Financial Stabilisation Mechanism(유럽재정안정화기구)  
 6) 출처: [http://www.consilium.europa.eu/press-releases-pdf/2015/7/40802201007\\_en.pdf](http://www.consilium.europa.eu/press-releases-pdf/2015/7/40802201007_en.pdf)  
 7)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products-press-releases/-/2-23072015-AP>



- EU 통계청, 2015년 1분기 정부채무 발표(2015.7.22.)<sup>8)</sup>
  - 2015년 1분기 말, 유로존(EA19)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는 각각 92.9%와 88.2%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0.9%p, 1.3%p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0%p, 2.0%p 증가
    - GDP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168.8%), 이탈리아(135.1%) 포르투갈(129.6%)이며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0.5%), 룩셈부르크(21.6%), 불가리아(29.6%) 등임
    - 전분기와 비교해 15개 국가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증가했으며, 12개 국가는 감소, 1개 국가는 변동이 없음
  - GDP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표 2〉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5년 1분기 정부채무

		2014 Q1	2014 Q4	2015 Q1
EA19				
Government debt	(million euro)	9,178,569	9,297,921	9,432,523
	(% of GDP)	91.9	92.0	92.9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million euro)	267,717	274,859	273,066
	(% of total debt)	2.9	3.0	2.9
Debt securities	(million euro)	7,230,033	7,318,859	7,464,171
	(% of total debt)	78.8	78.7	79.1
Loans	(million euro)	1,680,818	1,704,202	1,695,287
	(% of total debt)	18.3	18.3	18.0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million euro)	230,990	240,533	236,495
	(% of GDP)	2.3	2.4	2.3
EU28				
Government debt	(million euro)	11,735,520	12,100,633	12,405,540
	(% of GDP)	86.2	86.9	88.2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million euro)	434,452	469,219	487,143
	(% of total debt)	3.7	3.9	3.9
Debt securities	(million euro)	9,438,257	9,736,350	10,027,448
	(% of total debt)	80.4	80.5	80.8
Loans	(million euro)	1,862,811	1,895,064	1,890,950
	(% of total debt)	15.9	15.7	15.2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million euro)	235,885	245,677	241,927
	(% of GDP)	1.7	1.8	1.7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7.22.

8) 출처: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products-press-releases/-/2-22072015-AP>

〈표 3〉 EU 국가별 2015년 1분기 정부채무

(단위: % of GDP, %p)

	% of GDP			변동(%p)	
	2014 Q1	2014 Q4	2015 Q1	2014 Q1	2014 Q4
벨 기 에	108.5	106.6	111.0	2.5	4.5
불 가 리 아	19.7	27.6	29.6	10.0	2.0
체 코	44.6	42.6	42.4	-0.2	-0.2
덴 마 크	45.0	45.1	44.4	-0.7	-0.8
독 일	76.0	74.9	74.4	-1.6	-0.5
에 스토니아	10.5	10.6	10.5	0.0	-0.2
아 일 랜 드	-	-	-	-	-
그 리 스	174.3	177.1	168.8	-5.5	-8.3
스 페 인	94.9	97.7	98.0	3.1	0.3
프 랑 스	94.2	95.6	97.5	3.3	1.9
크 로 아 티 아	81.5	85.1	87.7	6.2	2.6
이 탈 리 아	131.2	132.1	135.1	3.9	3.0
키 프 로 스	102.6	107.5	106.8	4.2	-0.7
라 트 비 아	38.6	40.0	35.0	-3.7	-5.1
리 투 아 니 아	39.7	40.8	38.1	-1.5	-2.7
룩셈부르크	22.6	22.1	21.6	-1.1	-0.5
헝 가 리	82.3	76.9	77.6	-4.7	0.7
몰 타	72.3	68.5	70.3	-2.0	1.8
네 덜 란 드	67.1	67.9	68.9	1.8	1.0
오 스트 리 아	81.1	84.6	84.9	3.7	0.3
폴 란 드	48.6	50.1	50.8	2.3	0.7
포 르 투 갈	133.3	130.2	129.6	-3.6	-0.6
루 마 니 아	38.5	39.8	38.4	-0.1	-1.4
슬 로 베 니 아	77.1	80.9	81.9	4.8	1.0
슬 로 바 키 아	57.6	53.6	54.0	-3.5	0.5
핀 란 드	57.2	59.3	60.3	3.1	1.0
스 웨 덴	39.6	43.9	44.0	4.4	0.1
영 국	87.8	89.3	88.5	0.6	-0.9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7.22.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IMF

- IMF, 그리스 채납액 총액 상환 발표(2015.7.20.)<sup>9)</sup>
  - 그리스가 기존 채납액 전부를 상환하여 더 이상 ‘채납국(arrears)’이 아님을 발표
    - 그리스는 IMF에 6월 30일 12억SDR(약 15억 유로), 7월 13일 3억 6천만SDR(약 4억 5,600만유로) 규모의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여 총채 납액이 16억SDR(약 20억유로)이었음
  - 게리 라이스(Gerry Rice) 대변인은 “그리스가 금융 안정성과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62.5% → 63.0%)의 고용률은 여타 회원국에 비해 비교적 큰 폭 상승

- 우리나라의 2015년 1분기 고용률은 65.7%로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OECD의 성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남성(73.8% → 74.0%)의 고용률 상승폭이 여성(58.1% → 58.2%)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분기 동안 OECD 회원국 전체의 성별 고용률 추이는 남성의 고용률 상승세가 여성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원국별로는 상이한 패턴을 보임
  - 한국, 멕시코 및 터키에서는 고용률의 변동이 여성 고용률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최근 미국의 고용률 상승세는 남성의 고용률 상승에 주로 기인함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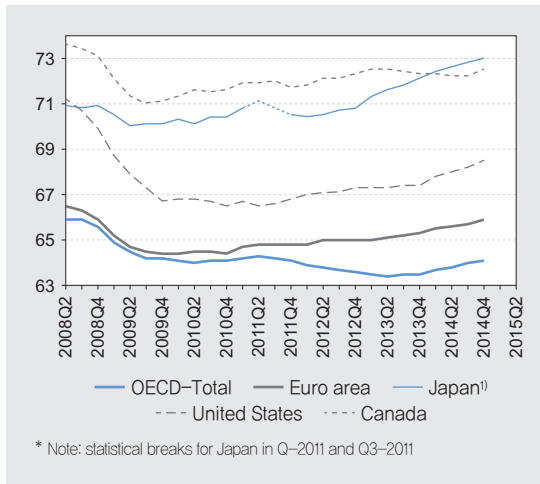
- 2015년 1분기 고용률(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발표(2015.7.16.)<sup>10)</sup>
  - OECD 회원국의 2015년 1분기 고용률(계절조정)은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66.1%를 기록하여, 8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함
    - (2014.1Q) 65.5% → (2Q) 65.6% → (3Q) 65.7% → (4Q) 65.9% → (2015.1Q) 66.1%
    - 유로지역(64.0% → 64.2%), 영국(72.2% → 72.6%), 미국(68.5% → 68.6%), 일본(72.9% → 73.0%) 등의 고용률이 전 분기에 비해 상승
    - 아이슬란드(82.2% → 84.1%), 터키(49.5% → 50.1%), 멕시코(60.2% → 60.7%), 헝가리

9)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344.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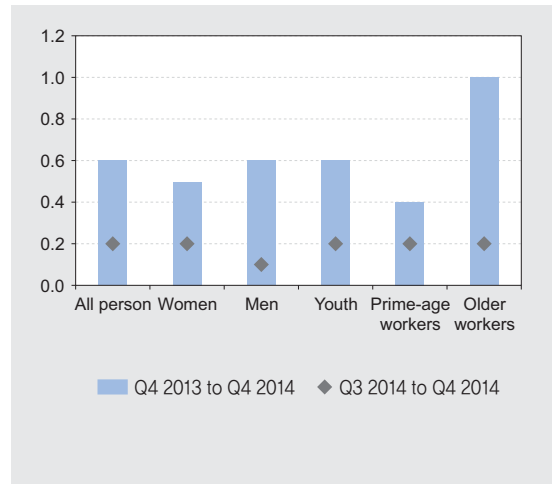
10) OECD(참고: <http://www.oecd.org/std/labour-stats/QES-0715.pdf>)

[그림 1] OECD 회원국의 고용률 추이(계절조정)

(단위: %)



(단위: %)



주: 1) 2011년 1분기~2011년 3분기 일본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표 4> OECD 회원국의 고용률(만 15~64세, 계절조정)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08	2013	2014				2015
					Q2	Q4	Q1	Q2	Q3	Q4	Q1
OECD 전체	64.8	65.0	65.2	65.7	66.5	65.3	65.5	65.6	65.7	65.9	66.1
주요 7국	67.5	67.7	68.0	68.7	69.6	68.2	68.4	68.6	68.7	68.9	69.0
유럽연합	64.2	64.1	64.1	64.9	65.8	64.3	64.5	64.7	64.9	65.1	65.3
유로지역	64.2	63.7	63.5	63.9	65.9	63.5	63.6	63.7	63.9	64.0	64.2
호주	72.7	72.3	72.0	71.6	73.3	71.7	71.5	71.6	71.6	71.6	71.8
캐나다	71.8	72.1	72.4	72.3	73.6	72.3	72.3	72.2	72.2	72.5	72.5
프랑스	63.9	63.9	64.1	63.8	64.8	64.1	63.9	63.8	63.7	63.8	63.8
독일	72.7	73.0	73.5	73.8	69.8	73.7	73.6	73.7	74.0	73.9	74.0
이탈리아	56.8	56.6	55.5	55.7	58.8	55.5	55.6	55.6	55.7	55.8	56.0
일본	71.1	70.6	71.7	72.7	70.9	72.1	72.4	72.6	72.8	72.9	73.0
스페인	58.0	55.8	54.8	56.0	65.0	55.0	55.3	55.8	56.1	56.7	57.0
영국	69.3	69.9	70.5	71.9	71.8	71.0	71.4	71.9	72.0	72.2	72.6
미국	66.6	67.1	67.4	68.1	71.2	67.4	67.8	68.0	68.2	68.5	68.6
한국	63.8	64.2	64.4	65.3	63.9	64.9	65.3	65.2	65.5	65.5	65.7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표 5〉 OECD 회원국의 성별 고용률(만 15~64세, 계절조정)

(단위: %)

	여성						남성					
	2014	14.1Q	2Q	3Q	4Q	15.1Q	2014	14.1Q	2Q	3Q	4Q	15.1Q
OECD 전체	57.9	57.8	57.8	57.9	58.1	58.2	73.6	73.4	73.5	73.6	73.8	74.0
(선진7개국)	62.9	62.7	62.9	62.9	63.2	63.2	74.5	74.2	74.3	74.6	74.7	74.8
(유로지역)	58.7	58.5	58.7	58.8	58.9	59.1	69.0	68.8	68.9	69.1	69.1	69.4
한국	54.9	54.8	54.7	55.1	55.2	55.5	75.7	75.7	75.5	75.8	75.7	75.8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 OECD, “Achieving prudent debt targets using fiscal rules” 연구보고서 발표(2015.7.1.)<sup>11)</sup>

-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채무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중한 채무 수준(prudent debt leve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07년 73%에서 2013년 111%까지 증가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함
- 채무 목표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력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중심을 잡는 기준적 역할 수행하며, 신중한 채무 목표는 리스크 프리 미엄 및 재정정책의 비용을 줄이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Commitment tool을 제공함
- 국가 간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채무 임계치(debt thresholds) 수준을 다음 세 개의 국가 그룹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고소득 국가의 채무 임계치는 GDP 대비 70~90% 수준임
  - 유로지역 국가의 채무 임계치는 GDP 대비

50~70%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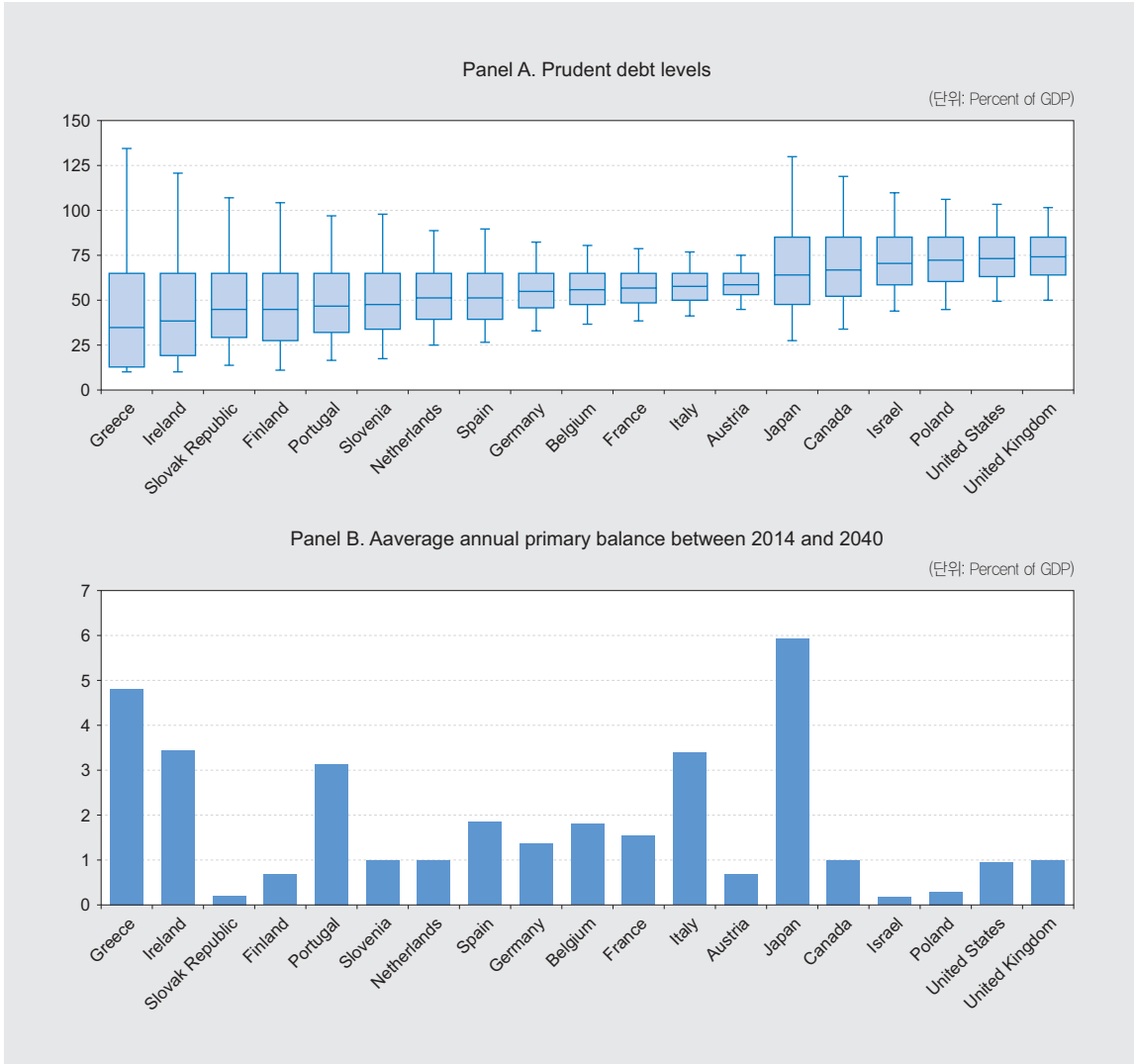
- 신흥경제국가는 자본조달 여건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 임계치가 GDP 대비 30~50% 수준
- 신중한 채무 목표치는 채무 임계치 대비 평균적으로 약 15%p 낮은 수준임
  - 채무 임계치 초과로 인한 역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신중한 채무 목표(prudent debt target)가 설정되어야 함
  - 신중한 채무 목표는 거시경제 변수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므로 각 국가에 기반하여 (country-specific) 설정됨
  - 신중한 채무 목표가 수치적 재정준칙(numerical fiscal rules) 설계에 있어 기준(reference point)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sup>12)</sup>과 지출준칙(expenditure rule)<sup>13)</sup>의 결합이 가장 높은 기초재정수지와 낮은 공공채무 결과를 이끌었음

11) OECD(참고: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5jrxjmm9f7.pdf?expires=1438074335&id=id&accname=guest&checksum=BD E13A23E5E802D13FF79D4942928AA3>)

12) 재정수지준칙은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 사이의 수치적자가 목표 재정변수이며, 정해진 기간에 특정한 수치목표 혹은 범위를 충족해야 함

13) 지출준칙은 정부지출 규모, 증가율 또는 GDP 대비 비중 제한 등을 통해 수치적자를 조정

[그림 2] 신중한(prudent) 공공채무 범위



주: Panel B는 2040년까지 신중한 채무 목표(prudent debt target)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OECD 19개국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임  
출처: OECD, "Achieving prudent debt targets using fiscal rules," 2015, figure10.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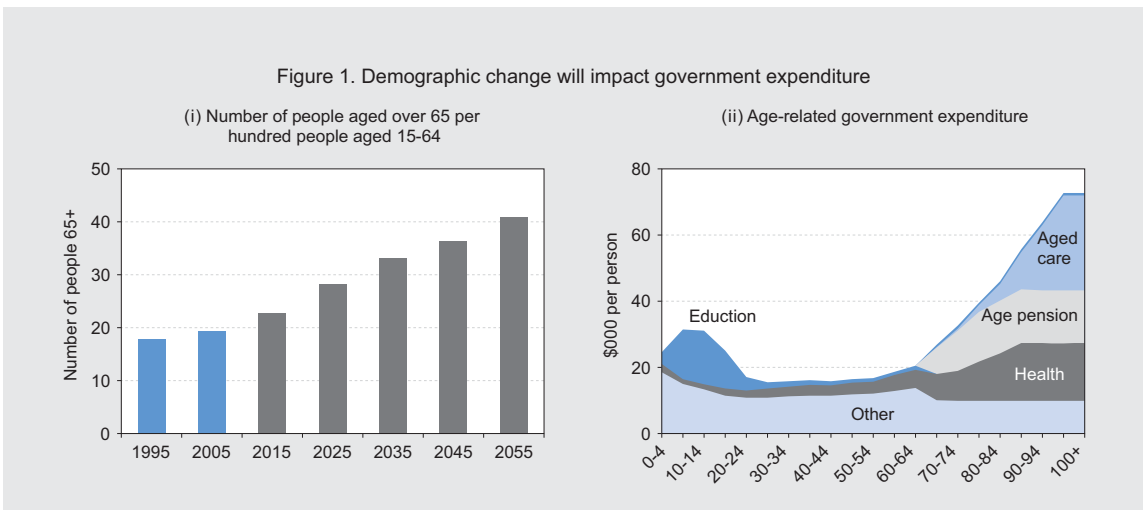
1. 기타

- 호주 생산성위원회,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은퇴 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 보고서 발표(2015.7.7.)<sup>14)</sup>
  - (배경) 인구고령화 및 관련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소득제도(retirement income syste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 (분석내용) 위원회는 퇴직연금 수급연령(preservation age) 연장의 효과를 분석하고, 퇴직연금 일시금(lump sum) 관련 논의에 대해 살펴봄
  - (수급연령) 퇴직연금 수급연령<sup>15)</sup>을 55세 → 65세

로 상향조정하면 퇴직연령 2년 연장 및 퇴직연금 적립금 최대 10% 증가와 더불어 정부예산 또한 2055년에는 연간 약 70억호주달러가 절감될 것이라 추정

- 예산 절감의 대부분은 노인연금 지급 감소 및 고소득 가구로부터의 세수 증가에 기인

[그림 3] 고령화 전망 및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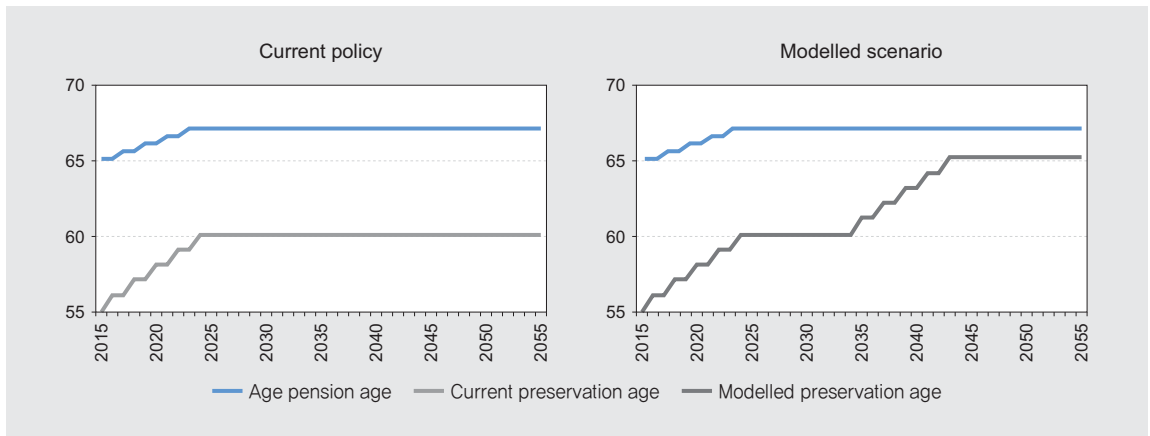
출처: 생산성위원회,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Vol.1: Chapters, July 2015.

14) 생산성위원회, <http://www.pc.gov.au/research/completed/superannuation-post-retirement>

15) 퇴직연금 수급연령은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5년까지 60세로 올리도록 입법화되어 있으며 노인연금 수급연령은 2023년 67세로 높아짐

[그림 4] 수급연령 관련 현재 정책과 보고서 모델 시나리오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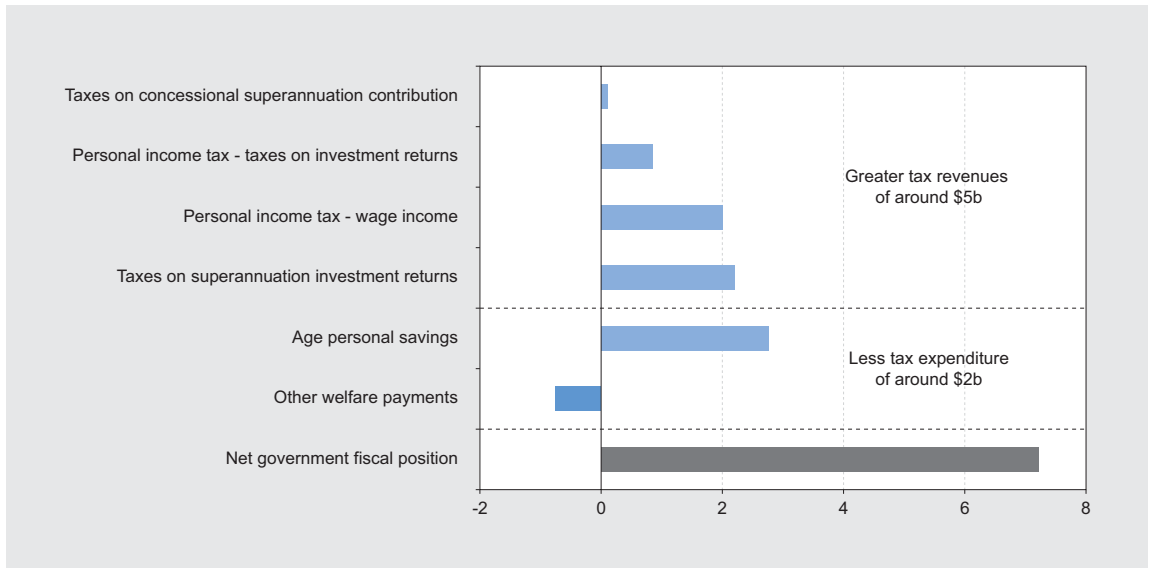
(단위: 세)



출처: 생산성위원회,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Infographic, July 2015.

[그림 5] 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재정적 효과

(단위: \$b(2015 prices))



출처: 생산성위원회, "Superannuation Policy for Post-Retirement," Vol.1: Chapters, July 2015.



- (일시금) 은퇴자들이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노인연금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논의에 대해서 위원회는 일시금이 노인연금 의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
  -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 비율은 30% 이하이며, 퇴직자들은 채무 감축, 소득상품 투자, 은퇴생활에 사용되는 내구재 구입에 일시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1만호주달러 이하인 소액 연금자들이 대부분의 일시금을 사용
    - 일시금이 은퇴자 부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나 대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주로 은퇴 준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노인연금 의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분석
- (제안) 위원회는 은퇴자들의 다양한 환경,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리스크, 비자발적 은퇴자 등을 고려한 은퇴 소득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지속가능성을 전망

- (인구 및 경제) 생산성 증가, 노동력 투입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및 금리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이후의 경제를 전망
  - 인구 증가율은 2014년 1.1%에서 2034년 0.7%로 감소, 노년인구 부양비율<sup>17)</sup>은 2014년 23%에서 2034년 39%까지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2015~2020년 1.9%, 2021~2089년 1.6%로 점차 하락, 노동력 투입 증가율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GDP 인플레이션 및 CPI 인플레이션 2%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2020년 및 2021~2089년 노동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 1.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6〉 장기 경제전망

(단위: 연평균 %)

구분	1982 ~ 2014	2015 ~ 2020	2021 ~ 2089
Real GDP growth	2.4	1.9	1.6
Labour input growth	1.2	0.7	0.5
Labour productivity growth	1.2	1.2	1.1
Nominal GDP growth	5.3	3.6	3.6
CPI inflation	2.9	1.9	2.0
3-month treasury bill rate	5.4	2.0	3.5
10-year government bond rate	6.7	3.5	4.6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및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1. 기타

- 캐나다 의회예산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5 발표(2015.7.21.)<sup>16)</sup>
  - 장기 경제성장 및 재정에 미치는 요인, 특히 고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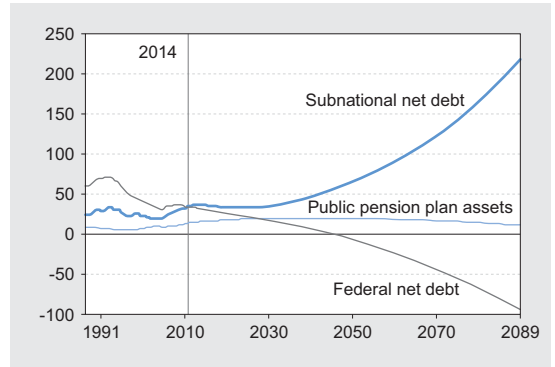
16) [http://www.pbo-dpb.gc.ca/files/files/FSR\\_2015\\_EN.pdf](http://www.pbo-dpb.gc.ca/files/files/FSR_2015_EN.pdf)

17)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 (최근 정책변화 및 공적연금) The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sup>18</sup> 확대, Tax Free Savings Accounts(TFSAs)<sup>19</sup> 한도 증가 등 정책 변화와 공적연금에 대한 전망을 분석
  - 비과세 개인저축계좌(TFSAs)의 한도증가는 세 입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재정여력의 증가로 이는 상쇄될 것으로 예상
  - 공적연금<sup>20</sup>의 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은 퇴직급여의 증가로 악화되어 2014년 GDP 대비 0.3%에서 2035년 GDP 대비 -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정부부문별 순채무(Net Debt)를 분석하고, 재정갭(Fiscal Gap)을 예측하여 재정지속가능성을 전망
  - (정부채무 평가) 연방정부의 순채무<sup>21</sup>는 향후 2044년 이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위정부(subnational governments) 순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89년에는 200% 이상일 것으로 전망
    - ☞ 공적연금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순자산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그림 6] 정부 순채무의 장기전망

(단위: % of GDP)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 (재정갭<sup>22</sup> 전망)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한 PBO의 baseline projection에 의하면 2089년 연방정부의 재정갭은 사라지고 오히려 GDP 대비 1.4%의 재정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정여력은 하위정부의 재정갭과 상쇄될 것으로 예상
  - ☞ 하위정부의 재정갭은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연방정부로부터 캐나다 의료부문 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의 증가, 보건의료지출의 증가비용 감소 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18) 2015년부터 만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던 자녀양육비가 기존 월 100캐나다달러에서 160캐나다달러로 상향조정되었으며, 6~17세 자녀에 대해서는 월 60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

19) 2015년부터 비과세 개인저축계좌(tax free savings account) 연간 불입 한도가 5,500캐나다달러에서 10,000캐나다달러로 조정

20) 캐나다연금계획(CPP)과 퀘벡연금계획(QPP)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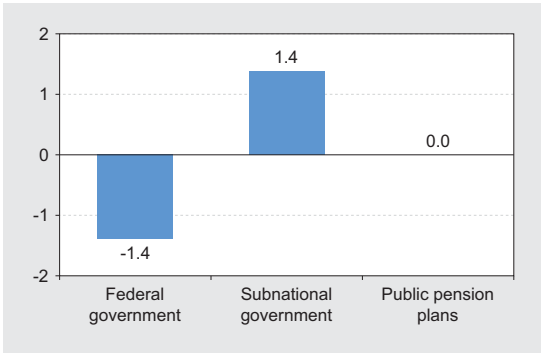
21) GDP 대비 순채무 비율

22) 현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기초재정수지에서 현 기초재정수지를 뺀 값



[그림 7] 2089년 일반정부의 재정갭 전망

(단위: % of GDP)



주: 캐나다 일반정부는 연방정부, 하위정부 그리고 공적연금계획을 포함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 캐나다 의회예산처, “Budget 2015 Fiscal Outlook” 업데이트 발표(2015.7.22.)<sup>23)</sup>

- 2015년 예산안의 재정전망은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실질GDP 성장률 전망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
  - 각 회계연도별 재정수지는 FY2015-16년, FY2016-17년 각각 15억캐나다달러, 1억캐나다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FY2017-18년 15억캐나다달러 흑자로 전망
  - 2015년 실질GDP 성장률 약세의 영향은 부분적으로 높은 GDP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중앙은행의 실질GDP 성장률, 캐나다 재무부의 GDP 인플레이션 및 저금리 전망을 반영할 경우 2015 예산안 재정전망보다 하향 조정
  - FY2015-16년 10억캐나다달러 재정적자가 예상되나 FY2016-17년, FY2017-18년에는 각각

6억캐나다달러, 22억캐나다달러 흑자로 전망

[표 7] Budget 2015 Fiscal Outlook 업데이트

(단위: %, %p, 십억캐나다달러)

구분		2015-16	2016-17	2017-18
Real GDP Growth	Budget 2015	1.9	2.3	2.3
	Bank of Canada	1.0	2.7	2.4
GDP Inflation	Budget 2015	0.4	2.7	2.2
	Revised GDP Inflation	0.6	2.7	2.2
Lower Interest rates	Reduction in interest rates	0.25	0.25	0.25
	Budget 2015	1.4	1.7	2.6
Budgetary Balance	Updated Outlook (revised real GDP)	-1.5	-0.1	1.5
	Updated Outlook (all revisions <sup>1)</sup> )	-1.0	0.6	2.2

주: 1) 실질GDP 성장률 및 GDP 인플레이션, 저금리를 반영하여 수정 전망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An update of the Budget 2015 fiscal outlook,” Table 1, 2, 3, 5 재구성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프랑스 정부, 공공주택 자금조달 개혁 착수(2015.7.23.)<sup>24)</sup>
  - 주택·국토균형·지역개발부 장관 실비아 피넬(Sylvia PINEL)과 예산장관 크리스티앙 에케르(Christian ECKER)는 공공주택 자금조달 개혁의 첫 번째 단계를 제시
    - 먼저 공공주택 기금 지속을 위한 정부의 의지

23) [http://www.pbo-dpb.gc.ca/files/files/BoCBudgetUpdate\\_EN.pdf](http://www.pbo-dpb.gc.ca/files/files/BoCBudgetUpdate_EN.pdf)

24) 재무부, <http://proxy-pubminefi.diffusion.finances.gouv.fr/pub/document/18/19520.pdf>

를 재차 강조, 이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은 40억 유로 규모

- 또한 공공주택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가 보조 기금 창설을 제안, 이 기금은 도움이 더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지역 주택수요에 적절한 자금 조달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독일**

1. 기타

- 재무부, FY2015-2019 중기재정전망(Mittelfristige Finanzprojektion)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에 제출(2015.7.9.)<sup>25)</sup>
  - (재정수지) 2015년 GDP 대비 0.5% 흑자, 2016년 재정균형 등 전망기간 동안 균형/흑자를 보이면서 안정성장협약의 적자 3% 초과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2015년 GDP 대비 0.75% 흑자, 2016년 이후 0.25%의 흑자를 지속하면서 신 재정협약상의 적자 0.5% 초과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15년 GDP 대비 71.5%에서 2019년 61.5%까지 감소추세가 계속되면서 안정성장협약의 상한치인 6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25)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7.16.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07/2015-07-16-PM29.html>

26) 이탈리아 중앙은행, Bollettino Economico n. 3, luglio 2015. <http://www.bancaditalia.it/pubblicazioni/bollettino-economico/2015-3/index.html>

〈표 8〉 FY2015-2019 중기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수지	0.6	0.5	0	0	0.25	0.25
구조적 재정수지	1.2	0.75	0.25	0.25	0.25	0.25
국가채무	74.7	71.5	68.75	66.25	63.75	61.5

주: 마스트리히트 기준  
출처: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7.16.

〈표 9〉 명목 경제성장률 가정

(단위: %)

	2014	2015	2016	2017~2019
명목 경제성장률	3.4	3.8	3.3	3.2

출처: 재무부, Projektion des BMF zur Entwickl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bis 2019, 2015.7.9.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이탈리아**

1. 기타

- 이탈리아 중앙은행, 경제동향 보고서 Bollettino Economico 발표<sup>26)</sup>(2015.7.17.)
  - 최근 그리스 사태로 인해 유로지역의 시장 변동성이 증가한 상황이지만, 국채의 위험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국내수요 회복으로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가 상승했고, 이는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여함
    - 2015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해오던 기업 투자자 증가세를 기록
- 2015년 초에 하락한 물가가 하락세를 멈추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이탈리아의 GDP는 2015년에 0.7%, 2016년에 1.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0.2% 상승하고 2016년 1.1% 상승할 전망
  - 2014년 12.6%를 기록한 실업률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2.2%와 11.9%로 하락할 전망

〈표 10〉 이탈리아 GDP와 구성요소<sup>1)</sup>

(단위: percentage changes on previous period)

	2014			2015	2014 <sup>2)</sup>
	Q2	Q3	Q4	Q1	
Real GDP	-0.1	-0.2	.	0.3	-0.4
Total imports	1.2	0.8	0.5	1.4	1.8
National demand <sup>3)</sup>	-0.2	.	-0.4	0.7	-0.7
National consumption	-0.1	0.2	0.2	-0.1	.
household spending <sup>4)</sup>	0.1	0.2	0.1	-0.1	0.3
other spending <sup>5)</sup>	-0.6	0.2	0.4	0.1	-1.0
Gross fixed investment	-0.6	-0.7	0.2	1.5	-3.3
construction	-1.4	-0.8	-0.5	0.5	-4.9
other investment goods	0.3	-0.5	0.9	2.5	-1.6
Change in stocks <sup>6) 7)</sup>	-0.1	.	-0.6	0.5	-0.1
Total exports	1.3	0.4	1.8	.	2.6
Net exports <sup>7)</sup>	0.1	-0.1	0.4	-0.4	0.3

- 주: 1) Chain-linked volumes; data adjusted for seasonal and calendar effects  
 2) Data not adjusted for calendar effects  
 3) Includes the change in stocks and valuables  
 4) Includes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5)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6) Includes valuables  
 7) Contributions to GDP growth on previous period, in percentage points

출처: 이탈리아 중앙은행, Bollettino Economico n. 3, luglio, 2015.

〈표 11〉 이탈리아 거시경제전망

(단위: percentage changes on previous period)

	2014	2015	2016
Real GDP <sup>1)</sup>	-0.4	0.7	1.5
Household consumption	0.3	0.6	1.1
Government consumption	-1.0	-0.7	0.2
Gross fixed investment	-3.2	2.2	2.6
of which: in machinery, equipment and transport equipment	-1.6	4.5	3.3
Total exports	2.4	4.3	6.9
Total imports	1.7	4.5	6.2
Changes in stocks <sup>2)</sup>	-0.1	0.0	0.0
HICP	0.2	0.2	1.1
HICP net of food and energy	0.7	0.7	1.0
Employment <sup>3)</sup>	0.2	0.7	0.8
Unemployment rate <sup>4)</sup>	12.6	12.2	11.9
Export competitiveness <sup>5)</sup>	-1.1	4.8	0.2
Current account balance <sup>6)</sup>	1.9	2.2	2.5

- 주: 1) For GDP and its components: chain-linked volumes; changes estimated on the basis of quarterly data adjusted for seasonal and calendar effects  
 2) Includes valuables. Contribution to GDP growth in percentage points  
 3) Standard labour units  
 4) Annual averages; percent  
 5) Calculated by comparing the price of foreign manufactures with the deflator of Italian merchandise exports(excluding energy and agricultural products); a positive value indicates a gain in competitiveness  
 6) Percent of GDP

출처: 이탈리아 중앙은행, Bollettino Economico n. 3, luglio, 2015.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 **일본**

1. 예산 · 결산 등

- 일본은행,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 2.0%에서 1.7%로 하향조정(2015.7.15.)<sup>27)</sup>
  - 4월 발표한 '경제 · 물가 전망보고서'와 비교하면 2015년 실질성장률은 4월 전망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2.0%→1.7%)이며, 2016년(1.5%)과 2017년(0.2%)은 비슷한 수준
  - 또한 2015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에너지가격의 하락영향으로 지난 전망치보다 하향조정(0.8%→0.7%)
  - 일본은행은 '양적 · 질적 금융완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 물가 안정 목표'의 실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경제 · 물가정세에 대해 상하 양방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실시할 예정

〈표 12〉 FY2015~2017 정책위원회의 경제 · 물가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의 중앙값)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
2015	1.5~1.9 <1.7>	0.3~1.0 <0.7>	
	4월 1.5~2.1 <2.0>	0.2~1.2 <0.8>	
2016	1.5~1.7 <1.5>	1.2~2.1 <1.9>	
	4월 1.4~1.8 <1.5>	1.2~2.2 <2.0>	
2017	0.1~0.5 <0.2>	2.7~3.4 <3.1>	1.4~2.1 <1.8>
	4월 0.1~0.5 <0.2>	2.7~3.4 <3.2>	1.4~2.1 <1.9>

- 주: 1. 위 수치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1개씩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폭은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 · 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2. 본 전망은 각 정책 위원이 이미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대해서 시장 시세를 참고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한 것임
3. 유가(두바이)는 배럴당 60달러를 기준으로 전망기간 전반에 걸쳐 70달러대 초반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제외)의 전년 대비 기여도는 2015년도 -0.7~-0.8%p, 2016년도 +0.1~+0.2%p로 추산  
기여도는 당분간 마이너스 폭을 확대한 후 2015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폭 축소로 돌아서 2016년도 상반기에는 대체로 제로가 될 것으로 추산
4. 이번 전망에서는 소비세율이 2017년 4월 10% 인상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각 정책 위원은 소비세율 인상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전망계수를 작성하고 있음  
소비세율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전망은 세율이 현행 과세 품목 모두에 전가된 것을 전제로 물가상승 기여를 계산한 후 (+1.3%p)를 정책위원회의 전망계수에 가산
5. 정책위원 전원의 전망의 폭은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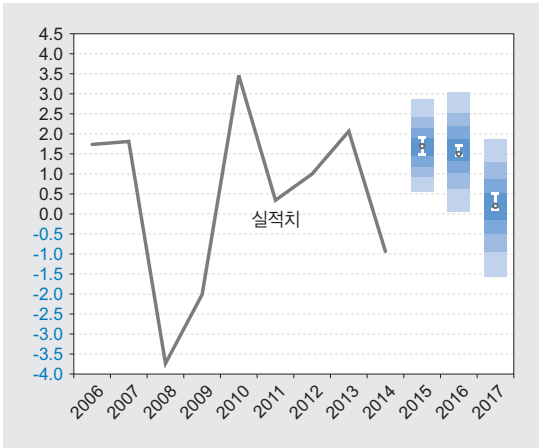
출처: 일본은행,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2015.7.15.

27)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http://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15/k150715a.pdf](http://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15/k150715a.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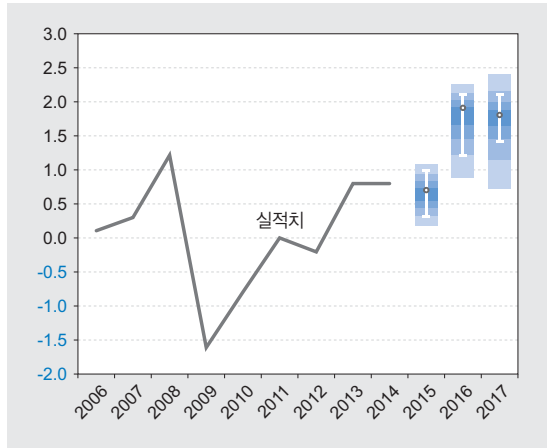
[그림 8] 실질GDP 전망

(단위: 전년비, %)



[그림 9]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신선식품 제외)

(단위: 전년비, %)



주: 1. 위 전망 분포는 각 정책위원이 제시한 확률분포에서 상위10%와 하위10%를 제외한 수치 위험밸런스 차트는 2008년 4월 작성지침 참고

상위40%~하위40%	상위30%~40% 하위30%~40%	상위20%~30% 하위20%~30%	상위10%~30% 하위10%~30%
-------------	------------------------	------------------------	------------------------

- 2. ○은 정책위원 전망의 중간 값을 나타냄
- 3. 막대그래프의 수직선은 금융정책위원회의 전망을 나타냄
- 4.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제외)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

■ 「2016년도 예산 개선요구의 기본방침」 각의 승인 (2015.7.24.)<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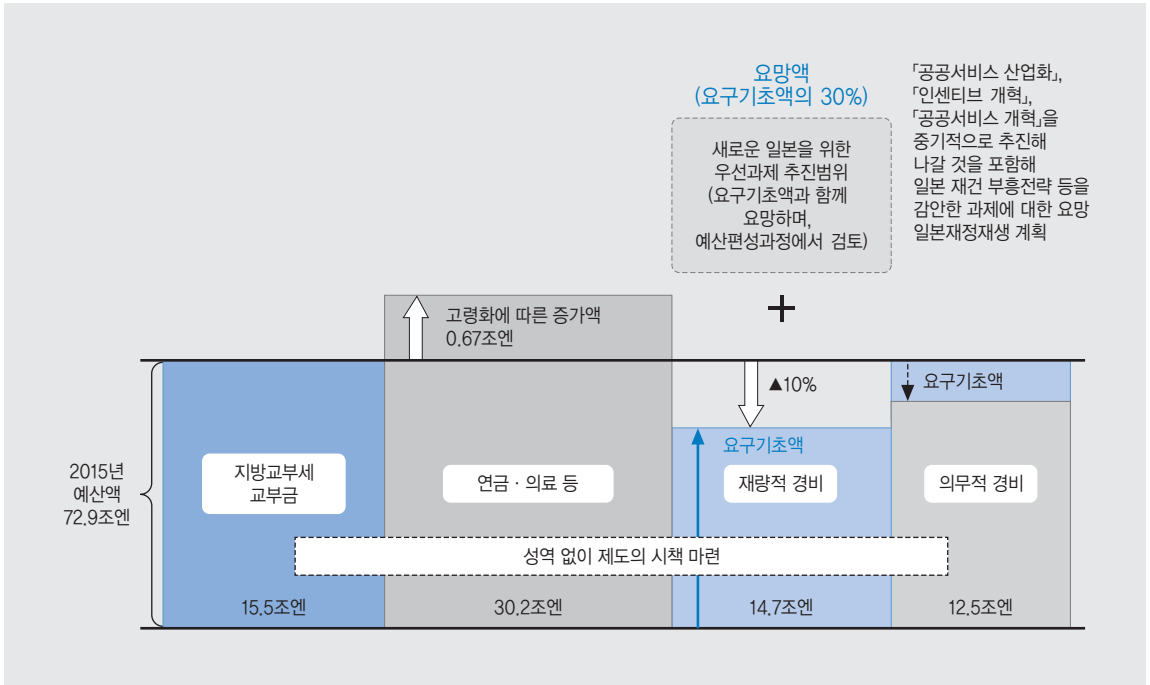
- 2016년도 예산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sup>29)</sup>의 첫째 예산으로서 세출 전반에 걸쳐 세출개혁 노력을 강화하며 예산내용을 중점화
  - (연금·의료) 고령화에 따른 증가분과 경제·물가동향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금액에서 증가분(6,700억엔) 내에서 요구
  - (지방교부세교부금) '경제·재정재생계획'에 근거해서 요구
  - (의무적 경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

- ☞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각 경비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의무적 성격의 근거를 명시해 요구
  - (동일본대지진특별회계 경비) 대지진 복원 진척도와 기존사업의 성과 등을 검증하면서 필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피해지역 이외에서 동일사업을 실시할 때 일반회계로 대응
  - (기타경비) 전년도 예산액의 90%(요구기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요구기한) 8월 말까지 기한을 엄수
  - (우선과제 추진범위) 예산 중점화를 추진하기

28) 재무부,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6/index.htm#gaisan](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6/index.htm#gaisan)  
29) 2015년 6월 30일 각의결정

[그림 10] 2016년도 예산의 개선요구 기본방침



주: 1. 지방재정교부금은 「경제·재정재생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면서 요구, 의무적경비는 참의원 통상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증가 등의 특수 요인에 대해 가감, 동일본대지진특별회계로의 전입은 「2016년도 이후 5년간을 포함한 부흥기간의 복구부흥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요액 요구  
 2. 소비세율 인상 등과 기타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과 경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개혁 프로그램법 28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세·지방소비세의 수입과 사회보장급부의 중점화·제도의 효율화동향 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

위해 「기본방침 2015」 및 「일본재부흥전략 개정 2015」<sup>30)</sup>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범위를 설정, 각 부처는 연금·의료 및 기타경비와는 별도로 요구기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요구 가능

- '세 개의 화살'<sup>32)</sup> 추진으로 디스플레이션 탈피와 경기회복을 위한 고용증가가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
  - 2015년도 실질GDP 성장률 1.5%, 명목GDP 성장률 2.9%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0.6%로 전망

■ 내각부, 「2015년도 경제동향에 대해」 연중 전망 (2015.7.22.)<sup>31)</sup>

30) 2015년 6월 30일 각의결정

31) 내각부, <http://www5.cao.go.jp/keizai1/mitoshi/mitoshi.html>

32) 아베노믹스의 일환인 세 개의 화살은 금융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임



〈표 13〉 주요경제지표

(단위: %)

항목	2014년(실적)	2015년(정부경제전망)	2015년(이번시산)	2016년도(참고시산)
국내총생산(GDP)	△0.9	1.5	1.5	1.7
민간최종소비지출	△3.1	2.0	1.7	1.9
민간주택	△11.7	1.5	2.2	4.8
민간기업설비	0.4	5.3	5.4	4.5
정부지출	0.7	△2.1	△2.3	-
정부최종소비지출	0.4	1.0	0.7	-
공적고정자본형성	2.0	△15.0	△14.9	-
재화서비스 수출	8.0	5.2	5.1	-
(차감)재화서비스 수입	3.7	3.9	4.1	-
내수기여도	△1.5	1.4	1.4	1.7
외수기여도	0.6	0.1	0.1	△0.0
명목국내총생산	1.6	2.7	2.9	2.9
완전실업률	3.5	3.5	3.3	3.2
고용자 수	0.8	0.3	0.5	0.4
소비자물가(종합)	2.9	1.4	0.6	1.6
GDP 디플레이터	2.5	1.2	1.4	1.2

주: 1. 기여도 및 실업률 이외는 전년 대비 변화율

2. 2015년도 「정부경제전망」은 「경제전망과 재정운영의 기본자세(2015년 2월 12일 각의결정)」에서 제시된 전망

3. 다양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위 표의 값은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생각되어야 함

4. 2014년도,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종합)는 0.9% 정도, 국내기업물가는 0.0% 정도, GDP 디플레이터는 1.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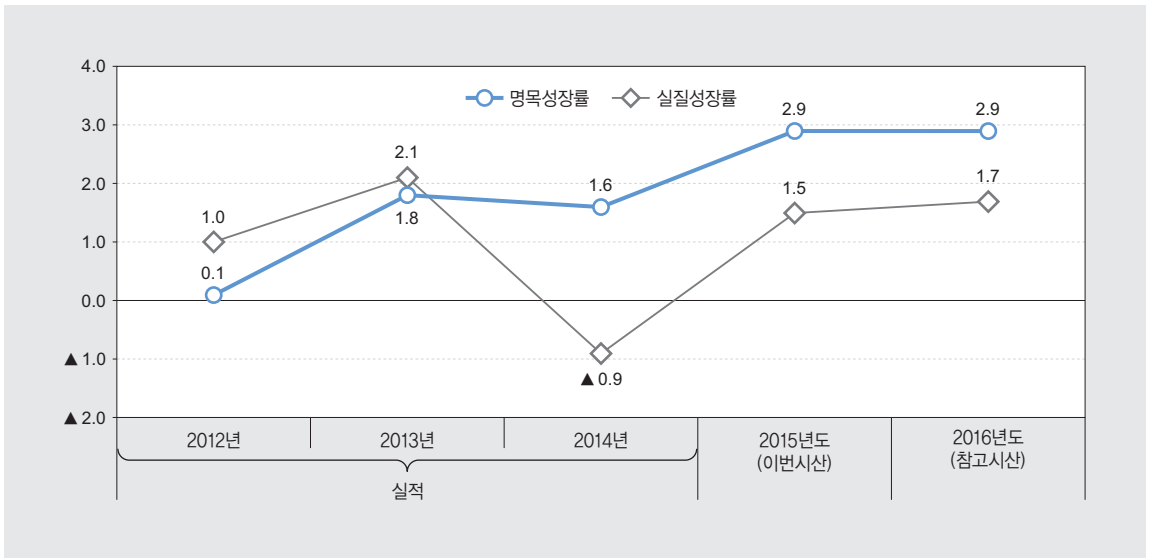
5. 2016년도 「정부경제전망」은 2016년도의 정책 대응이나 경제 동향에 입각하여 연말에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자세」에서 공개

출처: 내각부, 「平成26年度の経済動向について(内閣府年央試算)」.

<http://www5.cao.go.jp/keizai1/mitoshi/2015/h27shisan.pdf>

[그림 11] 국내총생산

(단위: %)



출처: 「平成 27年度の経済動向について(内閣府年次試算)」, 2015.7.22.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 스페인

### 1. 기타

- 내각, 2015 연간고용정책계획(Annual Employment Policies Plan, PAPE) 승인(2015.7.24.)<sup>33)</sup>
  - (고용 현황) 2015년 2사분기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고용이 전 분기 대비 41만 1,800명 증가하여 2.36% 증가(계절조정으로 1.12%)<sup>34)</sup>
  - (목표) 청년 고용, 45세 이상 등 취약 그룹 고용 장려, 직무교육 질적 개선,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active and passive policy) 사이의 관계 강화, 기업이 정선 장려 등 5개 목표로 설정

- (예산) 총예산은 47억 8,800만유로이며, 이 중 자치지역에 작년 대비 17% 증액된 15억 4,300만유로를 배분
  - 전체의 40%는 각 자치지역에 인구비례로 배분하고 60%는 성과평가에 의해 배분
  - 2017년에는 성과에 의한 배분을 70%까지 높일 계획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33) 출처: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lang/en/gobierno/councilministers/Paginas/2015/240715-councilministers.aspx>  
고용부, <http://prensa.empleo.gob.es/WebPrensa/noticias/ministro/detalle/2600>

34) 출처: 통계청, [http://www.ine.es/en/daco/daco42/daco4211/epa0215\\_en.pdf](http://www.ine.es/en/daco/daco42/daco4211/epa0215_en.pdf)



영국

1. 예산·결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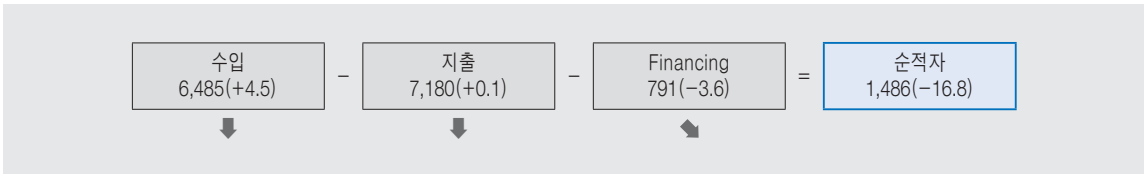
- 재무부, FY2013-14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3-14) 발표(2015.7.20.)<sup>35)</sup>
  - FY2013-14은 FY2012-13에 경기조정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재정운용을 하였고, 2014년 3월 말 순적자는 1조 4,860억파운드(전년 대비 16.8% 감소)이며 순부채는 1조 8,518억파운드를 기록
    - 수입은 총 6,485억파운드로 소득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VAT가 총정부수입의

57% 비중 차지

- ☞ 소득세는 전반적인 경제개선으로 전년 대비 112억파운드(7.4%) 증가
- 지출의 경우 총 7,180억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7억파운드(0.1%) 증가
  - ☞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가 75억파운드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예산삭감이 제한된 부서들에서 증가(보건부 14억파운드, 국제개발부 18억파운드, 교육부 10억파운드, 스코틀랜드 정부 11억파운드)

[그림 12] FY2013-14 재정결산

(단위: 억파운드, %)



주: ( ) 안은 전년 대비 변화율

<표 14> FY2013-14 재정결산 전년 비교

(단위: 십억파운드)

수입			지출			Financing		
	FY 2012-13	FY 2013-14		FY 2012-13	FY 2013-14		FY 2012-13	FY 2013-14
소득세	150.9	162.1	인건비	183.6	185.8	채권이자	31.0	31.7
국민보험	90.7	97.3	복지	215.0	213.4	연금이자	47.9	49.1
VAT	99.1	108.2	물품구매	182.3	189.8	자산매각	3.3	(4.3)
지방세	55.9	52.8	감가상각	51.1	49.5	투자수입	(4.8)	(7.0)
기타세입	127.8	135.4	보조금	56.3	59.8	기타	4.7	9.6
물품매각	42.7	39.0	조달	29.0	19.7	-	-	-
기타수입	53.6	53.7	-	-	-	-	-	-
총수입	620.7	648.5	총지출	717.3	718.0	총차입	82.1	79.1

35) 출처: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

## 2.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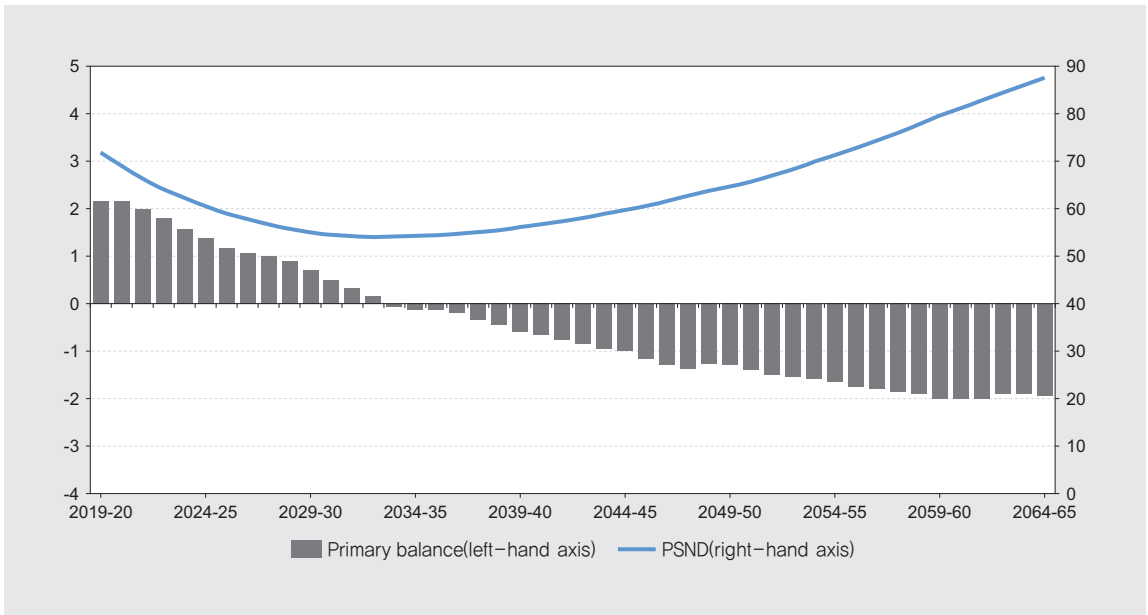
- 예산책임청(OB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발표(2015.6.11.)<sup>36)</sup>
  - 2014년 3월 말 정부순부채(net liability)는 1조 8,520억파운드(GDP 대비 104.4%) (WGA기준)<sup>37)</sup>
  - 공공부문순채무는 FY2014-15 80%에서 2030년 초 54%로 감소한 후 FY2064-65에 87%로 증가 전망
    - 기초재정수지는 FY2019-20에 GDP 대비 2.1% 흑자, 2030년대 중반에 균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FY2064-65에 GDP 대비 1.9% 적자

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

- ☞ 총비이자지출은 고령화 관련 지출증가로 FY2019-20 GDP 대비 33.6%, FY2064-65 37.8%로 전망되고, 총비이자수입은 FY2019-20 GDP 대비 35.7%, FY2064-65 35.9%로 안정적 추세 전망
- 장기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FY2064-65에 금융위기 전 공공부문순채무 수준인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Y2020-21부터 매년 GDP 대비 1.1%의 재정수지 조정이 필요

[그림 13] 공공부문순채무(PSND)와 기초재정수지 전망

(단위: Percent of GDP)



36) 출처: 영국 예산책임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scal-sustainability-report-june-2015>

37) National Accounts 상의 공공부문순채무(PSND)는 정부의 과거활동으로 미래지출이 발생한 금액의 현재가치와 공공부문 금융자산을 제외시킴에 따라 규모측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WGA(Whole of Government Accounts) 사용



〈표 15〉 기초재정수지 조정 필요량

(단위: GDP 대비 %)

	목표 연도	FY2064-65	FY2064-65	FY2064-65	FY2054-55
	GDP 대비 목표 채무비율	20	40	60	40
변수 가정변화	기본전망	1.5	1.1	0.6	0.9
	이자율 1%p 상승	1.5	1.1	0.7	1.0
	이자율 1%p 하락	1.5	1.0	0.4	0.8
	점진적 재정개선 <sup>1)</sup>	0.5	0.4	0.2	0.4
	고령인구 다수 인구구조	1.6	1.2	0.7	0.8
	젊은층 인구 다수 인구구조	1.0	0.5	0.1	0.7
	높은 순 이주율	1.1	0.7	0.2	0.6
	낮은 순 이주율	1.9	1.4	1.0	1.2
	높은 건강·교육 초기 지출	1.7	1.3	0.9	1.1
	낮은 생산성 성장률	3.7	3.3	2.8	2.5

주: 1) 10년마다 요구되는 재정조정 규모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미국

1. 예산·결산 등

- 관리예산처(OMB), *FY2016 Mid-Session Review* (MSR) 발표(2015.7.14.)<sup>38)</sup>

- (경제전망) FY2015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대통령 예산안 전망에 비해 1.1%p 하락  
 - 실업률의 경우, 당초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인 5.3%를 기록한 뒤, 2016년에 5% 아래로 하락 전망

〈표 16〉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예산안 vs MSR)

(단위: 십억달러, %)

경제전망	2014		2015		2016		2017	
	Projections	Actual	Projections					
	예산안	수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수정
GDP 명목규모	17,394	17,419	18,188	17,941	19,039	18,762	19,933	19,626
실질GDP 성장률	2.2	2.4	3.1	2.0	3.0	2.9	2.8	2.8
CPI-U	1.7	1.6	1.4	0.2	1.9	1.9	2.1	2.0
실업률	6.2	6.2	5.4	5.3	5.1	4.9	4.9	4.6

주: 경제지표의 각 연도는 calendar year 기준임

출처: *fiscal year 2016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ernment, Jul 14, 2015.

38)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budget/fy2016/assets/16msr.pdf>

- (재정전망) FY2015 재정적자는 대통령 예산안보다 1,280억달러 감소한 4,555억달러로 하향 수정 (GDP 대비 3.2%(예산안) → 2.6%(MSR))
  - 재정적자 감소는 세입 측면에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전망 재추정(technical re-estimates) 결과로부터 도출된 세입증가, 지출 측면에서는 social security와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의 지출 감소로부터 온 세출 감소에 기인

- FY2015 비정부부문소유 채무는 GDP 대비 당초 예산안보다 0.2%p 하락한 75.3% 전망

## 2. 기타

- 미 하원 예산위원회, '세대 간의 신뢰회복(Restoring the Trust For All Generations)' 보고서 발표. 의무적 보장제도 등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과제 제시(2015.7.14.)<sup>39)</sup>

〈표 17〉 미국 재정전망(예산안 vs MSR)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예산안	3,021	3,176	3,525	3,755	3,944	4,135	4,332	4,525	4,746	4,986	5,236	5,478
	수정		3,248	3,557	3,740	3,898	4,068	4,270	4,463	4,677	4,906	5,152	5,392
지출	예산안	3,506	3,759	3,999	4,218	4,423	4,653	4,886	5,126	5,372	5,621	5,875	6,165
	수정		3,506	3,703	3,987	4,177	4,379	4,601	4,833	5,080	5,578	5,847	6,134
재정 적자	예산안	485	583	474	463	479	518	554	600	626	635	639	687
	수정		455	429	436	481	533	563	617	643	672	695	74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예산안	12,780	13,506	14,108	14,705	15,315	15,959	16,635	17,349	18,085	18,830	19,577	20,371
	수정		13,411	13,974	14,541	15,152	15,810	16,493	17,221	17,973	18,754	19,556	20,404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예산안	17.5	17.7	18.7	19.1	19.1	19.2	19.3	19.3	19.4	19.5	19.6	19.7
	수정		18.2	19.2	19.3	19.2	19.2	19.3	19.4	19.5	19.7	19.2	19.4
지출	예산안	20.3	20.9	21.3	21.4	21.5	21.6	21.7	21.9	21.9	22.0	22.0	22.2
	수정		20.8	21.5	21.5	21.6	21.7	21.9	22.0	22.1	22.2	22.3	22.4
재정 적자	예산안	2.8	3.2	2.5	2.3	2.3	2.4	2.5	2.6	2.6	2.5	2.4	2.5
	수정		2.6	2.3	2.2	2.4	2.5	2.5	2.7	2.7	2.7	2.7	2.7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예산안	74.1	75.1	75.0	74.6	74.3	74.1	74.0	74.0	73.9	73.7	73.5	73.3
	수정		75.3	75.3	74.9	74.6	74.6	74.6	74.6	74.6	74.6	74.6	74.6

출처: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Fiscal Year 2016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ernment, Jul 14, 2015.

39) <http://budget.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4000>



- (배경) 법적 혜택이 영구히 지속되는 의무지출 등의 증가로 인해 정부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
- (문제제기) 메디케어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제도 등의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난의 심각성이 전망되고 있음
  - 현재 정부지출의 40% 규모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고 언급
    - \*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지출 중 21%가 고령자(senior)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 이상 증가하고 있음
  - 분석 결과 2025년에 이자지불비용으로만 8,080억달러 소요 및 향후 10년간 5.5조달러 규모의 이자 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 (개선방향) 중앙집권적 보건정책(Afford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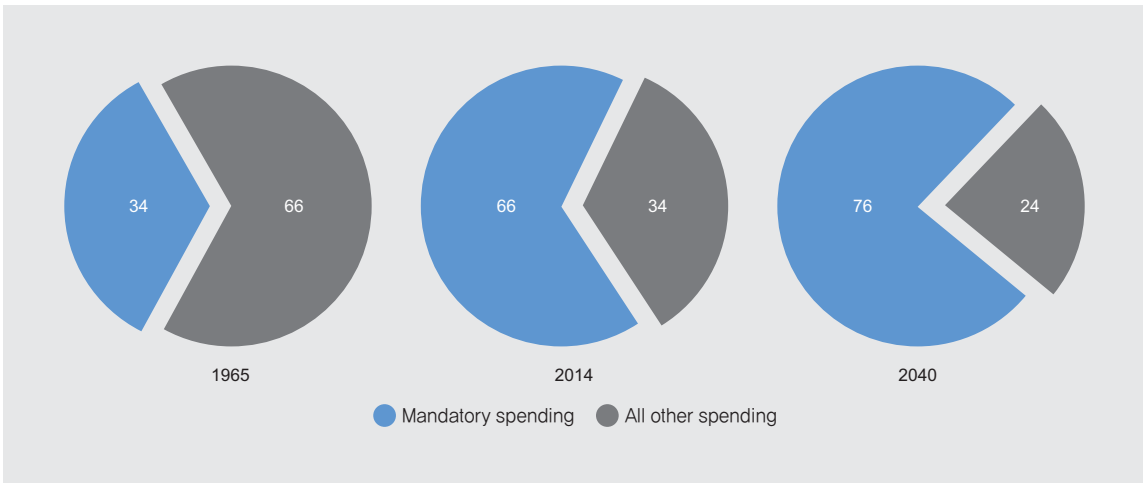
Care Act)이 아닌 민간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의 경우 증가하는 수급권자를 고려한 구조개혁이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2033년에 수급권자의 약 77% 정도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인구 추이: 8%(1950년) → 12%(2005년) → 20%(2025년)

[그림 14] 의무지출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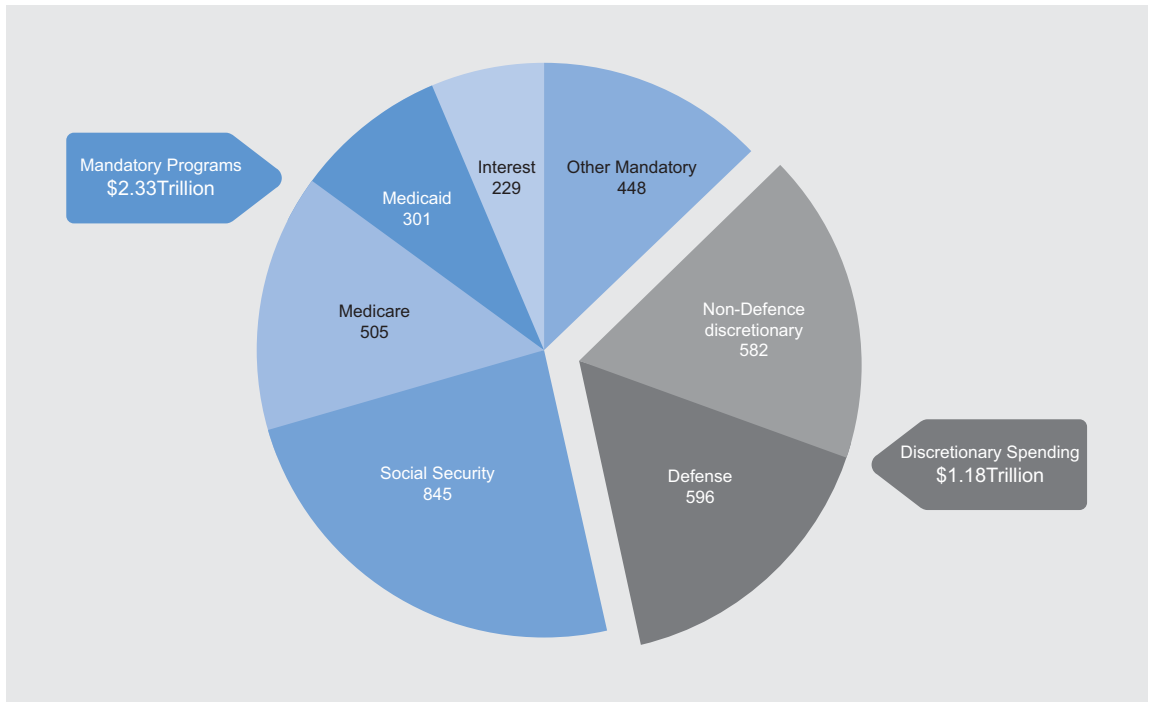
(단위: %)



출처: Source: CBD

[그림 15] FY2014 연방정부 총지출

(단위: 십만달러)



출처: Source: CBD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 | 정책 흐름 |

-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경제적 효과 분석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 맞아
- OECD/G20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간

#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경제적 효과 분석

\* 본 자료는 2015년 10월 19일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발표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백화점, 온라인쇼핑 등 92개 업체(약 34,000여개 점포), 200개 전통시장 등이 참여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난 14일(수)로 2주간의 일정을 마쳤음

\* 롯데 · 현대백화점 등 일부 참여업체는 별도행사를 기획하여 기간을 일부 연장하기도 함

- 최초로 정부 주도의 기획하에 진행된 금번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에서

- 22개\* 주요 참여업체의 10.1~14일간 매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194억원(20.7%) 증가

\* 주요 백화점(3개), 대형마트(3개), 온라인쇼핑몰(11개), 전자제품 전문점(2개), 편의점(3개) 등

\*\* '14년 10.2(목)~10.15(수)과 비교 기준(요일에 따라 매출 실적의 차이가 큰 유통업체 특성 고려)

### 주요 참여업체 매출 실적

(단위: %, 억원)

업계	대상	매출 증가율	매출 증가액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24.0	2,669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6	357
온라인쇼핑몰	G마켓, 11번가 등 11개 업체	28.9	2,161
전자제품 전문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20.9	353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36.3	1,654

- 업종별 매출변화의 특이점 및 업계평가를 살펴보면

① 백화점은 최근 수년간 매출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한 매출 두 자릿수(24%) 증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

\* 연도별 백화점 매출추이(조원) :

('10) 24.8 → ('11) 27.6 → ('12) 29.1 → ('13) 29.8 → ('14) 29.3

② 대형마트의 경우 추석 직후가 전통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3.6% 매출증가는 외형상 수치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

- 대형마트 매출을 작년 추석 이후 2주간과 비교할 경우, 매출증가 효과는 15.8%에 달함 (약 1,390억원 수준)

③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8.9%의 매출 증가로 오프라인 업체를 상회함으로써, 향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망라한 할인행사로 발전할 잠재성이 있음을 시사

- 미국의 경우에도 블랙프라이데이(금요일)보다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직후 월요일)의 매출 신장세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

④ 당초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대책 발표(9.22일)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힌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유통전문업체의 경우에는,

-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팅으로 20.9%의 매출 증가를 달성함으로써 금번 할인행사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평가

- 내년부터 할인행사가 정례화되고 전자제품 업체들이 연초부터 행사제품 생산을 기획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경우, 美블랙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이 소국가적 규모의 할인행사의 대표품목으로 부상할 가능성

⑤ 편의점 매출은 36.3% 증가하였는데 일부 담배 값 인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매출 증가 효과는 약 11.5%에 이르는 것(524억원 수준)으로 분석

\* '15.1월~8월간 편의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 : 평균 24.9%

■ 특히, 中 국경절 및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하여 시행한 결과, 10.1~14일간 외국인 관광객도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여 메르스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15.6월)△41.0% → (7월) △53.1% → (8월) △27.3% → (9월) △3.8% → (10.1~14) 8.5%

- 숙박업소 · 음식점 등 관련업종의 매출 증가를 유발하여 광복절 임시공휴일, 추경,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르스 이후 일련의 정책에 의해 촉발된 내수회복 모멘텀 유지에 기여
- 홍콩 사스('03), 일본 대지진('11) 등 유사사태 이후 해당국 관광산업이 회복되는 데 6개월~1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3개월 만에 신속하게 메르스 이전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는 평가

■ 금번 행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4/4분기 민간소비를 0.2%p, 4/4분기 GDP를 0.1%p 수준 제고시킬 것으로 추정됨

• 행사기간 중 백화점 · 대형마트 등 소매업종 매출액이 평소 대비 약 4천 3백억원\*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

\* 7,194억원(전년 대비 매출증가액)-2,900억원(추세상 추정 매출증가액)

-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3천 5백억원 수준으로, 우리 경제 분기별 소비지출 규모의 약 0.2%에 해당

\* 도소매업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 '13년 산업연관표) : 0.844

• 더불어,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 외 음식 · 숙박업 등에 지출한 금액도 약 3~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어 +α 효과 발생

\* '14년 외국인 관광객 1명의 평균 지출은 1,605.5달러이며, 총 지출 중 쇼핑 외 지출 비중은 약 35% 수준('14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 앞으로 금번 행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축제로 정착, 발전시켜 나갈 계획

•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제조업체 참여 확대, 전 통시장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 최경환 부총리 주재 업계간담회(10.14)에서 전자랜드, 삼성물산, 한샘 등은 금번 행사가 업체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내수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정례화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정례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업체들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유통업체, 소비자, 제조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행사시기, 기간, 행사명 등 내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 맞아

– 국세청,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소통에 나서다 –

\* 본 자료는 2015년 10월 13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서 발표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을 맞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10.13.(화) 창업진흥원, 창업지원단체, 청년 창업가 등과 함께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함
  - 임환수청장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시작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며 세정부담은 최소화할 것을 약속함
- 또한, 창업진흥원과의 상호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3.0 협업행정을 통해 창업지원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합의함
- 간담회 내용 중에는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확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설명과,
  - 정부3.0 정책인 ‘창업 및 기업활동 윈스톱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약(MOU) 체결 논의도 포함되었음
- 또한, 창업과 관련된 동영상 상영,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을 약속하는 ‘멘토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참석자들이 국세청에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 참석한 사람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 이날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도 지역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과 세정간담회를 열거나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 지역별 연계망을 구축하고 현장중심 세정지원 행사도 가짐
-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31천여 건의 세무상담을 제공하였고, 생업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도 1,500여회 시행하였음
  - 앞으로도 납세자, 세정협조자 등과 세금문제에 대한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 개최 배경

- 국세청은 10.13.(화) 국세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창업진흥원 강시우 원장, 한국창업보육협회 김지수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창업보육센터

장, 청년창업가 등 25명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참석자 명단 별첨)

- 이날 행사는 2014.10.14. 시작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1주년을 기념하면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창업진흥원 및 유관단체들과 협의하여
  - 지난 7월 추진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 2 주요 내용

### 1.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① 창업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 추진
  - 창업준비, 실행 및 성장단계에 맞는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제공
    - 창업시에 느낄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의 세무관련 문제를 해결
      - \* 세무전문가를 1:1 멘토로 지정하여 무료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 ②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 구축
  - 세무서와 지역 창업지원단체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의를 통한 전략적인 창업지원 추진
    - \* 지자체 등 타 기관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통합된 지원 서비스 제공
- ③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 추진
  - 창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련 업무간소화 방안(예: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없이 즉시발급 등) 발굴 및 추진

- ④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
  -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창업선도대학(28개), 창업아카데미(35개), 창업보육센터(274개)를 중심으로 유관대학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15.7월 시행)

### 2. 창업지원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 ① 창업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 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 \*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
    - \* 창업자금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때 정산

- ② 창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투자금액의 10%를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3.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선을 통한 납세자 접근 편의성 확대

- 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세정 서비스
  - 납세자 본인의 각종 세무정보를 인별세무정보 조회 계정인 My-NTIS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음
    - \* 세금신고 및 납부내역, 과세자료 제출내역, 국세청 발송 우편물 등 62종
  - 홈택스를 통해 모든 세목(상속세 제외)의 세금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세금납부 기능도 제공
    - \* 신고 부속서류와 증빙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인터넷으로 제출
  - 41종의 민원증명을 홈택스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24’와 연계되어 있음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세금신고 자료로 활용 가능

**2**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세정 서비스

- 기존의 앱 7종과 웹사이트 6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하여 세정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를 개통\*

\* 통합 앱은 애플(App store, play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통합앱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세금납부·고지·체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

**4. 건의사항 청취 등**

**1** 건의사항

- 참석자들은 ‘찾아가는 세금교실’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세정지원을 높이 평가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이 중에서 창업자 세무상담 강화 등 국세청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음
-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2** 기타

- 간담회 후, 창업지원단체 임원들은 창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 창업진흥을 위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귀중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고 밝힘
- 멘토지정서를 받은 청년사업자는 ‘멀게만 느껴

진 국세청의 지원을 받게되어 든든하다’는 감사를 표시함

**3** 전국적 1주년 행사 개최

- 이날,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도 대학생·창업지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 및 ‘세정간담회’를 운영하였음
  - 국세청은 국민과의 공식적인 소통채널로 자리잡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제도 시행을 통해, 지난 1년간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31천여 건을 상담처리하였으며
  - 납세자의 생업 현장이나 사업자 단체 등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도 1,500여 회에 걸쳐 시행하였음
- 앞으로도 납세자, 세정협조자 등과 세금문제에 대한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OECD/G20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간

\* 본 자료는 2015년 10월 6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국에서 발표한 「OECD/G20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OECD는 G20과 합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

\* 10월 5일 오후 4시(파리 현지 시간) OECD 본부에서 발표

- 최종보고서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분야별 대응조치를 담은 13개 과제 보고서와 프로젝트 전반을 설명하는 성명서(Explanatory Statement)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과제별 보고서와 성명서는 국내법 개정, 조세 조약 제·개정 등과 같은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10.8(목)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 참고 1 BEPS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내용

### 1 추진 경과

- BEPS Action Plan\* 결정 및 BEPS 프로젝트 공식 출범(G20 정상회의, '12.6월, '13.9월)

\* '15년 말까지 OECD 주도로 15개 과제에 대한 보고서 및 주

석서 완료

- 1차 보고서\* 승인(OECD 이사회, '14.7월, G20 재무장관회의, '14.9월)

\* 7개 과제에 대한 1차 보고서 완료(디지털경제, 혼성불일치처소, 유해조세방지, 조약남용방지, 이전가격강화, 이전가격문서화, 다자간수단개발)

-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완료 및 보고(OECD 이사회, '15.10월) → G20 재무장관회의('15.10.8)에서 논의될 예정

\* 1차 추진보고서 업데이트 및 1차 때 미결된 보고서를 포함 총 13개 보고서(과제 8~10은 하나로 통합)

## 2 BEPS 프로젝트 개요

-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으로써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말함

-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이 매년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1,000억달러~2,400억달러 수준, 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BEPS 프로젝트는 3대 주요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① **(과세 일관성 확보)** 국가 간 세법 차이, 특히 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 회피 방지
  - ② **(국제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 정비 및 기업 거래정보의 공유, BEPS 분석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 ③ **(확실성 강화)** 과세 원칙을 보다 확실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공격적 조세 회피 계획 수립을 사전 차단

### 3 BEPS 프로젝트 이행체계

- BEPS 프로젝트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이행을 위해 이행 모니터링과 포괄적인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BEPS 대응조치 및 대응조치의 이행을 위한 최소 기준, 기존기준 수정, 공통 접근법, 지침 등을 담고 있는 종합 패키지 마련
  -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의무 부여
    - 유해조세 방지,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 기존기준 수정: 기존 모델 조세조약·지침서에 합의한 국가 간 개정 의무 및 구속력 발생
    - 고정사업장 회피, 이전가격 세제 강화 등
  - 공통접근(common approach): 강한 이행의 권고, 향후 최소기준으로 발전 가능(2020년 이후 다시 논의)
    - 혼성불일치 해소, 이자비용 공제 제한
  - 모범관행(Best practice): 선택적 도입
    -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과세제도, 강제적 보고제도 등

참고 BEPS 과제별 대응조치

분야	과제명	BEPS 이슈	주요 대응조치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혼성불일치해소	혼성금융상품 등에 대한 국가간 세법차이(A국에서는 부채, B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되는 상품 (예) 전환사채)를 이용,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	원칙적으로 지급국에서 과세(지급국 손금불산입)하고, 지급국에서 미과세 시 수령국에서 과세(수령국 익금산입)
	특정의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이자비용 공제제도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원천지국 과세회피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비용 공제되는 이자범위를 제한
	유해조세 제도 폐지	국가 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서비스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및 세원의 잠식 발생 * patent box(지적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각종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관련 제도 투명성 제고
국제 기준납용방지	조약남용 방지	조세조약 남용을 통해 조약상의 비과세, 제한세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향유하거나 조세회피를 시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 - 조약상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를 적용 요건에 지분 최소 보유기간(1년) 추가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인정범위가 협소함을 이용하여 소득 원천지국에서 실제 사업을 함에도 원천지국 과세 회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정사업장 회피사례 방지 - 단기 계약 체결 및 분할 기간 연장 등 조약 남용 소지 방지
	이전가격 세제강화	무형자산(특허 등)을 활용한 조세피난처/저세율국 소재 계열사에 사업상 위험을 이전(cash box)하거나 과도한 자본을 배정하는 등 부당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각 나라에 과세가능 소득을 분배
투명성 확보 투명성	통계분석, 강제적보고	정부(과세관청)와 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일어나는 BEPS 문제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능력 강화
	이전가격 문서화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이전가격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관청이 확보하고 있지 못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위험 평가 및 진단을 명확히 하도록 자료(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 강화 → 국가 간 정보 교환
	분쟁해결	BEPS 프로젝트 결과인 다수의 신규 조세조약 규정 적용 해석시 조약 당사국 간, 당사국 및 납세자 간 불확실성 및 관련 분쟁 증가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납세자 접근성 확대 등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규정 개선
기타	디지털경제	인터넷 사업 등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과세 문제 발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마련
	다자간협약	조약 관련 BEPS 산출물을 기시행 중인 각국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는 데 오랜 시간 소요	다자간 협정 체계를 마련하여 동 협정 참여 국가 간에는 양자조세협정이 개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한국 지하경제, GDP의 25% 추정엔 신뢰하기 어려워”

21세기전략연구원 심포지엄...“사행사업, 국가성장 동력으로 키울 방안 찾아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5% 달할 것이라는 추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21세기 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어디까지 왔나’ 심포지엄에서 “관련 통계가 없어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오스트리아) 교수의 2013년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24.7%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선임연구원은 슈나이더 교수의 추정치는 무리한 가정을 통해 현실을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치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이 GDP에 포함됐다”며 “숨긴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부분들을 간접적인 자료로 추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추진해온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은 서민들의 과세되지 않은 거래를 찾아내기보다는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와 탈루를 적발해 ‘택스 갭(Tax Gap)’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의미한다.

안 선임연구원은 “현금 거래, 무자료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종교인 과세 등 비과세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야별 택스 갭 분석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에 미치는 영향, 사생활 침해 문제 등 택스 갭 축소 비용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5-10-22)

**박영수 조세재정연구원장 “너무 쉬운 복지 · 증세 안된다고 생각해”**

“재정건전성만 고집하면 경제 · 재정 둘 다 망가져”  
 “조세 · 재정 문제, 근본적으로 정확히 들여다 볼 것”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재정 분야, 특히 조세 · 공공지출 · 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 · 연구 ·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보통 ‘출연 연구기관’의 의미를 잘 모른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출자 · 출연 · 보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출연은 정부가 직접 운영자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곳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원으로 조세 · 재정 · 공공기관 운영을 연구하는 곳이다.

**- 최근 예산안 발표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견해는**

내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 재정 당국에서도 그동안 계속 국가채무비율을 30%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가 처음으로 40%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 모든 재정 당국이 방어적 재정보다는 공격적 재정을 하고 있다. 방어적 재정이란 경제가 안좋아 세입이 안걸리면 세입이 줄어든 것에 맞춰 세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된다. 즉, 소극적인 재정 운영을 말한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경영을 하면 경제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만 고집하고 있다면, 잘못하다가 우리 경제와 재정 둘 다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재정이 경제를 부스팅하는 역

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 사실상 현 정권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운 상태다.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은**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이긴 한데,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에 재정을 운영하는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초반에 재정을 굉장히 세계 관리하려고 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월호, 메르스, 중국경제 영향 등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되니 이제는 원치는 않지만 재정을 푸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지만, 문제가 오래 갈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정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수준에서만 투입하고 오래 견뎌야 한다. 오래 견뎌야 한다는 것은 경제도 구조개혁 등 아픈 과정을 견뎌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과정에서 재정 분야도 지금까지의 스탠스, 보수적이면서 약간의 제한적인 적극성을 띄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재정건전성이 무너졌는데 조금은 스탠스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경제가 급속히 좋아지는 모습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조정 과정, 소위 개혁의 과정에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개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줘야 하지 않나. 그를 위해서는 재정이 더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 측면에서 스탠스를 바꿔 복지를 위한 재정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림 자체를 복지나 SOC 사업 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갈수록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 중산층 제고 효과를 위한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사실 조금씩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워낙 그 부분이 작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크기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주로 그제 조세쪽이 아

닌 복지 지출쪽에서 그렇다. 재정이 소득재분배나 소득 분배에 대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지만, 조세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복지 지출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국내에서 소득분배 상황을 분석해보면 재분배도 약하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분배 그 자체다. 소득분배 자체가 악화됐다. 문제는 앞으로 소득분배 악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득분배 자체를 형평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임금'이다. 근로소득 부문에서 소득분배 기능 자체를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 자체가 공평하도록 배당금 투자 등 세제를 도입했고, 노동시장 개혁 등도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 세입 확충을 위해 정부가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크지 않다. 바람직한 재정개혁 방향은

사실 재정 개혁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내년에 세출 자체를 4% 이내로 줄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6%대로 나가던 것을 4%대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나 노동개혁 등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요란하게 큰소리 안내고 조용히, 무섭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용히 진행하다 보니 성과가 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다. 복지 부 정수급 막고, 중소기업들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중복지급을 자르고, 국고보조금 새는 것을 막는 등 큰 작업들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기초가 낮은 레벨로 가는 것 같지만, 지속가능하고 강력하게 가는 것이다. 중단되지만 않으면 된다. 6%대 지출 증가율을 4% 대로 줄였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겠지만, 조용히 진행하면서 끝난 다음에 '했다.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속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증세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너무 쉬운 증세, 너무 쉬운 복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성향 등을 봤을 때 너무 쉽게 쏘리고, 공평의식이 강해 한쪽에서 뭘 하면 다른 쪽에서도 달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재정당국이 세출을 6%대에서 4%대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마음먹고 열심히 견으면 할 수 있다. 세정을 강화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하고 해외탈세를 더욱 단속하는 등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본다. 그런 여지를 놔두고 세금을 조금 더 견고, 복지를 더 늘리면 나중에 결국 무너진다. 세율을 올리기 전에 세출을 조금 더 줄이고, 지금 쓰이고 있는 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잘 들여다 본 다음에 고민해야 한다. 너무 쉽게 증세하고 복지 하면 그리스처럼 된다.

(뉴스토마토, 2015-10-06)

# 재정포럼

2015년 10월호 통권 제232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10월 15일 발행 / 제19권 제10호(통권 제23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mailto: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정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